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3년 제2호


2013.12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3년 제2호

2013. 12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I. OECD 회원국의 주요 세목별 세율 변화 추이	3
1. 개인소득세	3
2. 부가가치세	6
3. 법인세	8
II. OECD 국가별 주요 세목 세율 변화 추이	12
1. 호주	12
2. 오스트리아	14
3. 벨기에	16
4. 캐나다	18
5. 칠레	21
6. 체코	22
7. 덴마크	24
8. 에스토니아	25
9. 핀란드	26
10. 프랑스	29
11. 독일	32
12. 그리스	33
13. 헝가리	36
14. 아이슬란드	39
15. 아일랜드	40

16. 이스라엘	43
17. 이탈리아	44
18. 일본	47
19. 한국	49
20. 룩셈부르크	50
21. 멕시코	53
22. 네덜란드	54
23. 뉴질랜드	56
24. 노르웨이	58
25. 폴란드	60
26. 포르투갈	61
27. 슬로바키아공화국	64
28. 슬로베니아	65
29. 스웨덴	67
30. 스페인	69
31. 스위스	72
32. 터키	74
33. 영국	76
34. 미국	78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	83
1.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 - 중산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안	83
가. 개요	83
나. 기업세제에 관한 제안 내용	84



2. Levin의 조세회피방지법 발의	85
가. 개요	85
나. 주요 법안 내용	86
3. 국세청의 조기합의 프로그램 도입 및 선택적 복지플랜 적용규칙 변경	90
가. 조기합의(FTS) 프로그램 도입	90
나. 의료비 지원 관련 선택적 복지플랜 적용규칙 변경	91
4. 상원 재무위원회의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개편 논의	92
가. 개요	92
나. 세부 개편내용	94
II. 유럽	96
1. 네덜란드	96
가.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도입	96
나. 네덜란드 2014년 개정세법 공포	96
2. 러시아의 ITA 가입	99
3. 룩셈부르크의 세제개편안	100
가.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101
나. 국제적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	101
다.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개정안	102
라. 펀드에 대한 기존 규정 유지	103
4. 벨기에	103
가. 공평세(Fairness Tax) 신설	103
나. 벨기에 개정세법	105
5. 스페인	109
가.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 공포	109
나. 스페인 정부, 룩셈부르크의 특수목적펀드(SIF)에 CFC규정 배제를 명시	109
6. 아이슬란드의 2014년 균형재정예산안	111
7. 영국의 이전가격 규정을 이용한 조세회피전략 제한	112

8. 이탈리아	115
가. 거액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협력프로그램 실시	115
나. 금융거래세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	116
다.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인상	119
라. 이탈리아 2014년 예산안	119
마. 금융회사 수익에 대한 추가과세	123
9. 터키의 조세사면 기한 연장	123
10. 폴란드의 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를 이용한 조세회피방지 세법 개정	124
11. 프랑스	126
가. 2013년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tax heaven blacklist) 발표	126
나. 프랑스 2014년 예산안	127
다. 반조세회피 조치	133
12. 헝가리의 금융거래에 대한 세율 인상	135
13. EU의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채택	136
14. 제9차 WTO 각료회의	139
가. 농업 분야 합의사항	139
나. 무역원활화	142
다. 최빈개도국	143
라. 기타	144
Ⅲ. 아시아	145
1. 대만의 개인 주식양도차익 과세규정 개정	145
2.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과 기업투자 촉진 관련 조세특례 규정 발표	146
3. 중국	151
가. 기업소득세 과세규정 발표	151
나. 증치세 면세 관리방법 제정 발표	153
4. 홍콩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154

표목차 ▶▶

제 1 부

<표 I-1> OECD 회원국별 개인소득세 최고소득구간 및 적용세율	4
<표 I-2> OECD 회원국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7
<표 I-3> 주요국별 법인세 최고소득구간 및 적용세율	9
<표 I-4> 호주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13
<표 I-5> 오스트리아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14
<표 I-6> 벨기에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16
<표 I-7> 벨기에 법인세 계산을 위한 연도별 정상수익률	18
<표 I-8> 캐나다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19
<표 I-9> 캐나다의 법인세율 체계 변화	20
<표 I-10> 칠레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21
<표 I-11> 칠레의 법인세율 체계 변화	22
<표 I-12> 체코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변화	23
<표 I-13> 체코의 법인세율 체계 변화	24
<표 I-14> 덴마크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24
<표 I-15> 에스토니아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변화	26
<표 I-16> 핀란드의 소득세 중 국세율	27
<표 I-17> 핀란드의 소득세 중 지방세율과 교회세율	27
<표 I-18> 핀란드의 부가가치세율	28
<표 I-19> 핀란드의 법인세율	29
<표 I-20> 프랑스의 소득세율	30
<표 I-21>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율	31
<표 I-22> 프랑스의 법인세율	31

<표 I -23> 독일의 소득세율	32
<표 I -24> 독일의 연대부가세와 교회세	32
<표 I -25>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33
<표 I -26> 독일의 법인세율	33
<표 I -27> 그리스의 소득세율	34
<표 I -28> 그리스의 연대부가세	35
<표 I -29>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	35
<표 I -30> 그리스의 법인세율	36
<표 I -31> 헝가리의 소득세율	37
<표 I -32> 헝가리의 연대부가세(solidarity surtax)	37
<표 I -33> 헝가리의 부가가치세율	38
<표 I -34> 헝가리의 법인세율	38
<표 I -35> 아이슬란드의 소득세율	39
<표 I -36> 아이슬란드의 부가가치세율	40
<표 I -37> 아이슬란드의 법인세율	40
<표 I -38> 아일랜드의 소득세율	41
<표 I -39> 아일랜드 사회세(2011년 이전은 소득부과금)	41
<표 I -40> 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율	42
<표 I -41>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42
<표 I -42> 이스라엘의 소득세율	43
<표 I -43> 이스라엘의 부가가치세율	44
<표 I -44> 이스라엘의 법인세율	44
<표 I -45> 이탈리아의 소득세율 체계	45
<표 I -46>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46
<표 I -47> 일본의 소득세율 체계	47
<표 I -48> 일본의 법인세율 체계	48
<표 I -49> 한국의 소득세율 체계	49
<표 I -50> 한국의 법인세율 체계	50

<표 I -51> 룩셈부르크의 소득세율(부가세 포함) 체계	51
<표 I -52> 룩셈부르크의 법인세율 체계	52
<표 I -53> 멕시코의 소득세율 체계	53
<표 I -54> 멕시코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54
<표 I -55> 멕시코의 법인세율 체계	54
<표 I -56> 네덜란드의 소득세율 체계	55
<표 I -57> 네덜란드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56
<표 I -58> 네덜란드의 법인세율 체계	56
<표 I -59> 뉴질랜드의 소득세율 체계	57
<표 I -60> 뉴질랜드의 GST 세율 체계	57
<표 I -61> 뉴질랜드의 법인세율 체계	58
<표 I -62> 노르웨이의 비과세 공제액 추이	59
<표 I -63> 노르웨이의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의 임계점 추이	59
<표 I -64> 폴란드의 소득세율 체계	60
<표 I -65> 폴란드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61
<표 I -66> 포르투갈의 소득세율	61
<표 I -67>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	63
<표 I -68> 포르투갈의 법인세율	63
<표 I -69> 2014년 이후 포르투갈의 법인세율 인하 예정 세율	63
<표 I -70>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개인소득세율	64
<표 I -71>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부가가치세율	65
<표 I -72>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법인세율	65
<표 I -73> 슬로베니아의 소득세율	66
<표 I -74> 슬로베니아의 부가가치세율	66
<표 I -75> 슬로베니아의 법인세율	67
<표 I -76> 스웨덴의 소득세율	68
<표 I -77> 스웨덴의 부가가치세율	69
<표 I -78> 스웨덴의 법인세율	69
<표 I -79> 스페인의 소득세 부가세(Surtax)	70

<표 I-80> 스페인의 소득세율	70
<표 I-81> 스페인의 부가가치세율	71
<표 I-82> 스페인의 법인세율	72
<표 I-83> 스위스의 연방정부소득세율	73
<표 I-84>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	74
<표 I-85> 스위스의 법인세율	74
<표 I-86> 터키의 소득세율	75
<표 I-87> 터키의 부가가치세율	76
<표 I-88> 터키의 법인세율	76
<표 I-89> 영국의 소득세율	77
<표 I-90>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77
<표 I-91> 영국의 법인세율	78
<표 I-92> 미국의 소득세율	79
<표 I-93> 미국의 법인세율	80

제 2 부

<표 II-1> 벨기에의 최근 가상이자율 일람표	106
<표 II-2> 개정 전·후의 이탈리아 부가가치세율	119
<표 II-3> 이탈리아의 연금소득 추가세율 과세구간	122
<표 II-4> 등록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세입 예상액	124
<표 II-5> 개정 전·후의 소득세 누진세율	131
<표 III-1> 일본 명목법인세율 내역	147
<표 III-2>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및 투자금액	148
<표 III-3> 임금증분 세액공제 수정안	149
<표 III-4> 등록세 경감 항목	150



그림목차 ▶▶

제 2 부

[그림 Ⅱ-1] PLS를 이용한 조세회피 구조	126
---------------------------------	-----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I. OECD 회원국의 주요 세목별 세율 변화 추이

- 본 장에서는 OECD 회원국 전체인 34개국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봄
- 조사기간(2008~2013년) 중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개인소득세는 소폭 인상 추세, 부가가치세는 인상 추세, 법인세는 인하 추세를 나타냄

1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2008~2013년) 동안 OECD 국가들의 평균 최고개인소득세율은 2008년 이후 소폭 인상되는 추세를 보임
 - 평균 최고세율은 2008년의 37.30%에서 2013년에는 38.27%로 평균 0.93%p 인상됨
-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15개국, 인하한 국가가 4개국, 유지한 국가가 15개국으로서 인상 또는 유지한 국가가 대다수임
- 최고세율을 인상한 15개국은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임
 -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적으로 5년간 세율을 4.65%p 인상하였음
 - 2008년 대비 2013년 최고개인소득세율을 가장 크게 인상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로 10.49%p 인상됨
- 최고세율을 인하한 4개국은 헝가리, 폴란드, 덴마크, 뉴질랜드임
 - 최고세율을 인하한 국가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적으로 5년간 세율을 10.3%p 인하하였음

- 2008년 대비 2013년 최고개인소득세율을 가장 크게 인하한 국가는 헝가리로 20%p 인하됨

□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율 인상률은 5년간 3%p로 OECD 전체평균인 0.93%p보다 인상 폭이 크지만 개인소득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의 평균인 4.65%p보다는 1.65%p 작음

<표 1-1> OECD 회원국별 개인소득세 최고소득구간 및 적용세율

(단위: 각국의 자국통화,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변동 결과
호주	150,001	180,001	180,001	180,001	180,001	180,001	유지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오스트리아	51,001	60,001	60,001	60,001	60,001	60,001	유지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벨기에	32,861	34,361	34,331	35,061	36,301	37,331	유지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캐나다	123,185	126,265	127,022	128,801	132,407	135,055	유지
	29.00	29.00	29.00	29.00	29.00	29.00	
칠레	67,773,600	66,353,401	67,689,001	70,237,801	72,370,801	72,370,801	유지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체코공화국	단일세율						유지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덴마크	335,801	347,201	389,901	389,901	389,901	389,901	인하
	59.00	59.00	51.50	51.50	51.50	51.70	
에스토니아	단일세율						유지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핀란드	62,000	64,500	66,400	68,200	70,300	100,000	인상
	31.50	30.50	30.00	30.00	29.75	31.75	
프랑스	69,506	69,784	70,831	1,000,001	1,000,001	1,000,001	인상
	40.00	40.00	41.00	45.00	45.00	45.00	
독일	250,001	250,401	250,731	250,731	250,731	250,731	유지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그리스	75,001	75,001	100,001	100,001	100,001	42,001	인상
	40.00	40.00	45.00	45.00	45.00	42.00	

<표 1-1>의 계속

(단위: 각국의 자국통화,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변동 결과
헝가리	1,700,001	1,700,001	5,000,001	단일세율			인하
	36.00	36.00	32.00	16.00	16.00	16.00	
아이슬란드	단일세율		7,800,001	8,166,601	8,452,405	8,874,109	인상
	35.75	37.20	46.12	46.21	46.24	46.24	
아일랜드	35,401	36,401	36,401	32,801	32,801	32,801	인상
	41.00	46.00	47.00	48.00	48.00	48.00	
이스라엘	435,121	454,681	472,081	482,761	501,961	811,561	인상
	47.00	46.00	45.00	45.00	48.00	50.00	
이탈리아	75,000	75,000	75,000	300,000	300,000	300,000	인상
	43.00	43.00	43.00	46.00	46.00	46.00	
일본	18,000,000	18,000,000	18,000,000	18,000,000	18,000,000	18,000,000	유지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한국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300,000,000	300,000,000	인상
	35.00	35.00	35.00	35.00	38.00	38.00	
룩셈부르크	39,885	39,885	39,885	150,000	150,000	150,000	인상
	38.95	38.95	38.95	41.34	41.34	43.60	
멕시코	492,842	492,842	492,842	492,842	492,842	492,842	인상
	28.00	28.00	30.00	30.00	30.00	30.00	
네덜란드	53,860	54,776	54,367	55,694	56,491	55,991	유지
	52.00	52.00	52.00	52.00	52.00	52.00	
뉴질랜드	6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인하
	39.00	39.00	38.00	35.50	33.00	33.00	
노르웨이	단일세율						유지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폴란드	85,528	85,528	85,528	85,528	85,528	85,528	인하
	40.00	32.00	32.00	32.00	32.00	32.00	
포르투갈	62,546	64,110	150,000	153,300	153,300	80,001	인상
	42.00	42.00	45.88	46.50	46.50	48.00	
슬로바키아 공화국	단일세율					34,401	인상
	19.00	19.00	19.00	19.00	19.00	25.00	
슬로베니아	14,375	14,821	15,058	15,269	15,681	18,961	인상
	41.00	41.00	41.00	41.00	41.00	50.00	

<표 1-1>의 계속

(단위: 각국의 자국통화,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변동 결과
스웨덴	495,000	526,200	532,700	548,300	574,300	591,601	유지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스페인	53,407	53,407	53,407	175,000	300,000	300,001	인상
	48.63	48.63	48.63	47.00	52.00	52.00	
스위스	712,400	712,400	712,400	751,200	755,200	755,201	유지
	13.20	13.20	13.20	13.20	13.20	13.20	
터키	44,700	50,000	76,200	80,000	88,000	94,001	유지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영국	34,800	37,400	150,000	150,000	150,000	150,001	인상
	40.00	40.00	50.00	50.00	50.00	45.00	
미국	357,700	372,950	373,650	379,150	388,350	400,001	유지
	35.00	35.00	35.00	35.00	35.00	39.60	
평균	37.30	37.19	37.71	37.45	37.69	38.27	

2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2008~2013년) 동안 OECD 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8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추세를 보여 5년간 1.27%p 인상됨
 -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8년의 17.73%에서 2013년에는 19.00%로 인상되었으며 평균 0.2~0.3%p씩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됨
- 부가가치세가 없는 미국을 제외한 총 33국 중 18개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인상되는 추세이며 15개국은 크게 변동이 없음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인하되는 추세의 국가는 발견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18개국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적으로 5년간 세율을 2.32%p 인상하였음

○ 2008년 대비 2013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의 인상 폭이 최대인 국가는 헝가리로 7%p 인상되었으며 스위스가 0.4%p로 인상 폭이 최소였음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세율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음

<표 1-2> OECD 회원국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변동 결과
호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지
오스트리아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유지
벨기에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유지
캐나다	5.00	5.00	5.00	5.00	5.00	5.00	유지
칠레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유지
체코 공화국	19.00	19.00	20.00	20.00	20.00	21.00	인상
덴마크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유지
에스토니아	18.00	20.00	20.00	20.00	20.00	20.00	인상
핀란드	22.00	22.00	23.00	23.00	23.00	24.00	인상
프랑스	19.60	19.60	19.60	19.60	19.60	19.60	유지
독일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유지
그리스	19.00	19.00	23.00	23.00	23.00	23.00	인상
헝가리	20.00	25.00	25.00	25.00	27.00	27.00	인상
아이슬란드	24.50	24.50	25.50	25.50	25.50	25.50	인상
아일랜드	21.00	21.50	21.00	21.00	23.00	23.00	인상
이스라엘	15.50	15.50	16.00	16.00	17.00	18.00	인상
이탈리아	20.00	20.00	20.00	21.00	21.00	22.00	인상
일본	5.00	5.00	5.00	5.00	5.00	5.00	유지
한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지
룩셈부르크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유지
멕시코	15.00	15.00	16.00	16.00	16.00	16.00	인상
네덜란드	19.00	19.00	19.00	19.00	21.00	21.00	인상
뉴질랜드	12.50	12.50	15.00	15.00	15.00	15.00	인상
노르웨이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유지
폴란드	22.00	22.00	22.00	23.00	23.00	23.00	인상
포르투갈	21.00	21.00	21.00	23.00	23.00	23.00	인상

<표 1-2>의 계속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변동 결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19.00	19.00	19.00	20.00	20.00	20.00	인상
슬로베니아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유지
스웨덴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유지
스페인	16.00	16.00	16.00	18.00	18.00	21.00	인상
스위스	7.60	7.60	7.60	8.00	8.00	8.00	인상
터키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유지
영국	17.50	17.50	17.50	20.00	20.00	20.00	인상
미국	n/a	n/a	n/a	n/a	n/a	n/a	n/a
평균	17.73	17.96	18.28	18.58	18.79	19.00	

3 법인세

- 조사기간(2008~2013년) 동안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며 평균 0.75%p 인하됨
 - 평균 법인세율은 2008년의 24.50%에서 2013년에는 23.85%로 인하됨
-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6개국, 인하한 국가가 12개국, 유지한 국가가 16개국 으로서 인하 또는 유지한 국가가 대다수임
- 법인세율을 인상한 6개국은 아이슬란드,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칠레, 슬로바키아 공화국임
 -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적으로 5년간 세율을 3%p 인상하였음
 - 2008년 대비 2013년 법인세율을 가장 크게 인상한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5%p 인상됨

- 법인세율을 인하한 12개국은 체코, 핀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캐나다임
 -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적으로 5년간 세율을 3.33%p 인하하였음
 - 2008년 대비 2013년 법인세율을 가장 크게 인하한 국가는 스웨덴으로 6%p 인하됨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하율은 3%p로서 OECD 전체 평균인 0.75%p보다 인하 폭이 크지만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들의 평균인 3.33%p보다는 0.33%p 작음

<표 1-3> 주요국별 법인세 최고소득구간 및 적용세율

(단위: 각국의 자국통화,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변동 결과
호주	단일세율						유지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오스트리아	단일세율						유지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벨기에	단일세율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낮은 세율 적용						유지
	33.99	33.99	33.99	33.99	33.99	33.99	
캐나다	4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인하
	19.50	19.00	18.00	16.50	15.00	15.00	
칠레	단일세율						인상
	17.00	17.00	17.00	20.00	20.00	20.00	
체코공화국	단일세율						인하
	21.00	20.00	19.00	19.00	19.00	19.00	
덴마크	단일세율						유지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에스토니아	단일세율						유지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핀란드	단일세율						인하
	26.00	26.00	26.00	26.00	24.50	24.50	

<표 1-3>의 계속

(단위: 각국의 자국통화,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변동 결과
프랑스	단일세율						유지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독일	단일세율						유지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그리스	단일세율						인상
	25.00	25.00	24.00	20.00	20.00	26.00	
헝가리	50,000,001	50,000,001	250,000,001	500,000,001	500,000,001	500,000,001	인상
	16.00	16.00	19.00	19.00	19.00	19.00	
아이슬란드	단일세율						인상
	15.00	15.00	18.00	20.00	20.00	20.00	
아일랜드	단일세율						유지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이스라엘	단일세율						인하
	27.00	26.00	25.00	24.00	25.00	25.00	
이탈리아	단일세율						유지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일본	단일세율						인하
	30.00	30.00	30.00	30.00	25.50	25.50	
한국	200M	200M	200M	200M	200M	200M	인하
	25.00	22.00	22.00	22.00	22.00	22.00	
룩셈부르크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인하
	22.00	21.00	21.00	21.00	21.00	21.00	
멕시코	단일세율						인상
	28.00	28.00	30.00	30.00	30.00	30.00	
네덜란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인하
	25.50	25.50	25.50	25.00	25.00	25.00	
뉴질랜드	단일세율						인하
	33.00	30.00	30.00	30.00	28.00	28.00	
노르웨이	단일세율						유지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표 1-3>의 계속

(단위: 각국의 자국통화,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변동 결과
폴란드	단일세율						유지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포르투갈	단일세율						유지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슬로바키아 공화국	단일세율						인상
	19.00	19.00	19.00	20.00	20.00	23.00	
슬로베니아	단일세율						인하
	22.00	21.00	20.00	19.00	18.00	17.00	
스웨덴	단일세율						인하
	28.00	26.30	26.30	26.30	26.30	22.00	
스페인	단일세율						유지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스위스	단일세율						유지
	21.70	21.70	21.70	21.70	21.70	21.70	
터키	단일세율						유지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영국	단일세율						인하
	28.00	28.00	28.00	26.00	24.00	23.00	
미국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유지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평균	24.50	24.14	24.22	24.11	23.77	23.85	

II. OECD 국가별 주요 세목 세율 변화 추이

- 본 장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 변동의 추이를 각 국가별로 살펴봄
- 각 국가별 내용은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최근 6년간의 세율 변동과 각 세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한 설명으로 이루어짐

1 호주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2008~2013년) 중 매년 과세구간 및 세율이 조금씩 개정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감세조치가 있었으며, 2013년에는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증세조치가 있었음
 - 2010년 중·상위층의 소득세율을 40%에서 38%로 인하함
 - 2011년 중·상위층의 소득세율을 38%에서 37%로 인하함
 - 2013년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15%에서 19%로, 30%에서 32.5%로 인상함
- 조사기간 중 매년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는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이는 과세표준구간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감세조치였음
 - 2009년의 개정은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제외한 각 단계별 과세표준구간의 시작금액을 인상함
 - 2010년의 개정도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확대함
 - 2011년의 개정도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확대함

- 2013년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함
- 조사기간 중 5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함

<표 1-4> 호주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호주달러, %)

2008		2009		2010		2011~2012		2013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0~6,000	0	0~6,000	0	0~6,000	0	0~6,000	0	0~18,200	0
6,001~30,000	15	6,001~34,000	15	6,001~35,000	15	6,001~37,000	15	18,201~37,000	19
30,001~75,000	30	34,001~80,000	30	35,001~80,000	30	37,001~80,000	30	37,001~80,000	32.5
75,001~150,000	40	80,001~180,000	40	80,001~180,000	38	80,001~180,000	37	80,001~180,000	37
150,001~	45	180,001~	45	180,001~	45	180,001~	45	180,001~	45

자료: 1.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제2호, 2011. 12.

2. OECD Statistics

3. 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Rates/Individual-income-tax-rates/>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호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에 변동은 없었음
- 2000년 7월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계속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호주의 법인세율은 30%의 세율이 적용되어 변동이 없었음

마. 기타

-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표준이 5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홍수와 사이클론에 대한 재건부담금을 추가 부과함

- 5만~10만호주달러의 과세표준구간에 속한 납세자에게는 0.5%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고, 10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과세표준구간에 있는 납세자에게는 1%의 세율로 추가 과세함
- 홍수와 사이클론에 대한 재건부담금은 2011년 과세연도(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됨

2 오스트리아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2009년 한 차례의 소득세율 개정을 통해 중산층과 중·상위층의 소득세율이 인하됨
 - 중산층의 소득세율이 38.33%에서 36.50%로, 중·상위층의 소득세율은 43.60%에서 43.21%로 인하됨
- 2009년 0%와 43.21%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의 상한액을 인상함
 - 2009년 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이 10,000유로에서 11,000유로로 확대되고, 43.21%의 중·상위층 과세표준구간의 상한액이 51,001유로에서 60,000유로로 확대됨
- 조사기간 중 4단계 누진세 체계를 유지함

<표 1-5> 오스트리아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유로, %)

2008		2009년 이후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0~10,000	0.00	0~11,000	0.00
10,001~25,000	38.33	11,001~25,000	36.50
25,001~51,000	43.60	25,001~60,000	43.21
51,001~	50.00	60,001~	50.00

자료: OECD Statistics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오스트리아의 부가가치세율에 변동은 없었음
 - 오스트리아는 1973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당시 표준세율은 18%였음
 - 이후 표준세율은 1988년 18%에서 20%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유지됨
- 오스트리아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20%), 경감세율(12%)과 초경감세율(10%)의 3단계 체계임
 - 표준세율(20%): 경감세율이나 초경감세율 적용대상 거래나 면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며
 - 특정 지역(Jungholz과 Mittelberg)에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19%의 표준세율이 적용됨
 - 경감세율(12%):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일부 와인 거래에 한해 적용됨
 - 초경감세율(10%): 대부분의 식품, 도서, 호텔숙박 및 식당, 승객운송, 주거형 아파트 임대, 개인병원이나 자선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예술가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의약품 공급에 적용됨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오스트리아의 법인세율은 25%로 유지됨
- 법인의 형태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의 최저법인세(annual minimum tax)를 납부해야 하는데, 조사기간 중 최저법인세액에 변동은 없었음
 -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형태인 AGs의 연간 최저법인세: 3,500유로
 - 우리나라의 유한회사 형태인 GmbHs의 연간 최저법인세: 1,750유로
 - 은행과 보험회사의 최저법인세: 5,452유로
 - 최초 설립된 후 4분기 동안의 최저법인세: 각 분기마다 273유로(연간 1,092유로)

3 벨기에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벨기에의 소득세율은 25~50%로 변동은 없었음
- 벨기에는 소득세에 물가연동세제를 적용하고 있어 과세표준구간은 거의 매년 변동됨
 -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세제를 적용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경감됨
- 조사기간 중 소득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함

<표 1-6> 벨기에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유로)

세율	과세표준 구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5%	0~7,560	0~7,900	0~7,900	0~8,070	0~8,350	0~8,590
30%	7,561~10,760	7,901~11,250	7,901~11,240	8,071~11,480	8,351~11,890	8,591~12,220
40%	10,761~17,930	11,251~18,740	11,241~18,730	11,481~19,130	11,891~19,810	12,221~20,370
45%	17,931~32,860	18,741~34,360	18,731~34,330	19,131~35,060	19,811~36,300	20,371~37,330
50%	32,861~	34,361~	34,331~	35,061~	36,301~	37,331~

자료: OECD Statistics

- 한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2012년부터 특정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20유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소득에 대해 4%의 세율로 추가 과세함
 - 2011년까지 투자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로열티소득)을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했으나, 2012년부터 투자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함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벨기에의 부가가치세율에 변동은 없었음
 - 현재 21%의 표준세율은 1996년 개정된 이후 유지됨
 - 벨기에의 부가가치세는 1971년에 도입하면서 18%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이후 1980년 18%에서 16%로 1년간 2%p 세율을 인하한 후 1988년 19%로 인상한 후 1995년까지 19%의 세율을 유지함
-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21%), 경감세율(12%)과 초경감세율(6%)의 3단계 체계임
 - 경감세율(12%): 공공주택과 음료를 제외한 식당용역에 적용됨
 - 초경감세율(6%): 일부 생활필수품과 사회서비스, 도서 및 잡지, 특정 식음료(우유, 생선, 육류, 유지류), 의약품, 물, 숙박, 5년 이상된 건물의 보수, 미술품의 공급에 적용됨

다. 법인세

- 벨기에의 법인세율은 2008년 이후 계속 33.990%¹⁾를 유지함
- 일정요건²⁾을 만족하고 과세표준이 322,500유로 미만인 기업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24.980%, 31.930% 그리고 35.535%의 세율로 과세됨
 - 과세표준이 0~25,000유로인 경우 24.980%의 세율이 적용됨
 - 과세표준이 25,001~90,000유로인 경우 31.930%의 세율이 적용됨
 - 과세표준이 90,001~322,500유로인 경우 35.535%의 세율이 적용됨

1) 3%의 부가세(surtax)가 포함된 세율임

2) 연간 적어도 36,000유로 이상의 보수를 받은 이사가 1명 이상 있거나 연초 자기자본의 13% 이상을 배당하지 않는 등임

- 벨기에의 법인세는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수익률(notional interest rate)을 공제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수익률의 정도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하는데, 정상수익률은 매년 개정됨
- 정상수익률은 10년 만기 국채의 연평균이자율이며 일반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에 높은 수익률을 적용함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상수익률은 2009년을 제외하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표 1-7> 벨기에 법인세 계산을 위한 연도별 정상수익률

(단위: %)

연도	일반기업	중소기업
2008	4.307	4.807
2009	4.473	4.973
2010	3.800	4.300
2011	3.425	3.925
2012	3.000	3.500
2013	2.742	3.242

자료: OECD Statistics

4 캐나다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캐나다의 소득세율에 변동은 없었음
 - 2005년부터 최저세율을 16%에서 15%로 인하한 후 현재까지 15%, 22%, 26%, 29%의 세율이 계속 적용됨
- 캐나다는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매년 과세소득 구간을 상향 조정함

- 캐나다는 2000년 17%, 25%, 29%의 3단계 누진세 체계에서 2001년 현행과 같은 16%, 22%, 26%, 29%의 4단계 누진세 체계로 개정함

<표 1-8> 캐나다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캐나다달러)

세율	과세표준 구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5%	0~37,885	0~40,726	0~40,970	0~41,544	0~42,707	0~43,561
22%	37,886~75,769	40,727~81,452	40,971~81,941	41,545~83,088	42,708~85,414	43,562~87,123
26%	75,770~123,184	81,453~126,264	81,942~127,021	83,089~128,800	85,415~132,406	87,124~135,054
29%	123,185~	126,265~	127,022~	128,801~	132,407~	135,055~

자료: OECD Statistics 및 E&Y(2013)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캐나다의 연방 부가가치세율은 5%의 세율이 유지됨
- 캐나다는 1991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7%의 세율을 적용함
 - 2006년 7월 1일 7%의 부가가치세율을 6%로 인하한 후 2008년 1월 1일부터 6%의 세율을 5%로 인하한 것임
- 캐나다의 부가가치세는 GST(Goods and Service Tax)와 주정부의 PST(Provincial Sales Tax)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7월 1일 이후 일부 주에서 GST와 PST를 통합한 HST(Harmonized Sales Tax)를 도입함
- 2010년 7월 1일부터 연방세와 주세의 통합세 체계인 HST 체계의 도입에 찬성한 참여지역과 GST와 PST의 별도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참여지역으로 구분됨
 - 주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며, 각각 5%, 12%, 13%, 14%, 14.975%, 15%임

다. 법인세

- 캐나다의 법인세율은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2007년까지 21%였으나 2008년부터 계속 인하되어 2012년부터 현재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됨
 - 2007년 22.12%³⁾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부가세를 폐지하고 세율을 1.5%p 인하하여 2008년부터 19.50%의 세율을 적용함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법인세율을 인하함
 - 2009년 법인세율을 0.5%p 인하(19.5%→19.0%)
 - 2010년 법인세율을 1%p 인하(19%→18%)
 - 2011년 법인세율을 1.5%p 인하(18.0%→16.5%)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기 대비 1.5%p 인하된 15% 세율이 적용됨
-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1%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사기간 중 세율 변동은 없었음
 -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11%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중소기업의 소득기준을 40만캐나다달러에서 50만캐나다달러로 상향조정함

<표 1-9> 캐나다의 법인세율 체계 변화

(단위: %)

구분	~2007.12.31	2008	2009	2010	2012	2012.1.1~
일반세율	21.0	19.5	19.0	18.0	16.5	15.0
중소기업 세율	11.0	11.0	11.0	11.0	11.0	11.0

주: 캐나다는 15%의 연방법인세율에 주세(province tax)나 지역세(territory tax)를 추가 부담하는데 세율은 주나 지역에 따라 10~16%로 다양함

자료: OECD Statistics

3) 부가세(surtax) 1.12% 포함

5 칠레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칠레의 소득세율은 2012년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2013년 최저세율 0%와 최고세율 40%를 제외하고 중간단계 소득세율이 전반적으로 1~2%p 인하됨
- 칠레의 소득세는 8단계 누진세 체계이며, 조사기간 중 세율체계에 변동은 없었음

<표 1-10> 칠레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페소, %)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0~ 6,099,624	0~ 5,971,806	0~ 6,092,010	0~ 6,321,402	0~ 6,513,372	0	0~ 6,513,372
5.0	6,099,625~ 13,554,720	5,971,807~ 13,270,680	6,092,011~ 13,537,800	6,321,403~ 14,047,560	6,513,373~ 14,474,160	4.0	6,513,373~ 14,474,160
10.0	13,554,721~ 22,591,200	13,270,681~ 22,117,800	13,537,801~ 22,563,000	14,047,561~ 23,412,600	14,474,161~ 24,123,600	8.0	14,474,161~ 24,123,600
15.0	22,591,201~ 31,627,680	22,117,801~ 30,964,920	22,563,001~ 31,588,200	23,412,601~ 32,777,640	24,123,601~ 33,773,040	13.5	24,123,601~ 33,773,040
25.0	31,627,681~ 40,664,160	30,964,921~ 39,812,040	31,588,201~ 40,613,400	32,777,641~ 42,412,680	33,773,041~ 43,422,480	23.0	33,773,041~ 43,422,480
32.0	40,664,161~ 54,218,880	39,812,041~ 53,082,720	40,613,401~ 54,151,200	42,412,681~ 56,190,240	43,422,481~ 57,896,640	30.4	43,422,481~ 57,896,640
37.0	54,218,881~ 67,773,600	53,082,721~ 66,353,400	54,151,201~ 67,689,000	56,190,241~ 70,237,800	57,896,641~ 72,370,800	35.5	57,896,641~ 72,370,800
40.0	67,773,601~	66,353,401~	67,689,001~	70,237,801~	72,370,801~	40.0	72,370,801~

자료: OECD Statistics 및 E&Y(2013)

나. 부가가치세

- 칠레의 부가가치세율은 2004년 19%로 1%p 인상된 후 현재까지 계속 유지됨
 - 칠레는 1975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20%의 세율로 과세하였으며 이후 3차례의 변동이 있었음

다. 법인세

- 2008년 이후 칠레의 법인세율은 2차례에 걸쳐 세율이 개정되어 2008년 17%의 세율에서 현행 20%의 세율로 3%p 인상됨
- 칠레는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세율을 기존 15%에서 17%로 점차 인상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7%의 세율을 유지함
- 2011년 지진과 해일의 피해복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2011년과 2012년의 법인세율을 각각 20.0%와 18.5%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다시 세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소득부터 20.0%의 세율을 영구 적용함

<표 1-11> 칠레의 법인세율 체계 변화

(단위: %)

구분	~2002	2002	2003	2004~2010	2011~
세율	15.0	16.0	16.5	17.0	20.0

자료: OECD Statistics

6 체코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체코의 소득세율은 15%를 유지함
- 체코의 소득세는 2007년까지 12~37%의 누진세 체계였으나 2008년 15%의 단일세율 체계로 변경하고 소득세 계산방법도 대폭 개정됨
- 2007년 이전 체코의 최고세율은 1993년 47%에서 2007년 32%로 점차 인하되었으며, 최저세율은 2006년까지 15%의 세율로 유지되었으나 2007년 12%로 3%p 인하됨
 -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은 1996년부터 1998, 1999, 2001년과 2006년에 걸쳐 계속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함

나. 부가가치세

- 체코의 부가가치세는 2008년 이후 표준세율은 2차례, 경감세율은 4차례에 걸쳐 인상되어 현재 21%의 표준세율과 15%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체코는 1993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22%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표준세율은 2010년에 1%p(19→20%), 2013년 1%p(20→21%)씩 두 차례 인상됨
 - 경감세율은 2008년 4%p(5→9%), 2010년 1%p(9→10%), 2012년 4%p(10→14%), 2013년 1%p(14→15%)를 인상하여 총 4차례에 걸쳐 10%p 인상됨
- 체코의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의 2단계 체계임
 - 경감세율: 식품, 의료기구의 수리용역, 청량음료, 배수 및 하수처리, 대중교통, 해상 및 항공운송, 휘트니스센터 이용, 특정 의료장비, 유아용 카시트, 도서 및 잡지,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장례서비스 등의 공급에 적용됨

<표 1-12> 체코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변화

(단위: %)

구분	~2007	2008~2009	2010~2011	2012	2013~
표준세율	19	19	20	20	21
경감세율	5	9	10	14	15

자료: OECD Statistics 및 E&Y(각 연도)

다. 법인세

- 체코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체계이며, 2008년 이후 2차례 개정되어 2008년 21%에서 현재 19%로 2%p 인하됨
 - 체코는 2000년 31%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10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세율을 인하함

<표 1-13> 체코의 법인세율 체계 변화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년 이후
세율	24	21	20	19

자료: OECD Statistics

7 덴마크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덴마크는 2008년 4단계 누진세 체계에서 2009년 3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함
 - 덴마크는 2009년 중간단계 세율을 38.0%와 44.0%의 2단계에서 37.5%로 단일화함
- 조사대상 기간 중 덴마크 소득세율과 과세표준구간은 매년 개정됨
 - 2009년 누진세 구간을 조정하면서 전체 과세표준구간을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킴
 - 2010년 중간단계 세율을 37.5%에서 36.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구간을 확대하였으며, 최고세율을 59.0%에서 51.5%로 7.5%p 인하함

<표 1-14> 덴마크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크로네, %)

2008		2009		2010~2012		2013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0	0~41,000	0	0~42,900	0	0~42,900	0	0~42,000
38.0	41,001~279,800	37.5	42,901~347,200	36.0	42,901~389,900	36.0	42,001~389,900
44.0	279,801~335,800	59.0	347,201~	51.5	389,901~	51.7	389,901~
59.0	335,801~	-	-	-	-	-	-

주: 덴마크는 소득세율의 8%를 사회보장세로 부과함
 자료: E&Y(각 연도)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덴마크의 부가가치세율은 25%로 유지됨
 - 1967년 15%의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후 1980년대 세율을 22%로 7%p 인상하고 1992년 다시 세율을 25%로 3%p 인상한 후 현재까지 계속 유지됨

다. 법인세

- 조사기간 중 덴마크의 법인세율은 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변동은 없었음
 - 덴마크의 법인세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세율을 34%에서 25%로 9%p 인하된 후 2007년부터 25%로 유지됨

8 에스토니아

가. 개인소득세

- 조사기간 중 에스토니아의 소득세율은 변동 없이 21%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 2004년 이전 소득세율은 26%였으며, 2005년 24%로 2%p 인하된 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p씩 인하되어 2008년 현재 세율인 21%로 개정됨

나. 부가가치세

- 조사기간 중 에스토니아의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 표준세율이 18%에서 20%로 2%p 인상되고 경감세율도 5%에서 9%로 4%p 인상됨
 - 에스토니아의 부가가치세는 1991년에 도입되었으며, 당시 표준세율은 10%였으나 1996년 18%로 인상된 후 2009년까지 유지됨

- 에스토니아의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의 2단계 체계임

- 경감세율은 장애인을 위한 의료장비와 물품, 도서, 간행물과 숙박용역의 공급에 적용됨

<표 1-15> 에스토니아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변화

(단위: %)

구분	~2009. 6. 30	2009. 7. 1~2013
표준세율	18	20
경감세율	5	9

자료: OECD Statistics 및 E&Y(각 연도)

다. 법인세

- 에스토니아의 법인세율은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21%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2008년 이후 세율 변동은 없었음
-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2004년 이전 소득세율은 26%였으며, 2005년 24%로 2%p 인하된 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p씩 인하되어 2008년 현재의 세율인 21%로 개정됨

9 핀란드

가. 개인소득세

- 핀란드의 소득세는 국세, 지방세, 교회세로 구성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방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핀란드의 국세는 누진세 체계로 물가수준에 따른 소득 구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율은 약간의 인하추세였으나 2013년에 최고소득구간을 신설함
 - 고소득자 증세를 위해 논의되던 연대세(solidarity tax)를 2013년부터 10만유로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31.75%로 과세함⁴⁾

<표 1-16> 핀란드의 소득세 중 국세율

(단위: 유로, %)

2008		2009		2010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12,600	0.00	0~13,100	0.00	0~15,200	0.00
12,601~20,800	8.50	13,101~21,700	7.00	15,201~22,600	6.50
20,801~34,000	19.00	21,701~35,300	18.00	22,601~36,800	17.50
34,001~62,000	23.50	35,301~64,500	22.00	36,801~66,400	21.50
62,001~	31.50	64,501~	30.50	66,401~	30.00
2011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15,600	0.00	0~16,100	0.00	0~16,100	0.00
15,601~23,200	6.50	16,101~23,900	6.50	16,101~23,900	6.50
23,201~37,800	17.50	23,901~39,100	17.50	23,901~39,100	17.50
37,801~68,200	21.50	39,101~70,300	21.50	39,101~70,300	21.50
68,201~	30.00	70,301~	29.75	70,301~100,000	29.75
				100,001~	31.75

주: 두 번째 낮은 구간(2013년의 경우 세율 6.5% 적용구간)부터는 가장 낮은 구간(2013년의 경우 세율 0% 적용구간)에 대해 8유로 세금 부과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8~2013.

□ 지방세는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과세소득의 일정률을 부과하며 교회세는 특정 국교회의 신자에게만 소득의 일정률로 부과되는데 조사기간 동안 세율의 큰 변경은 없음

- 2013년 현재 교회세가 부과되는 교회는 루터교(the Evangelical-Lutheran Church)와 동방정교회(the Orthodox Church)임⁵⁾

<표 1-17> 핀란드의 소득세 중 지방세율과 교회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세	16.00~21.00	16.00~21.00	16.50~21.00	16.50~21.50	16.25~21.50	16.25~21.50
교회세	1.00~2.25	1.00~2.25	1.00~2.00	1.00~2.00	1.00~2.15	1.00~2.20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8~2013.

4) Kaj Grussner, "Finland," *Taxation in Europe 2013: The yearly report on the evolution of European tax systems*, Institute for Research on Economic and Fiscal Issues

5) IBFD, Country Analyses, Finland - Individual Taxation (<http://online.ibfd.org>).

나. 부가가치세

- 핀란드의 부가가치세는 과세거래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3단계 체계로 구성됨
- 핀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 경감세율의 일부 구간 인하 후에 계속적으로 인상하는 추세임
 - 핀란드가 EU에 가입하면서 경감세율 중 식품류 등에 적용되는 경감세율을 낮출 계획이었으나 재정건전성의 문제로 연기되다가 정부의 선거공약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17%에서 12%로 인하⁶⁾
 - 재정안정을 위해 2010년과 2013년에 부가가치세율을 1%p씩 인상시킴

<표 1-18> 핀란드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³⁾	2010 ³⁾ -2012	2013
표준세율	22	22	23	24
경감세율	높은세율 ¹⁾	17	12	14
	낮은세율 ²⁾	8	8	9

주: 1) 높은세율의 적용대상은 식품류, 동물사료, 물 등

2) 낮은세율의 적용대상은 영화, 스포츠서비스, 도서, 의약품, 여객운송, 숙박 등임

3) 연도말 적용세율임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08-2013.

다. 법인세

- 핀란드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하 추세를 보임
 - 2012년 법인세율을 26.0%에서 24.5%로 인하하였으나 대신에 개인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28%에서 30%, 32%의 누진세율로 인상
 - 2013년 핀란드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함

6) OECD, *OECD Economic Surveys: Finland*, Volume 2008/6, June 2008, p.78.

<표 1-19> 핀란드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2011	2012~2013
법인세	26.0	24.5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8~2013.

10 프랑스

가. 개인소득세

- 프랑스는 소득을 세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체계인 가족계수제(Family coefficient system)를 적용하고 있음
 - 이 체계에서는 세대합산소득을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계수표에 따라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이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 계수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수로 산정되나 독신·결혼·이혼·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나이 및 숫자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음
 - 예를 들어, 3자녀를 둔 독신이나 이혼한 거주자의 계수는 4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3자녀를 둔 거주자의 계수는 5임
- 소득세율은 조사기간 동안 소득구간에 대한 조정 이외에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임
 - 프랑스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지출의 감소와 세율 인상을 시도하고 있음
 - 2011년부터 25만유로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3~4%의 부가세의 추가징수를 승인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⁷⁾
 - 소득자에 대한 75%의 세율구간이 2012년 말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아 고용주가 소득구간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75%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2013년 말 합헌 결정을 받음⁸⁾

7)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제2호, p.2.

- 이 법안은 2013년과 2014년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

<표 1-20> 프랑스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2008		2009		2010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5,852	0.0	0~5,875	0.0	0~5,963	0.0
5,853~11,673	5.5	5,876~11,720	5.5	5,964~11,896	5.5
11,674~25,926	14.0	11,721~26,030	14.0	11,897~26,420	14.0
25,927~69,505	30.0	26,031~69,783	30.0	26,421~70,830	30.0
69,506~	40.0	69,784~	40.0	70,831~	41.0
2011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5,963	0.0	0~5,963	0.0	0~6,011	0.0
5,964~11,896	5.5	5,964~11,896	5.5	6,012~11,991	5.5
11,897~26,420	14.0	11,897~26,420	14.0	11,992~26,631	14.0
26,421~70,830	30.0	26,421~70,830	30.0	26,632~71,398	30.0
70,831~250,000	41.0	70,831~150,000	41.0	71,399~151,200	41.0
250,001~500,000	41.0(0,3)	150,001~250,000	45.0	151,201~250,000	45.0
500,001~1,000,000	41.0(3,4)	250,001~500,000	45.0(0,3)	250,001~500,000	45.0(0,3)
1,000,001~	41.0(4,4)	500,001~1,000,000	45.0(3,4)	500,001~1,000,000	45.0(3,4)
		1,000,001~	45.0(4,4)	1,000,001~	45.0(4,4)

주: 괄호 안은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세율로 기혼자, 독신자에 대한 추가 세율임
 자료: 2008년~2012년 세율은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8~2012.
 2013년 세율은 IBFD, News, Finance Bill for 2014(<http://online.ibfd.org>)

나. 부가가치세

-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율은 4단계 체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코르시카섬 등은 프랑스 본토와 다른 세율로 부과됨
- 부가가치세율은 조사기간 동안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이외에 변동 없음
 - 2012년부터 5.5%를 적용받던 일부 품목에 대해 새로운 구간으로 분류하고 7.0%로 과세함

8) Deloitte, "Global Rewards Update: France - Final 2014 Finance laws and impact on share plans," January 2014.

<표 1-21>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2011	2012~2013
표준세율	19.6	19.6
중간세율 ²⁾	-	7.0
경감세율 ¹⁾	높은세율 ³⁾	5.5
	낮은세율 ⁴⁾	2.1

주: 1) 프랑스 본토에 대한 세율로 코르시카섬은 표준세율은 동일하나 경감세율이 과세거래별로 13.0%, 8.0%, 0.9%로 차이가 있음

2) 중간세율의 적용대상은 숙박, 음식점 등에서 공급하는 식품 등임

3) 높은세율의 적용대상은 식품류, 도서, 여객운송 등임

4) 낮은세율의 적용대상은 의약품, 신문, 정기간행물 등임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08~2013.

-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하여 표준세율을 20%, 중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경감세율 중 높은세율을 5%로 조정함

- 이는 프랑스 정권 교체로 인해 당초 예정된 최고세율 21.5%보다 낮은 수치임

다. 법인세

- 프랑스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 조사기간 동안 33.33%로 유지되고 있음
- 일정 매출(2억 5천만유로) 이상인 회사들에 부과하는 법인세의 5% 추가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었으나 2년을 추가 연장하여 2015년까지 적용됨

<표 1-22> 프랑스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2013
법인세	33.33

주: 1. 연매출 763만유로가 넘거나 주주의 75% 이상이 개인이 아닌 경우 76만 3천유로를 초과하는 법인세 부분에 대해 사회보장세로 법인세의 3.3%가 가산됨

2. 2011~2015년 동안 일시적인 추가세로 연매출 2억 5천만유로이 넘는 회사들에게는 법인세의 5%가 가산됨

3. 중소기업들이 1. 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3만 8,120유로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됨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8~2013.

11 독일

가. 개인소득세

- 독일의 소득세율은 3단계 누진세 체계로 개인소득과 부부합산소득에 대한 각각의 세율이 존재하며 조사기간 동안 변경이 없음
- 부부합산소득의 구간은 개인소득의 구간의 2배로 부부소득을 평준화하는 의미임

<표 1-23> 독일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구분	2008		2009		2010~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독신	0~7,664	0	0~7,834	0	0~8,004	0
	7,665~52,151	15~42	7,835~52,551	14~42	8,005~52,881	14~42
	52,152~250,000	42	52,552~250,400	42	52,882~250,730	42
	250,001~	45	250,401~	45	250,731~	45
부부 합산	0~15,329	0	0~15,669	0	0~16,009	0
	15,330~104,303	15~42	15,670~105,103	14~42	16,010~105,763	14~42
	104,304~500,000	42	150,104~500,800	42	105,764~501,460	42
	500,001~	45	500,801~	45	501,461~	45

자료: 2008~2012년 세율은 KPMG, "Germany Taxation of International Executives"
 2013년 세율은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Germany 2013"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13.

- 부가 성격으로 독일 통일비용 부담을 위한 연대부가세(solidarity surcharge) 및 일부 주에서 해당되는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에게 교회세를 부과하는데 조사기간 동안 변동 없음

<표 1-24> 독일의 연대부가세와 교회세

(단위: %)

구분	산출기준	2008~2013
연대부가세	산출세액(income tax liability)	5.5
교회세		8.0 또는 9.0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8~2013.
 IBFD, Country Analyses,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http://online.ibfd.org>)

나. 부가가치세

- 독일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과 경감세율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사기간 동안 변경 없음

<표 1-25>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2013
표준세율	19
경감세율 ¹⁾	7

주: 1)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은 도서, 신문, 문화사업, 식품류, 여객운송, 농산품 등임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08~2013.

다. 법인세

- 독일의 법인세율은 단일구간으로 조사기간 동안 변경 없음

<표 1-26> 독일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2013
법인세(연대부가세 ¹⁾)	15(0.825)
영업세율 ²⁾	약 14~17
합산세율	약 23~33

주: 1) 연대부가세는 법인세액의 5.5%가 부과됨

2) 영업세는 과세소득의 조정(장기채무의 이자,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등의 일정 비율을 가산)후 부과되며 기본세율은 3.5%이며 각 지방자치정부마다 다른 승수(2013년: 베를린 410%, 프랑크푸르트-마인 460%, 함부르크 470%, 뮌헨 490%)로 부과됨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8~2013.

IBFD, Country Analyses, Germany - Corporate Taxation (<http://online.ibfd.org>)

12 그리스

가. 개인소득세

- 그리스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세율,

소득구간 및 과세체계에 큰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정건전성과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9단계 세율구간으로 조정하여 최저세율을 25%에서 18%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여 저소득자에게는 보다 낮은세율로 고소득자에게는 보다 높은세율로 과세함
- 2013년부터 8단계 소득구간을 3단계 소득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면세구간을 제거함

<표 1-27> 그리스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2008		2009		2010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12,000	0	0~12,000	0	0~12,000	0
12,001~30,000	27	12,001~30,000	25	12,001~16,000	18
30,001~75,000	37	30,001~75,000	35	16,001~22,000	24
75,001~	40	75,001~	40	22,001~26,000	26
				26,001~32,000	32
				32,001~40,000	36
				40,001~60,000	38
				60,001~100,000	40
				100,001~	45
2011~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5,000	0	일반 ¹⁾			
5,001~12,000	10	0~25,000		22	
12,001~16,000	18	25,001~42,000		32	
16,001~26,000	25	42,001~		42	
26,001~40,000	35	부동산 및 금융			
40,001~60,000	38	0~12,000		10	
60,001~100,000	40	12,001~		33	
100,001~	45				

주: 1) 생활비 지출증빙을 일정비율 구비하는 경우 21,000유로의 소득까지는 2,100유로의 세액공제, 21,000~42,000유로까지는 1,000유로 소득당 100유로 세액공제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8~2013.

IBFD, Country Analyses, Greece - Individual Taxation (<http://online.ibfd.org>)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순소득이 12,000유로 이상인 납세자에게 연대부가세(solidarity tax contribution)를 부과
 -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세(emergency tax)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표 1-28> 그리스의 연대부가세

(단위: 유로, %)

2010~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0~12,000	0
12,001~20,000	1
20,001~50,000	2
50,001~100,000	3
100,001~	4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8~2013.

나. 부가가치세

-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과 2단계의 경감세율을 포함하여 3단계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 구제금융의 상환 및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별 적용항목의 조정과 동시에 세율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29>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2009	20103)	2011~2013
표준세율	19.0(13.0)	23.0(13.0)	23.0(16.0)
경감세율	높은세율 ¹⁾	11.0(6.0)	13.0(9.0)
	낮은세율 ²⁾	4.5(3.0)	6.5(5.0)

주: 1. 괄호 안은 도데카네스, 키클라데스, 스포라데스 제도 및 에게해 섬들에서의 세율

1) 높은세율의 적용대상은 식품류, 운송, 전력, 수도 등임

2) 낮은세율의 적용대상은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등임

3) 연도말 적용세율임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ales tax guide," 2008~2013.

2010년 세율은 IBFD, Country Analyses, Greece - Corporate Taxation (<http://online.ibfd.org>)

다. 법인세

- 그리스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지만 파트너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2010년부터 재정위기 중에도 투자촉진을 위해 일반법인세율을 24%에서 20%로 인하하였으나 IMF, EU 등의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2013년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함

<표 1-30> 그리스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일반	25	25	24	20	20	26
파트너십	20	20	20	25	25	26/33 ¹⁾

주: 1) 50,000유로 이하는 26%, 초과는 33%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8~2013.

13 헝가리

가. 개인소득세

- 헝가리의 소득세는 2010년까지 두 개의 소득구간이 존재하였으나 2011년부터 단일구간으로 조정됨
- 헝가리의 소득세율은 세율의 전반적인 인하, 연대부가세의 폐지, 단일세율로의 조정 등으로 인하되고 있음
 - 2011년부터는 조세체계의 단순화, 근로유인의 창출, 가치분소득의 증가로 인한 저축과 소비 지출의 촉진 등을 위해 16%의 낮은 단일세율로 인하 조정함⁹⁾

9) Ministry for National Economy, “Hungary’s flat-rate personal income tax,” 16 November 2010, (<http://www.mfa.gov.hu/NR/rdonlyres/68F5E85D-7062-4001-8FD8-7946055579B3/0/Hungaryflatratepersonalincometax.pdf>)

<표 1-31> 헝가리의 소득세율

(단위: HUF(포린트), %)

2008~2009		2010		2011 ¹⁾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1,700,000	18	0~5,000,000	17	모든 구간	16
1,700,001~	36	5,000,001~	32		

주: 1) 2011년에는 모든 총소득, 2012년에는 HUF 2,424,000 초과 소득에 대해 1.27을 곱하여 (super-gross) 세율을 적용하여 유효세율이 실제로는 16%에서 20.32%였으나 2013년부터 폐지됨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8~2013.

IBFD, Country Analyses, Hungary - Individual Taxation (<http://online.ibfd.org>)

- 연대부가세는 헝가리의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에 제정되어 2010년에 폐지됨

<표 1-32> 헝가리의 연대부가세(solidarity surtax)

(단위: HUF(포린트), %)

구분	2008	2009	2010~
과세소득	7,137,001~	7,446,001~	N/A
세율	4	4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8~2013.

나. 부가가치세

- 헝가리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과 2단계의 경감세율을 포함하여 3단계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 헝가리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의 인상 및 경감세율 중 높은세율 구간의 신설 등을 통해 인상되고 있음
 - 2009년 재정균형 및 부가가치세와 경제활성화 간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¹⁰⁾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5%로 인상하고 경감세율 중 18% 구간을 신설함

10) Ernst & Young “Worldwide fiscal stimulus” (http://www.ey.com/GL/en/Services/Tax/Worldwide_fiscal_stimulus---Hungary)

- 헝가리 정부는 재정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부가가치 표준세율을 25%에서 27%로 인상함

<표 1-33> 헝가리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³⁾ ~2011	2012~2013
표준세율		20	25	27
경감세율	높은세율 ¹⁾	-	18	18
	낮은세율 ²⁾	5	5	5

주: 1) 높은세율의 적용대상은 식품류, 호텔서비스 등임

2) 낮은세율의 적용대상은 의료, 도서 등임

3) 연도말 적용세율임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08~2013.

다. 법인세

- 헝가리의 법인세율은 2단계 누진세 체계로 2010년 소득구간 및 높은세율의 인상 이후 변경 없음
 - 2010년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 경제위기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대부가세가 폐지되면서 법인세 구간 조정과 높은세율의 인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표 1-34> 헝가리의 법인세율

(단위: HUF(포린트), %)

2008~2009 ¹⁾		2010 ³⁾		2011~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50,000,000	10 ²⁾	0~250,000,000	10	0~500,000,000	10
50,000,001~	16	250,000,001~	19	500,000,001~	19

주: 1) 2009년까지는 세전이익에 배당, 보조금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4%의 연대부가세를 부과하였으나 2010년부터 폐지

2) 2009년에는 10%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종업원 급여가 최소임금의 두 배를 넘는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조건이 없어짐

3) 2010년 7월 1일부터 소득구간이 다시 개정되어 2010년으로 표시된 구간은 2010년 상반기에 적용되고 2010년 하반기는 2011년으로 표시된 소득구간이 적용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8~2013.

Deloitte, "Hungary Tax Alert," 22 July 2010.

14 아이슬란드

가. 개인소득세

- 아이슬란드의 소득세는 국세(중앙정부세)와 지방세(지방정부세)의 두 가지로 구성됨
 - 중앙정부세는 2010년부터 소득구간별 3단계 누진세 체계로 조정되었으며 지방정부세도 소득에 따라 누진세 체계를 갖추고 있음
- 2010년 누진세 체계를 갖추면서 세율의 인상 이후 국세와 지방세의 합산세율의 큰 변경은 없음

<표 1-35> 아이슬란드의 소득세율

(단위: ISK(크로나), %)

2008		2009		2010	
과세소득 구간	세율 ¹⁾	과세소득 구간	세율 ¹⁾	과세소득 구간	세율 ¹⁾²⁾
모든 구간	22.78(12.97)	모든 구간	24.10(13.10)	0~2,400,000	24.10(13.12)
				2,400,001~7,800,000	27.00(13.12)
				7,800,001~	33.00(13.12)
2011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¹⁾²⁾	과세소득 구간	세율 ¹⁾²⁾	과세소득 구간	세율 ¹⁾²⁾
0~2,512,800	22.90(14.41)	0~2,760,000	22.90(14.44)	0~2,897,700	22.90(14.44)
2,512,801~8,166,600	25.80(14.41)	2,760,001~8,452,404	25.80(14.44)	2,897,701~8,874,108	25.80(14.44)
8,166,601~	31.80(14.41)	8,452,405~	31.80(14.44)	8,874,109~	31.80(14.44)

주: 1) 괄호 밖 세율은 국세, 괄호 안 세율은 지방세율

2)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세율(2013년은 평균지방세율)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세율은 2010: 11.24~14.61%, 2011~2013: 12.44~14.48%임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8~2013.

IBFD, Country Analyses, Iceland - Individual Taxation (<http://online.ibfd.org>)

KPMG, Tax rate online - Individual income tax rates table

(<http://www.kpmg.com/Global/en/services/Tax/tax-tools-and-resources/Pages/individual-income-tax-rates-table.aspx>)

나. 부가가치세

- 아이슬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의 2단계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2010년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의 1.0%p 인상 후 변경이 없음

<표 1-36> 아이슬란드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2009	2010~2013
표준세율	24.5	25.5
경감세율 ¹⁾	7.0	7.0

주: 1)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은 국내여행운송, 라디오면허, 신문, 정기발간물, 온천, 난방용 전력 및 석유, 식품류 등임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13.

KPMG, Tax rate online - Indirect tax rate table

(<http://www.kpmg.com/Global/en/services/Tax/tax-tools-and-resources/Pages/indirect-tax-rates-table.aspx>)

International Sales Tax Refund (<http://www.insatax.com/pages/importantvatnews.php>)

다. 법인세

- 아이슬란드의 법인세는 단일세율이나 일반법인과 파트너십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 구분됨
- 법인세율은 2009년 15.0%에서 2013년 20.0%로 계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추세임

<표 1-37> 아이슬란드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2009	2010	2011~2013
일반법인	15.0	18.0	20.0
파트너십 등	26.0	32.7	36.0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8~2013.

KPMG, Tax rate online - Corporate tax rates table

(<http://www.kpmg.com/Global/en/services/Tax/tax-tools-and-resources/Pages/corporate-tax-rates-table.aspx>)

15 아일랜드

가. 개인소득세

- 아일랜드의 소득세율은 조사기간 동안 변경이 없으나 이에 부수되는 사회세 부

과율의 변경으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인상되고 있음

- 아일랜드의 소득세는 2단계 누진세 체계로 되어 있으며 조사기간 동안 소득 구간의 일부 조정만 있음

<표 1-38> 아일랜드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구분	2008		2009~2010		2011~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독신 ¹⁾	0~35,400	20	0~36,400	20	0~32,800	20
	35,401~	41	36,401~	41	32,801~	41
부부 합산 ²⁾	0~44,000	20	0~45,400	20	0~41,800	20
	44,001~	41	45,401~	41	41,801~	41

주: 1) 자녀가 없는 경우의 독신

2)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종속되는 배우자의 소득의 일정금액(2008: 26,800, 2009~2010: 27,400, 2011~2013: 23,800유로)까지 낮은세율을 추가적으로 적용

자료: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Ireland 2013,"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8~2013.

- 2011년 기존의 소득부과금(income levy) 등이 폐지되고 사회세(universal social charge)로 대체되었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부과율이 인상되고 있음

<표 1-39> 아일랜드 사회세(2011년 이전은 소득부과금)

(단위: 유로, %)

2009			2010		2011~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세율 ¹⁾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75,036	1.67	2.00	0~75,036	2.00	0~10,036	2.00 ²⁾
75,037~100,100	3.00	4.00	75,037~174,980	4.00	10,307~16,016	4.00
100,101~174,980	3.33		174,981~	6.00	16,017~100,000	7.00
174,981~250,120	4.67	6.00			100,001~	10.00 ³⁾
250,121~	5.00					

주: 1. 2008년은 해당 없음

1) 근로소득에만 적용

2) 일정규모(2011: 4,004유로, 2012: 10,036유로) 이하인 경우 0.00% 적용

3) 근로소득인 경우 7.00% 적용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8~2013.

나. 부가가치세

- 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두 구간의 경감세율로 구성되었다가 2011년 부터 중간세율의 경감세율이 추가됨
- 2012년에 IMF/EU와의 구제금융에 따른 약정에 의해 표준세율을 2%p 인상하였음

<표 1-40> 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⁴⁾	2010	2011 ⁵⁾	2012~2013
표준세율	21.0	21.5	21.0	21.0	23.0
경감세율	높은세율 ¹⁾	13.5	13.5	13.5	13.5
	중간세율 ²⁾	-	-	-	9.0
	낮은세율 ³⁾	4.8	4.8	4.8	4.8

주: 1) 높은세율의 적용대상은 신문, 정기간행물, 휴가용 숙박시설, 전기, 수선서비스, 부동산개발 등임
 2) 2011년 7월부터 높은세율 적용대상이었던 신문, 정기간행물, 휴가용 숙박시설 등이 중간세율 적용대상으로 변경
 3) 낮은세율의 적용대상은 가축, 그레이하운드 등임
 4) 세율 변경은 2008년 12월에 이루어짐
 5) 연도말 적용세율임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08~2013.
 Irish Tax and Custom (<http://www.revenue.ie/en/tax/vat/rates/current-historic-rates-vat.html>)

다. 법인세

-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단일세율이나 소득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조사기간 동안 표준세율의 변경은 없음
- 2010년까지 아일랜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1년부터 12.5%의 표준세율로 대체됨

<표 1-41>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2010	2011~2013
표준세율	12.5	12.5
국내 제조판매소득 등 ¹⁾	10.0	
불로소득 등 ²⁾ (passive income)	25.0	25.0

주: 1)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의 거래소득과 소프트웨어 개발·데이터처리 등의 일부 서비스활동 소득 등
 2) 물품거래가 없는 임대·투자 소득, 국내거래가 연계되지 않은 국외소득, 천연자원·토지개발 소득 등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8~2013.

16 이스라엘

가. 개인소득세

- 이스라엘의 소득세는 소득구간별 누진세 과세체계로 60세 이상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세율을 적용함
- 소득구간에 대한 조정 이외에 2011년부터 세율이 약간씩 인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세율구간이 신설됨

<표 1-42> 이스라엘의 소득세율

(단위: NIS(셰켈), %)

2008		2009		2010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52,680	30(10)	0~55,080	30(10)	0~57,240	30(10)
52,681~93,720	30(16)	55,081~97,920	30(15)	57,241~101,640	30(14)
93,721~140,640	30(26)	97,921~147,000	30(23)	101,641~152,640	30(23)
140,641~202,080	33	147,001~211,200	32(30)	152,641~219,000	33(30)
202,081~435,120	35	211,201~454,680	34	219,001~472,080	33
435,121~	47	454,681~	46	472,081~	45
2011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60,840	30(10)	0~62,400	30(10)	0~63,360	31(10)
60,841~103,920	30(14)	62,401~106,560	30(14)	63,361~108,120	31(14)
103,921~168,840	30(23)	106,561~173,160	30(21)	108,121~168,000	31(21)
168,841~254,880	30	173,161~261,360	30	168,001~240,000	31
254,881~482,760	33	261,361~501,960	33	240,001~501,960	34
482,761~	45	501,961~	48	501,961~811,560	48
				811,561~	50

주: 괄호 안 세율은 60세 이상에 대한 세율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08~2013.

나. 부가가치세

- 이스라엘의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로 조사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음

<표 1-43> 이스라엘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2009	2010~2011	2012	2013
세율	15.5	16	17	18

자료: KPMG, Tax rate online - Indirect tax rate table

(<http://www.kpmg.com/Global/en/services/Tax/tax-tools-and-resources/Pages/indirect-tax-rates-table.aspx>)

다. 법인세

- 이스라엘의 법인세는 단일세율로 2011년까지 인하하였으나 이후 기간에 다시 인상하고 있음
 - 이스라엘 정부는 법인세율을 2010년부터 매년 1%p 이상 인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재정적자의 감소를 위해 2012년을 세율을 1%p 인상함
 - 이스라엘 의회는 2014년 법인세율을 26.5%로 인상하는 예산법안을 승인함

<표 1-44> 이스라엘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2013
표준세율	27	26	25	24	25

자료: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08~2013.

17 이탈리아

가. 개인소득세

- 이탈리아의 소득세율은 5단계의 과세구간에 걸친 23%에서 43%까지의 누진세 체계임

- 동 세율체계는 200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최고세율인 43%는 75,000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적용함
- 이탈리아 의회는 재정적자의 감축을 위하여 2011년 9월 14일에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가세(surtax)의 추가징수 등을 포함한 긴축패키지 (law decree 138)를 승인하였음
- 3%의 추가 부가세 징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득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함

<표 1-45> 이탈리아의 소득세율 체계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세율	
	2008~2010	2011~2013
0~15,000	23	23
15,001~28,000	27	27
28,001~55,000	38	38
55,001~75,000	41	41
75,001~300,000	43	43
300,001~	43	46 (부가세 포함)

나. 부가가치세

-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경감세율의 복수세율체제로 이루어짐
 - 표준세율의 적용대상: 법에서 정한 경감세율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
 - 10% 경감세율 적용대상: 살아있는 가축, 농축수산물 등
 - 4% 경감세율 적용대상: 우유 등의 특정 농축산물, 신문 등
- 2008~2013년 동안 표준세율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점차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경감세율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

- 20%로 유지되던 표준세율은 2009년 9월 17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21%,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2%로 인상되었음

<표 1-46>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단위: %)

구분	1997. 10. 1~ 2011. 9. 16	2011. 9. 17~ 2013. 6. 30	2013. 7. 1~
표준세율	20	21	22
경감세율	10	10	10
	4	4	4

다. 법인세

-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서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27.5%로 유지되고 있음
 - 2007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33%의 단일세율이었음
- 다만, 2011년 이후부터 석유·가스·전기에너지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되던 로빈세(Robin tax)의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상된 바 있음
 - 로빈세는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유가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금임
 - 인상된 세율(6.5%에서 10.5%로 인상)은 2011년, 2012년 및 2013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됨
 - 즉, 로빈세 부담 대상이 되는 법인은 2008~2010년까지는 34%, 2011~2013년까지는 38%의 총법인세를 부담함

18 일본

가. 개인소득세

-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개인소득세율 체계를 변경하지 않았고 2013년 현재 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200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당시 세율구간을 4단계에서 6단계로 변경시킴
- 현재 5~40%의 6단계 누진세 체계이나, 2015년부터는 4,000만엔 초과 과세소득에 대하여 45%의 최고세율이 신설, 적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음

<표 1-47> 일본의 소득세율 체계

(단위: 만엔, %)

과세소득 구간	세율
195 이하	5
195 초과~330 이하	10
330 초과~695 이하	20
695 초과~900 이하	23
900 초과~1,800 이하	33
1,800 초과	40

나. 부가가치세

- 일본의 소비세율은 단일세율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3년 현재까지 적용세율은 5%로 변동이 없었음
- 소비세율은 4%이나, 소비세액의 25%가 지방소비세로 부과되므로 지방소비세율을 감안하면 그 부담률은 5%가 됨
- 1997년 3월 31일까지의 세율은 3%였으나, 이후 4%로 인상되었으며, 동시에 지방소비세가 창설되었던 것임

- 일본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2012년 세제개혁조치로 2014년부터 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음
 -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8%(국세소비세 6.3%, 지방소비세 1.7%)
 - 2015년 10월 1일부터는 10%(국세소비세 7.8%, 지방소비세 2.2%)

다. 법인세

-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 11월에 수정세법개혁법을 통과시켜 2012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법인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되었음
 - 일반법인의 세율은 30.0%에서 25.5%로 인하됨
 -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과세표준 800만엔 초과 부분의 경우 일반법인의 세 적용과 동일하며, 800만엔 이하 부분의 경우 법정세율은 22%에서 19%로 인하됨
 - 중소기업이란, ‘해당 법인의 자본규모가 1억엔 이하이고 그 소유주 중 자본 규모 5억엔 초과인 법인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함
- 한편, 과세소득 800만엔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이며 한시적으로 특례세율이 적용됨
 -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는 18%,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는 15%가 적용됨

<표 1-48> 일본의 법인세율 체계

(단위: %)

구분		1999.4.1 ~ 2012.3.31	2012.4.1 ~
일반법인		30	25.5
중소법인	800만엔 초과	30	25.5
	800만엔 이하	22(18)	19(15)

19 한국

가. 개인소득세

- 한국의 종합소득세율은 2008년 이후 점차적으로 인하하는 경향을 보임
 - 2007년 12월 31일 법 개정 시 향후 물가상승률 및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음
 - 2008년 12월 26일 법 개정 시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추가 인하하였음

- 다만,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점차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 원래 2009년 12월 31일 법 개정 시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시기를 2010년에서 2012년으로 2년 유예하였으나, 2011년 말 세법개정 시 오히려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38%의 세율을 신설하여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한편 소득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지방세는 그 세율이 10%로서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변화 없음

<표 1-49> 한국의 소득세율 체계

(단위: %)

과세표준 구간	세율			
	2008	2009	2010~2011	2012~2013
0~1,200만원	8	6	6	6
1,201만~4,600만원	17	16	15	15
4,601만~8,800만원	26	25	24	24
8,801만~3억원	35	35	35	35
3억원 초과				38

나. 부가가치세

-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단일세율로서 법 창설 이후 2013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다. 법인세

- 한국의 법인세율은 2008년 이후 점차적으로 인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현재는 10%, 20%, 22%의 3단계 누진세 체계임
 -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법인에 대한 감세정책을 실시한 것임
- 한편 법인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지방세는 그 세율이 10%로서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변화 없음

<표 1-50> 한국의 법인세율 체계

(단위: %)

과세표준 구간	세율			
	2008	2009	2010~2011	2012~2013
2억원 이하	11	11	10	10
2억~200억원	25	22	22	20
200억원 초과				22

20 룩셈부르크

가. 개인소득세

- 룩셈부르크의 소득세율은 2008년 이후 201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인상되는 경향을 보임
 - 룩셈부르크에서는 소득세 본세 외에 소득세액에 일정비율 만큼의 부가세, 즉 ‘고용촉진기금(employment fund)’이 추가로 부과됨

-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소득세 본세 기준 8~38%의 16단계 누진체계에서 각 구간별로 부가세 2.5%가 추가됨
-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소득세 본세 기준 8~39%의 17단계 누진체계에서 각 구간별로 부가세 4%가 추가됨
 - 과세소득이 15만유로를 초과하면, 6%의 부가세가 과세됨
- 2013년은 소득세 본세 기준 8~40%의 18단계 누진체계에서 각 구간별로 부가세 7%가 추가됨
 - 과세소득이 15만유로를 초과하면, 9%의 부가세가 과세됨

〈표 1-51〉 룩셈부르크의 소득세율(부가세 포함) 체계

(단위: 유로, %)

과세표준 구간	세율		
	2008~2010	2011~2012	2013
0 ~ 11,265	0	0	0
11,266 ~ 13,173	8.20	8.32	8.56
13,174 ~ 15,081	10.25	10.40	10.70
15,082 ~ 16,989	12.30	12.48	12.84
16,990 ~ 18,897	14.35	14.56	14.98
18,898 ~ 20,805	16.40	16.64	17.12
20,806 ~ 22,713	18.45	18.72	19.26
22,714 ~ 24,621	20.50	20.80	21.40
24,622 ~ 26,529	22.55	22.88	23.54
26,530 ~ 28,437	24.60	24.96	25.68
28,438 ~ 30,345	26.65	27.04	27.82
30,346 ~ 32,253	28.70	29.12	29.96
32,254 ~ 34,161	30.75	31.20	32.10
34,162 ~ 36,069	32.80	33.28	34.24
36,070 ~ 37,977	34.85	35.36	36.38
37,978 ~ 39,885	36.90	37.44	38.52
39,886 ~ 41,793	38.95	39.52	40.66
41,794 ~ 100,000		40.56	41.73
100,001 ~ 150,000			42.80
150,000 초과		41.34	43.60

나. 부가가치세

- 룩셈부르크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15%), 중간세율(12%), 경감세율(6%), 특별 경감세율(3%) 등 4종이며, 2008년 이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세율 변화는 없음
 - 중간세율: 특정 와인, 장작용 목재, 투자관리·운용 서비스, 광고서비스 등의 공급에 적용됨
 - 경감세율: 가스·전기, 예술작품의 수입 및 국내 공급 등에 적용됨
 - 특별경감세율: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서비스, 알코올음료를 제외한 음식료, 유아용 의류, 생수, 의약품, 여객 운송, 호텔숙박용역, 문화/교육/스포츠 서비스, 공급 등에 적용됨

다. 법인세

- 룩셈부르크의 법인세율은 과세소득 15,000유로 초과 부분에서 2009년 초를 기점으로 22%에서 21%로 인하됨
 - 15,000유로 이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20%의 세율이 유지됨
- 반면,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surtax) 형태인 ‘고용촉진기금(employment fund)’ 부담금은 2008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점차 인상되는 추세임
 - ‘고용촉진기금(employment fund)’은 법인세액의 일정률로 계산되며, 2008년~2010년에는 4%, 2011~2012년에는 5%, 2013년 이후는 7%로 책정됨

<표 1-52> 룩셈부르크의 법인세율 체계

(단위: %)

세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법인 세율	0~15,000유로	20					
	15,000유로 초과	22	21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율		4			5		7

21 멕시코

가. 개인소득세

- 멕시코의 소득세율은 2013년 현재 1.92~30%의 8단계 누진세 체계를 띠고 있으며, 2010년부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2010년부터는 MXN 128,580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해서 구간별로 1.42~2.00% 정도의 세율 인상이 있었음

<표 1-53> 멕시코의 소득세율 체계

(단위: MXN(페소), %)

과세표준 구간	세율	
	2008~2009	2010~2013
0 ~ 5,953	1.92	1.92
5,954 ~ 50,525	6.40	6.40
50,526 ~ 88,793	10.88	10.88
88,794 ~ 108,210	16.00	16.00
108,211 ~ 128,580	17.92	17.92
128,581 ~ 249,243	19.94	21.36
249,244 ~ 392,842	21.95	23.52
392,842 초과	28.00	30.00

나. 부가가치세

- 멕시코의 부가가치세율은 지역에 따라 표준세율과 경감세율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음
- 표준세율: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재화 및 용역의 과세공급에 적용
- 경감세율: 바이아 캘리포니아 주(the state of Baja California) 등 ‘변경 지역(frontier zone)’ 내에서의 무형자산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의 과세공급에 적용
- 2014년 1월 1일부터는 경감세율제도가 폐지되고 표준세율로 대체될 예정임

- 2010년 이후부터 표준세율 및 경감세율은 1%p씩 인상되었음
 - 표준세율은 15%에서 16%, 경감세율은 10%에서 11%로 인상됨

<표 1-54> 멕시코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단위: %)

부가가치세율 종류	2008~2009	2010~2013
표준세율	15	16
경감세율	10	11

다. 법인세

- 멕시코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서 2009년 이전까지는 28%였으나, 2010년 이후 부터는 30%로 인상되었음
 - 법인세에는 추가적인 부가세(surtax)가 없음

<표 1-55> 멕시코의 법인세율 체계

(단위: %)

세목	2008~2009	2010~2013
법인세율	28	30

22 네덜란드

가. 개인소득세

- 네덜란드의 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4단계의 누진세 체계로 되어 있으며, 2008년 부터 2013년까지 물가수준 변동에 따라 해당 계층의 범위를 해마다 조금씩 조정해 왔으며, 소득세율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 하위 첫 번째 계층의 세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1.85~2.45% 범위 내에서 움직였으나 2013년에는 5.85%로 다소 증가함

- 하위 두 번째 계층의 세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0.70~10.85% 범위 내에서 변동되었음
 - 두 개의 고소득층 세율구간에서의 세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42% 및 52%로 동일하게 유지됨
- 다만, 하위 첫 번째 계층구간 및 두 번째 계층구간에서는 국가보험료(사회보장 기여금)를 각각 21.15% 및 31.15% 추가 부담하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네덜란드의 저소득층의 세부담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 65세 이상인 노인은 국가보험료를 첫 번째 및 두 번째 계층구간까지 13.25%를 부담함

<표 1-56> 네덜란드의 소득세율 체계

(단위: 유로, %)

2008		2009		2010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0~17,579	2.45	0~17,878	2.35	0~18,218	2.30
17,580~31,589	10.70	17,879~32,127	10.85	18,219~32,738	10.80
31,590~53,860	42.00	32,128~54,776	42.00	32,739~54,367	42.00
53,860 초과	52.00	54,776 초과	52.00	54,367 초과	52.00
2011		2012		2013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0~18,628	1.85	0~18,945	1.95	0~19,645	5.85
18,629~33,436	10.80	18,946~34,055	10.80	19,646~33,363	10.85
33,437~55,694	42.00	34,056~56,491	42.00	33,364~55,991	42.00
55,694 초과	52.00	56,491 초과	52.00	55,991 초과	52.00

나. 부가가치세

- 네덜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경감세율 및 특별세율로 이루어짐
- 표준세율의 적용대상: 법에서 정한 경감세율, 특별세율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

- 6% 경감세율 적용대상: 농산품, 의약품, 물, 도서, 가스, 유류, 목재 등 재화와 도서의 대여, 특정 품목의 수선, 숙박시설의 제공 등과 같은 용역의 공급
 - 5.1% 특별세율 적용대상: 농업, 어업, 목재업, 원예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그 생산품
- 표준세율은 2001년 1월 1일 이후 19%로 운영되다가 2012년 10월 1일부터 21%로 인상되었으며, 경감세율 및 특별세율도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표 1-57> 네덜란드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단위: %)

부가가치세율 종류	2001~2012.9.30	2012.10.1~2013
표준세율	19.0	21.0
경감세율		6.0
특별세율		5.1

다. 법인세

- 네덜란드의 법인세율은 2단계 누진세 체계이며, 과세소득 20만유로까지는 지속적으로 20%의 세율이 유지되어 왔고, 20만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세율이 25.5%에서 25.0%로 인하되었음

<표 1-58> 네덜란드의 법인세율 체계

(단위: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2008~2010	2011~2013
20만유로 이하		20.0
20만유로 초과	25.5	25.0

23 뉴질랜드

가. 개인소득세

- 뉴질랜드의 소득세율은 2008년 이후 201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변경되어

왔으며 인하되는 추세에 있음

- 2008년에 3단계 누진세로서 60,000뉴질랜드달러 이상에서 39%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오다가, 2009년에는 7단계 누진세 체계로 재편되어 70,000뉴질랜드달러 이상에서 39%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2010년 이후부터 4단계 누진세 체계로 정착되었으며, 2012년까지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음

<표 1-59> 뉴질랜드의 소득세율 체계

(단위: 뉴질랜드달러, %)

2008		2009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0~38,000	19.50	0~9,500	13.75
38,001~60,000	33.00	9,501~14,000	16.75
60,000 초과	39.00	14,001~38,000	21.00
		38,001~40,000	27.00
		40,001~60,000	33.00
		60,001~70,000	36.00
		70,000 초과	39.00
과세표준 구간	2010	2011	2012~2013
	세율	세율	세율
0~14,000	12.50	11.50	10.50
14,001~48,000	21.00	19.25	17.50
48,001~70,000	33.00	31.50	30.00
70,000 초과	38.00	35.50	33.00

나. 부가가치세

- 뉴질랜드의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단일세율로서 12.5%가 적용되어 오다가 2010년 10월 1일부터 15.0%로 인상되었음

<표 1-60> 뉴질랜드의 GST 세율 체계

(단위: %)

세목	2010년 9월 30일 이전	2010년 10월 1일 이후
GST 세율	12.5	15.0

다. 법인세

- 뉴질랜드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체계로서, 거주자 법인 및 집합투자펀드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08년 이전에는 33%로 적용되어 오다가 2009년에 30%, 2012년에 28%로 변경하여 세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 1-61> 뉴질랜드의 법인세율 체계

(단위: %)

법인세율	2008	2009~2011	2012년 이후
거주자 법인, 집합투자펀드	33	30	28

24 노르웨이

가. 개인소득세

- 노르웨이에서는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비거주자, 독신 거주자, 부양가족이 있는 거주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액은 ‘총통상소득’에서 ‘비과세 공제액’을 차감한 ‘순과세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소득세율은 28% 단일세율로서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 다만, 노르웨이 북부지방 일부 주에서의 소득세율은 24.5%임
- 그러나 ‘비과세 공제액’ 및 고소득층에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의 임계점 수준이 해마다 물가연동되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
 - ‘비과세 공제액’은 납세자별로 다르게 적용됨
 - 일정수준 이상의 ‘순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9% 또는 12%의 부가세(surtax)가 부과됨

<표 1-62> 노르웨이의 비과세 공제액 추이

(단위: 크로네)

납세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거주자	0	0	0	0	0	0
독신 거주자	38,850	40,800	42,210	43,600	45,350	47,150
부양가족 있는 거주자	77,700	81,600	84,420	87,200	90,700	94,300

<표 1-63> 노르웨이의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의 임계점 추이

(단위: 크로네)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 부과 임계점	420,000	441,000	456,400	471,200	490,000	509,600
12% 부과 임계점	682,500	716,600	741,700	765,800	796,400	828,300

나. 부가가치세

- 노르웨이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경감세율, 특별 경감세율 3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표준세율이 2004년 24%에서 25%로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 2013년 현재까지 변동 없음
 - 경감세율(15%)은 식자재의 공급에, 특별 경감세율(8%)은 여객운송, 공영방송, 영화, 숙박서비스의 공급 등에 적용됨

다. 법인세

- 노르웨이의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28% 단일세율로서 2008년부터 2013년 현재 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다만, 스텔바르(Svalbard) 지역 내에 거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6%의 우대세율을 적용함
 - 2012년 1월 1일부터는 스텔바르 지역 내의 노동이나 자본 형성에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과세소득 중 1,500만크로네를 초과하는 부분은 28%의 세율이 적용됨

25 폴란드

가. 개인소득세

- 폴란드의 개인소득세율은 2009년부터 기존 3단계 10~40% 누진세 체계에서 2단계 18~32% 누진세 체계로 재편되었으며, 이로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효과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감세효과가 발생함
- 과세소득 PLN 44,490 이하의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0%에서 18%로 상향된 반면, 과세소득 PLN 85,528을 초과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40%에서 32%로 하향됨

<표 1-64> 폴란드의 소득세율 체계

(단위: PLN, %)

2008		2009~2013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0~44,490	10	0~85,528	18
44,491~85,528	30	85,528 초과	32
85,528 초과	40		

나. 부가가치세

- 폴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경감세율, 특별 경감세율 3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각각 22%에서 23%, 7%에서 8%, 3%에서 5%로 인상되었음
- 경감세율은 특정 농산물, 살충제 및 비료, 특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호텔 서비스, 여객운송, 문화서비스 공급 등에 적용됨
- 특별 경감세율은 특정 가공/미가공 식료품, 서적 및 정기간행물

<표 1-65> 폴란드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단위: %)

부가가치세율 종류	2008~2010	2011~2013
표준세율	22	23
경감세율	7	8
특별 경감세율	3	5

다. 법인세

- 폴란드의 법인세율은 2004년 이래로 계속하여 19% 단일세율이 유지되고 있음
 - 다만, 법인이 신고한 과세소득과 과세당국이 경정한 과세소득 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율로 과세함

26 포르투갈

가. 개인소득세

- 포르투갈의 소득세율은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음
 - 2012년까지 8단계의 세율을 운영하고 있다가 2013년에 정비하여 5단계의 세율 체계로 정비함
- 포르투갈의 소득세율은 5단계의 과세구간에 걸친 14.5%에서 48.0%까지의 누진세 체계임
 - 최고세율인 48%는 80,000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적용함

<표 1-66> 포르투갈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2008		2009		2010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4,639	10.50	0 ~4,755	10.50	0 ~4,793	11.08
4,640 ~7,017	13.00	4,756 ~7,192	13.00	4,794 ~7,250	13.58

<표 1-66>의 계속

(단위: 유로, %)

2008		2009		2010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7,018 ~17,401	23.50	7,193 ~17,836	23.50	7,251 ~17,979	24.08
17,402 ~40,020	34.00	17,837 ~41,021	34.00	17,918 ~41,349	34.88
40,021 ~58,000	36.50	41,022 ~59,450	36.50	41,350 ~59,926	37.38
58,001 ~62,546	40.00	59,451 ~64,110	40.00	59,927 ~64,623	40.88
62,547 ~	42.00	64,111 ~	42.00	64,624 ~150,000	42.88
				150,001 ~	45.88
2011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4,898	11.50	0 ~4,898	11.50	0 ~7,000	14.50
4,899 ~7,410	14.00	4,899 ~7,410	14.00	7,001 ~20,000	23.60
7,411 ~18,375	24.50	7,411 ~18,375	24.50	20,001 ~40,000	30.30
18,376 ~42,259	35.50	18,376 ~42,259	35.50	40,001 ~80,000	37.65
42,260 ~61,244	38.00	42,260 ~61,244	38.00	80,001 ~	48.00
61,245 ~66,045	41.50	61,245 ~66,045	41.50		
66,046 ~153,300	43.50	66,046 ~153,300	43.50		
153,301 ~	46.50	153,301 ~	46.50		

자료 : OECD,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2008~2013년 동안 표준세율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점차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경감세율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
 - 2008년 이전에 21%로 유지되던 표준세율은 2009년과 2010년에는 1% 인하되었다가 2011년부터 3%가 인상되어 2013년까지 적용되고 있음
-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과 2단계의 경감세율로 이루어진 3단계 체계로 이루어짐
 - 표준세율의 적용대상 : 법에서 정한 경감세율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
 - 13% 경감세율 적용대상 : 캔으로 된 고기, 식용 내장, 커피, 잼, 젤리, 스낵,

레스토랑의 음식 및 음료, 기름 및 마가린 등

- 6% 경감세율 적용대상 : 낙농제품, 소프트드링크, 음료, 손질된 감자 등
- Madeira제도는 2013년 현재 표준세율 22%와 경감세율 12% 및 5%의 세율을 적용하며, Azores제도는 2013년 현재 표준세율 16%와 경감세율 9% 및 3%의 세율을 적용함

<표 1-67>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표준세율	21	21	21	23	23	23	
경감세율 1	12	12	12	13	13	13	
경감세율 2	5	5	5	6	6	6	

자료 : OECD,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서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25%로 유지되고 있음
 - 단 Azores제도는 17.5%의 경감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그러나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할 예정임

<표 1-68> 포르투갈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표준세율	25	25	25	25	25	25	2014년부터 인하 예정

자료: OECD, IBFD(www.ibfd.org)

<표 1-69> 2014년 이후 포르투갈의 법인세율 인하 예정 세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표준세율	23	20	17	17	17

자료: OECD, IBFD(www.ibfd.org)

27 슬로바키아공화국

가. 개인소득세

- 슬로바키아공화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개인소득세율 체계를 변경하지 않고 19%의 단일세율을 유지하다가 2013년 25%의 세율구간을 신설함
-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해 34,041유로 이상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세율로 변경함

<표 1-70>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개인소득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기본세율	19	19	19	19	19	19	2013년 인상
34,401유로 이상	-	-	-	-	-	25	

자료: OECD,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부가가치세율은 2단계 체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본세율을 1%p 인상하여 20%의 기본세율로 2013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¹¹⁾
- 2011년 1%p 인상 시에는 1년간의 일시적인 인상으로 예정하였으나 그 이후 1%p의 인상분이 고정됨
- 20%의 기본세율과 10%의 경감세율로 운용하고 있음
- 10%의 경감세율은 제약, 도서 및 종이 인쇄물에 대해 적용함

11) http://www.kpmg.com/CZ/en/IssuesAndInsights/ArticlesPublications/Financial-Update/Documents/KPMG_Financial-Update-2013-01.pdf

<표 1-71>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기본세율	19	19	19	20	20	20	2011년 인상
경감세율	10	10	10	10	10	10	

자료: OECD,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슬로바키아공화국은 단일세율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9%의 세율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 4%p를 인상하여 23%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표 1-72>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세율	19	19	19	20	20	23	2011년과 2013년에 인상

자료: OECD, IBFD(www.ibfd.org)

28 슬로베니아

가. 개인소득세

- 슬로베니아의 개인소득세율은 3단계 누진세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8년 이후 2012년까지는 변화가 없었으나 2013년에 일시적으로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함¹²⁾
- 50%의 최고세율은 2014년까지 운용한 후 2015년부터는 다시 최고세율을 41%로 인하할 예정임
- 슬로베니아는 세율을 인상하지는 않았으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과세구간을

12) <http://www.pkf.com/media/1958993/slovenia%20pkf%20tax%20guide%202013.pdf>

2008년 이후 매년 인상시켜 왔음

- 세율구간의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장치임

<표 1-73> 슬로베니아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2008		2009		2010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7,188	16	0 ~7,410	16	0 ~7,529	16
7,189 ~14,375	27	7,411 ~14,821	27	7,530 ~15,058	27
14,376 ~	41	14,822 ~	41	15,059 ~	41
2011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7,634	16	0 ~7,841	16	0 ~8,021	16
7,635 ~15,269	27	7,842 ~15,681	27	8,022 ~18,960	27
15,270 ~	41	15,682 ~	41	18,961 ~70,907	41
				70,908 ~	50

자료: OECD,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슬로베니아의 부가가치세율은 2단계 세율로서 기본세율 20%와 경감세율 8.5%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2년 이후로 변동이 없음

- 경감세율은 음식, 수도공급, 제약, 책과 기타 종이인쇄물, 허가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주택, 기타 지정된 서비스 등에 대해 적용함

<표 1-74> 슬로베니아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기본세율	20.0	20.0	20.0	20.0	20.0	20.0	2002년 이후 동일
경감세율	8.5	8.5	8.5	8.5	8.5	8.5	2002년 이후 동일

자료: OECD,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슬로베니아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며 2008년 이후 2013년 까지 매년 1%씩 인하되어 왔음
-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업종은 0%의 세율을 적용받음
 - 펀드투자법에 의한 투자펀드이며 이익의 90% 이상을 11월 30일까지 분배하는 펀드
 - 연금법에 의한 연금펀드
 - 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관리하는 보험회사

<표 1-75> 슬로베니아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본세율	22	21	20	19	18	17
경감세율	0	0	0	0	0	0

자료: OECD, IBFD(www.ibfd.org)

29 스웨덴

가. 개인소득세

- 스웨덴의 국가소득세율은 3단계 누진세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8년 이후 2013년 현재까지의 세율은 변동이 없으며 과세구간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음
- 세율구간의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장치임
- 스웨덴의 개인소득세는 지방소득세와 국가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소득세율은 지방마다 다름
- 국가소득세율은 2013년에는 413,200스웨덴크로나까지는 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은 국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스웨덴의 개인소득세는 국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고려해야 함
 - 수도 스톡홀름은 30.39%의 지방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2013년 스톡홀름 주민은 과세표준이 591,600스웨덴크로나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소득세율 25%에 지방소득세율 30.39%를 합하여 총 55.39%의 개인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체계임

<표 1-76> 스웨덴의 소득세율

(단위: 스웨덴크로나, %)

2008		2009		2010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328,800	0	0 ~367,600	0	0 ~372,100	0
328,001 ~495,000	20	367,601 ~526,200	20	372,101 ~532,700	20
495,001 ~	25	526,201 ~	25	532,701 ~	25
2011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383,000	0	0 ~401,100	0	0 ~413,200	0
383,001 ~548,300	20	401,101 ~574,300	20	413,201 ~591,600	20
548,301 ~	25	574,301 ~	25	591,601 ~	25

자료: OECD,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스웨덴은 2008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율을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음
- 스웨덴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25%, 중간세율 12%, 경감세율 6%, 특별 경감세율 0% 등 4종이며, 2008년 이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세율 변화는 없음
 - 12% 중간세율: 호텔, 레스토랑, 대규모 음식공급서비스, 예술작품
 - 6% 경감세율: 대중교통, 도서, 신문, 인증 수수료, 일부 문화공연

<표 1-77> 스웨덴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기본세율	25	25	25	25	25	25	변동 없음
중간세율	12	12	12	12	12	12	변동 없음
경감세율	6	6	6	6	6	6	변동 없음

자료: OECD,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9년 28.0%에서 26.3%로 인하 후 4년간 지속되다 2013년에 22.0%로 대폭 인하됨
 - 스웨덴 주변국인 영국, 핀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기 시작하여 스웨덴도 조세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법인세 인하를 단행함
- 특이 사항으로 뮤추얼 펀드(värdepappersfonder)에 대해서는 30%의 특별 법인세율을 적용함

<표 1-78> 스웨덴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율	28.0	26.3	26.3	26.3	26.3	22.0

자료: OECD, IBFD(www.ibfd.org)

30 스페인

가. 개인소득세

- 스페인의 개인소득세율은 6단계의 누진세 체계이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변동이 없었으나 2012년에 최고 세율구간이 신설되면서 소폭 인상됨

- 스페인의 개인소득세는 국가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50:50의 비율로 구성됨
 - 따라서 표의 세율 중 24%인 것은 12%는 국가소득세, 12%는 지방소득세임
 - 그러나 2013년 현재의 스페인의 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추가적인 세율이 더해진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가세(surtax)가 과세구간마다 더해진 것임
 - 따라서 2013년의 과세구간 17,707유로까지의 세율 24.75%는 국가소득세 12%와 지방소득세 12% 및 추가세율 0.75%로 구성되는 것임

<표 1-79> 스페인의 소득세 부가세(surtax)

(단위: 유로, %)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17,707	0.75	0 ~17,707	0.75
17,708 ~33,007	2.00	17,708 ~33,007	2.00
33,008 ~53,407	3.00	33,008 ~53,407	3.00
53,408 ~120,000	4.00	53,408 ~120,000	4.00
120,001 ~175,000	5.00	120,001 ~175,000	5.00
175,001 ~300,000	6.00	175,001 ~300,000	6.00
300,001 ~	7.00	300,001 ~	7.00

자료: OECD, IBFD(www.ibfd.org)

<표 1-80> 스페인의 소득세율

(단위: 유로, %)

2008		2009		2010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17,707	27.66	0 ~17,707	27.66	0 ~17,707	27.66
17,708 ~33,007	32.27	17,708 ~33,007	32.27	17,708 ~33,007	32.27
33,008 ~53,407	42.64	33,008 ~53,407	42.64	33,008 ~53,407	42.64
53,408 ~	48.63	53,408 ~	48.63	53,408 ~	48.63
2011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17,707	24.00	0 ~17,707	24.75	0 ~17,707	24.75
17,708 ~33,007	28.00	17,708 ~33,007	30.00	17,708 ~33,007	30.00
33,008 ~53,407	37.00	33,008 ~53,407	40.00	33,008 ~53,407	40.00

<표 1-80>의 계속

(단위: 유로, %)

2011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53,408 ~120,000	43.00	53,408 ~120,000	47.00	53,408 ~120,000	47.00
120,001 ~175,000	45.00	120,001 ~175,000	49.00	120,001 ~175,000	49.00
175,001 ~	47.00	175,001 ~300,000	51.00	175,001 ~300,000	51.00
		300,001 ~	52.00	300,001 ~	52.00

자료: OECD,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스페인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경감세율, 특별 경감세율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8년 이후 인상추세를 보여 기본세율이 18%에서 21%로 인상됨
 - 8% 경감세율: 호텔 및 숙박서비스, 여객운송, 문화서비스, 상업 전시회, 농업 서비스, 음식, 화훼, 동물의약품, 의료용역, 예술 공연 등에 적용됨
 - 4% 경감세율: 기초 식료품(빵, 우유, 우유 가공식품, 달걀), 의약품(사람대상), 도서, 신문, 학교에서 사용하는 인쇄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 당해 세율은 2010년 7월에 새로 도입된 세율임

<표 1-81> 스페인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기본세율	16	16	18	18	18	21	
경감세율	7	7	8	8	8	10	
특별경감세율	n/a	n/a	4	4	4	4	2010년 7월에 도입

자료: OECD,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스페인의 법인세율은 2008년 이후 변동 없이 30%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율도 25%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뮤추얼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세무신고 요건이 미비한 비영리법인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음
- 세무신고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은 10%의 세율을 적용받음
- 모집에 의한 투자기구는 1%의 세율을 적용받음
- 연금관련 기관이나 펀드는 0%의 세율을 적용받음

<표 1-82> 스페인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기본세율	30	30	30	30	30	30	변동 없음
중소기업세율	25	25	25	25	25	25	변동 없음

자료: OECD, IBFD(www.ibfd.org)

31 스위스

가. 개인소득세

- 스위스의 소득세는 연방정부소득세와 주정부소득세(Cantonal Tax)로 구성되며 주정부소득세는 주마다 다름
- 2008년 이후 2013년 현재까지 연방정부소득세는 0~11.5%의 11단계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었으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2011년에 소득구간 범위를 인상함
- 주정부소득세를 고려할 때의 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으며 각 주마다 세율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계산은 각 주의 세법을 고려해서 산출해야 함

<표 1-83> 스위스의 연방정부소득세율

(단위: 스위스프랑, %)

과세소득 구간	2008~ 2010	과세소득 구간	2011	과세소득 구간	2012~ 2013
0 ~13,600	0.00	0 ~14,400	0.00	0 ~14,500	0.00
13,601 ~29,800	0.77	14,401 ~31,500	0.77	14,501 ~31,600	0.77
29,801 ~39,000	0.88	31,501 ~41,200	0.88	31,601 ~41,400	0.88
39,001 ~52,000	2.64	41,201 ~55,000	2.64	41,401 ~55,200	2.64
52,001 ~68,300	2.97	55,001 ~72,200	2.97	55,201 ~72,500	2.97
68,301 ~73,600	5.94	72,201 ~77,700	5.94	72,501 ~78,100	5.94
73,601 ~97,700	6.60	77,701 ~103,000	6.60	78,101 ~103,600	6.60
97,701 ~127,100	8.80	103,001 ~133,900	8.80	103,601 ~134,600	8.80
127,101 ~166,200	11.00	133,901 ~175,000	11.00	134,601 ~176,000	11.00
166,201 ~712,400	13.20	175,001 ~751,200	13.20	176,001 ~755,200	13.20
712,401 ~	11.50	751,201 ~	11.50	755,201 ~	11.50

자료: OECD,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스위스는 2008년 이후 한 번의 부가가치세 인상이 있었으며 2011년 표준세율이 0.4% 인상된 것이 그 내용임
-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과 경감세율 및 특별경감세율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감세율이 2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계는 4단계임
 - 표준세율: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재화 및 용역의 과세공급에 적용
 - 3.8% 경감세율: 숙박업(조식 제공서비스 포함)
 - 2.5% 경감세율: 식료품 및 술(레스토랑 등에서 구매하는 것은 제외), 신문, 도서, 라디오서비스, TV서비스, 의약품 등

<표 1-84>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표준세율	7.6	7.6	7.6	8	8	8
경감세율1	3.8	3.8	3.8	3.8	3.8	3.8
경감세율2	2.5	2.5	2.5	2.5	2.5	2.5
특별경감세율	0	0	0	0	0	0

자료: OECD,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스위스의 법인세는 연방정부세와 칸톤(Canton)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8년 이후 연방정부의 세율은 변동이 없음

○ 스위스의 각 칸톤들은 각자 세율을 정하여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법인세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칸톤의 세법을 적용해야 함

<표 1-85> 스위스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연방세율	8.5	8.5	8.5	8.5	8.5	8.5	
조정된 연방세율	6.7	6.7	6.7	6.7	6.7	6.7	가상의 칸톤을 기준으로 한 세율임
칸톤세 등	14.47	14.47	14.47	14.47	14.47	14.47	
총법인세율	21.71	21.71	21.71	21.71	21.71	21.71	조정된 연방세율과 칸톤세의 합

주: 조정된 연방세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방세율의 일정부분을 조정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임
 자료: OECD, IBFD(www.ibfd.org)

32 터키

가. 개인소득세

□ 터키의 소득세율은 4단계 누진세 체계로 되어 있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세율은 변동이 없으나 과세구간을 매년 인상함

- 과세구간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켜줌

<표 1-86> 터키의 소득세율

(단위: 터키리라, %)

2008		2009		2010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7,800	15	0 ~8,700	15	0 ~8,800	15
7,801 ~19,800	20	8,701 ~22,000	20	8,801 ~22,000	20
19,801 ~44,700	27	22,001 ~50,000	27	22,001 ~76,200	27
44,701 ~	35	50,001 ~	35	76,201 ~	35
2011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9,400	15	0 ~10,000	15	0 ~10,700	15
9,401 ~23,000	20	10,001 ~25,000	20	8,801 ~26,000	20
23,001 ~80,000	27	25,001 ~88,000	27	22,001 ~94,000	27
80,001 ~	35	88,001 ~	35	94,001 ~	35

자료: OECD,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표준세율은 2001년에 17%에서 18%로 인상된 후 변동 없이 18%로 2013년 현재 까지 유지되고 있음
- 터키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경감세율 및 특별세율의 3단계 세율로 이루어짐
 - 표준세율의 적용대상 : 법에서 정한 경감세율, 특별세율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
 - 8% 경감세율 적용대상 : 도서 인쇄물, 교육용역 등
 - 1% 특별세율 적용대상 : 농산품, 식품 등

<표 1-87> 터키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본세율	18	18	18	18	18	18
경감세율	8	8	8	8	8	8
특별세율	1	1	1	1	1	1

자료: OECD,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터키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체계이며 2006년에 30%에서 20%로 인하 후 20%의 세율이 2013년까지 유지되고 있음

<표 1-88> 터키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세율	20	20	20	20	20	20	2006년 인하

자료: OECD, IBFD(www.ibfd.org)

33 영국

가. 개인소득세

- 영국의 개인소득세율은 2008년 이후 세율구간 신설을 통하여 2013년 현재 최고세율 45%를 포함한 4단계 누진세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2010년에 15만파운드 초과에 대하여 50% 세율을 추가함으로써 소득세 인상의 추세를 보임
 - 영국은 세율 인상보다는 세율 구간의 범위 인상을 통하여 개인소득세를 인상하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정책에 따라 범위의 인상과 인하를 함

- 2011년부터는 저세율 과세구간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증가시킴
- 2013년에는 고세율 적용 납세자를 늘렸지만 최고세율은 낮춤

<표 1-89> 영국의 소득세율

(단위: 파운드, %)

2008		2009		2010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34,800	20	0 ~37,400	20	0 ~37,400	20
34,801 ~	40	37,401 ~	40	37,401 ~150,000	40
				150,001 ~	50
2011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 ~35,000	20	0 ~34,370	20	0 ~32,010	20
35,001 ~150,000	40	34,371 ~150,000	40	32,011 ~150,000	40
150,001 ~	50	150,001 ~	50	150,001 ~	45

자료: OECD,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2단계의 체계로서 기본세율 20%와 경감세율 5%로 이루어져 있음
 - 5% 경감세율 : 주택 개조 및 수리, 여성 위생용품, 국내 전기 공급,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 2008년 이후 2010년까지는 17.5%로 유지되다가 2011년에 인상을 통하여 20%로 인상되어 2013년까지 유지되고 있음

<표 1-90>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본세율	17.5	17.5	17.5	20	20	20
경감세율	5	5	5	5	5	5

자료: OECD, IBFD(www.ibfd.org)

다. 법인세

- 영국의 법인세율은 일반법인과 중소기업을 구별하여 적용하는 2단계의 세율 체계로서 2008년 이후 인하되는 경향을 보임
 - 일반법인에 적용하는 기본세율과 중소기업세율 각각은 단일세율임
 - 2014년 21%, 2015년 20%로 기본세율 인하가 예정되어 있음

<표 1-91> 영국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본세율	28	28	28	26	24	23
중소기업세율	21	21	21	20	20	20

자료: OECD, IBFD(www.ibfd.org)

34 미국

가. 개인소득세

- 미국의 개인소득세는 6단계의 누진세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8년 이후 과세 구간 범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물가상승에 따른 세금 인상을 상쇄시켜 왔음
 - 과세 한계치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게 함
- 미국의 개인소득세는 세율은 동일하지만 미혼과 기혼, 세대주에 따라서 세율 적용 소득구간의 차이를 조금씩 두고 있음
 - 아래 표는 미혼인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소득세구간을 기준으로 한 표임

<표 1-92> 미국의 소득세율

(단위: 달러, %)

2008		2009		2010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8,025	10	0~8,350	10	0~8,375	10
8,026~32,550	15	8,351~33,950	15	8,376~34,000	15
32,551~78,850	25	33,951~82,250	25	34,001~82,400	25
78,851~164,550	28	82,251~171,550	28	82,401~171,850	28
164,551~357,700	33	171,551~372,950	33	171,851~373,650	33
357,701~	35	372,951~	35	373,651~	35
2011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8,500	10	0~8,700	10	0~8,925	10
8,501~34,500	15	8,701~35,350	15	8,926~36,250	15
34,501~83,600	25	35,351~85,650	25	36,251~87,850	25
83,601~174,400	28	85,651~178,650	28	87,851~183,250	28
174,401~379,150	33	178,651~388,350	33	183,251~398,350	33
379,151~	35	388,351~	35	398,351~400,000	35
				400,001~	39.6

자료: OECD, IBFD(www.ibfd.org)

나. 부가가치세

-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고 각 주마다 다양한 세율의 판매세(sales tax)를 운용하고 있음

다. 법인세

- 미국의 법인세율은 8단계의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335,000달러 초과 시 세율이 39%에서 35%로 인하되어 다시 적용되는 것이 특징임
- 18,333,333달러 초과 시에도 세율이 그 전 단계의 세율인 38%보다 3%p 인하되어 적용되는 특징이 있음

<표 1-93> 미국의 법인세율

(단위: 달러, %)

2008		2009		2010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50,000	15	0~50,000	15	0~50,000	15
50,001~75,000	25	50,001~75,000	25	50,001~75,000	25
75,001~100,000	35	75,001~100,000	35	75,001~100,000	35
100,001~335,000	39	100,001~335,000	39	100,001~335,000	39
335,001~10,000,000	34	335,001~10,000,000	34	335,001~10,000,000	34
10,000,001~15,000,000	35	10,000,001~15,000,000	35	10,000,001~15,000,000	35
15,000,001~18,333,333	38	15,000,001~18,333,333	38	15,000,001~18,333,333	38
18,333,334~	35	18,333,334~	35	18,333,334~	35
2011		2012		2013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50,000	15	0~50,000	15	0~50,000	15
50,001~75,000	25	50,001~75,000	25	50,001~75,000	25
75,001~100,000	35	75,001~100,000	35	75,001~100,000	35
100,001~335,000	39	100,001~335,000	39	100,001~335,000	39
335,001~10,000,000	34	335,001~10,000,000	34	335,001~10,000,000	34
10,000,001~15,000,000	35	10,000,001~15,000,000	35	10,000,001~15,000,000	35
15,000,001~18,333,333	38	15,000,001~18,333,333	38	15,000,001~18,333,333	38
18,333,334~	35	18,333,334~	35	18,333,334~	35

자료: OECD, IBFD(www.ibfd.org)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

1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 - 중산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안

[조세동향 13-08호]

가. 개요

- 2013년 7월 30일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세제개편 및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중산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안(Factsheet: A Better Bargain for the Middle Class; Jobs)’을 발표함
 - 본 발표사항은 공화당의 법인세율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제안한 것으로, 추후 공화당과 협의해 나갈 예정임
-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대타협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소득에 대한 최소 수준의 세금부과 등 기업세제에 관한 개편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2월에 제안했던 ‘기업세제개혁의 설계(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를 근간으로 한 것임
 - 기업세제개혁의 설계에는 i) 세무상 허점(loophole) 제거와 세율 확대, ii) 국내 제조업 강화, iii)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iv)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조세시스템 정비, v) 재정건전성 회복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이번 오바마 대통령 제안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 투자계획도 포함되어 있음
 - 국내 공공기반시설의 재건, 10년 내에 45개의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기관(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s)의 건립, 미래 근로자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투자 등이 있음

- 또한 국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활동계획을 밝히고, 장기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민·관 공동노력을 요청함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종료된 재정지출 자동감축(sequester)을 대신하여, 향후 개인소득세제 개편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정책’ 시행을 약속함

나. 기업세제에 관한 제안 내용

- 이번 발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세금부과 및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한 성장지향의 4가지 기업세제 개편방향을 제시함
- 첫째, 모든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세무상 허점(loophole)’을 제거하는 한편,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를 제안함
 - 기존 세무상 허점으로는 재고자산에 대한 후입선출법 적용, 석유 및 가스류(oil and gas)에 대한 세제 특혜, 과도한 투자이익분배금(carried interest¹³⁾)의 자본이익 분류, 법인 전용기(corporate jets)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등이 있음
- 둘째, 제조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및 클린에너지 생산활동 지원 등의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재정비하여, 제조업체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을 25% 이하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 양질의 일자리는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 셋째, 소규모 사업자에게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공장 건립이나 장비 취득에 대해 100만달러까지 즉시 비용 처리를 허용함
 - 세무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함

13) ‘Carried interest’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과 같은 변형적인 투자형태에 있어서, 해당 매니저가 파트너십에 기여한 부분보다 초과하여 지급받게 되는 투자펀드의 이익분배금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함

- 넷째,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미국법인들의 해외소득(foreign earnings)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되 최소 수준의 세금(minimum tax)을 부과하고자 제안함
- 이를 통해 제조·생산기지뿐만 아니라 과세소득도 해외로 이전시키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2 Levin의 조세회피방지법 발의

[조세동향 13-09호]

가. 개요

- 2013년 9월 19일, 민주당 상원의원인 Carl Levin¹⁴⁾은 조세상 허점(tax loophole)을 이용한 법인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막고자 「조세회피방지법(Stop Tax Haven Act)」을 발의함
- 본 법은 그가 2013년 2월에 미국 다국적기업의 국외소득을 주제로 제안했던 「불공정한 세무허점 차단법(Cut Unjustified Tax Loopholes Act)」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것임
- 이번 「조세회피방지법(Stop Tax Haven Act)」은 미국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출 감축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조세 남용행위의 근절’을 내세우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음
- 본 법안은 향후 상원 및 하원의 논의를 거쳐 그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임

14) 상원의 투자 상설 부위원회(the Senate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의 의장임

나. 주요 법안 내용

1) 재무성(Treasury)의 권한 부여 강화

- 해외 정부나 해외 금융기관이 조세회피를 도와주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무성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현재는 재무성의 규제 권한 중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회피에 대한 경우를 추가함
- 즉, 미국 금융기관에 미국의 법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금융기관과의 사업거래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등 재무성의 규제 권한을 강화함
 - 미국의 법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지 여부는 「해외계좌 세무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체결 및 운영 현황 등을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사업거래를 중단하는 형태로서 미국 내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 지급도관계좌(payable-through account)의 개설 및 유지를 금하게 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지점에 의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미국 내 발급 및 사용을 금하게 할 수 있음
- 재무성의 규제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상원 재무위원회 및 하원 W&M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국별(country by country) 공시시스템 도입

- 상장기업(SEC-registered)에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해당 국가별 상세 공시를 요구함
 - 해외 계열회사란 그 국가에서 설립·조직화되고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지분이 있는 자회사뿐만 아니라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통제권이 있는 회사도 포함함

- 매 연도 사업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국별 기준 공시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온라인에서 당해 정보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여야 함
 - 공시 대상 회사가 영업하는 해외 국가 목록 및 각 국가별 해외 계열회사 이름
 - 각 국가별 실제 일하는 종업원 수
 - 각 국가별 해외 계열회사의 세전 총이익(pre-tax gross revenues) 합계
 - 각 국가별 해외 계열회사가 세액공제·감면 후에 해당 정부에 납부한 국세·지방세 등의 합계
 - 공익이나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타 재무적 정보

3) 과세이연되는 국외소득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인식 제한 등

- 해외 계열회사의 과세이연된 국외소득(tax-deferred foreign income)에 상당하는 ‘해외 관련 공제대상 비용(foreign-related deductions)’은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하지 않고 차기 이후로 이연함
 - 즉, 배당 수령분, ‘subpart F 소득’¹⁵⁾ 등 당기에 과세되는 해외 계열회사의 국외소득 해당분에 상당하는 부분만 공제 가능함
 - 해외 관련 공제대상 비용이란 당해 과세연도에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 없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고 할당된 비용을 말함
- 당기 및 차기에 인식되는 ‘해외 관련 공제대상 비용’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결정됨
 - 당기 공제액은 ‘당기 발생 해외 관련 공제대상 비용 × 당기 과세되는 국외소득 / (당기 과세되는 국외소득 + 과세이연되는 국외소득)’으로 결정됨
 - 이연된 공제액의 차기 공제액은 ‘이연된 해외 관련 공제대상 비용 × 당기에

15) 미국의 CFC 세제는 외국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해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국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따라 미국 주주의 과세소득으로 합산되는 유보소득을 일반적으로 ‘Subpart F 소득’이라 말하며, 그 범위는 거래적 접근방식(Transactional Approach)에 의해 결정됨

과세되는 국외소득 / (당기 과세되는 국외소득 + 과세이연되는 잔여 국외소득)'으로 결정됨

-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한 공제액도 과세되는 국외소득 비율 상당 부분만을 인정하도록 함
 - 즉, '전 세계 외국납부세액 × 당기 과세되는 국외소득 / (당기 과세되는 국외소득 + 과세이연되는 국외소득)'만큼 세액공제되며, 잔여 부분은 차기로 이연됨

4) 무형자산 이전에 대한 규제

- 조세회피 수단으로서의 무형자산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회사 초과 무형소득(foreign base company excess intangible income)을 subpart F 소득으로 과세함
 - CFC 세제가 적용되는 해외 관계회사 간의 무형자산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저세율 국가에 과도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함임
- 외국회사 초과 무형소득은 다음과 같이 A에서 B를 차감하여 산정됨
 - A: 무형자산의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의 판매, 리스, 라이선싱, 기타 처분 등에서 발생한 총수입 및 무형자산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에서 발생한 총수입의 합계
 - 다만, 동일 국가 내의 거래에서 발생한 총수입은 제외함
 - B: A와 관련된 비용 중 이자비용 및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150%
-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외국회사 초과 무형소득은 실효 외국법인세율(effective foreign income tax rate)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비례적으로 감면되며, 10%를 초과하는 경우 100% 면제됨

5) 'Check-the-box' 규정과 'CFC look-through' 규정의 악용 방지

- 세무 목적만을 위한 외국 회사의 설립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정 외국실체(foreign

business entity)에는 ‘check-the-box’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 CFC 세제는 외국법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외에 외국 법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실체를 세워 해당 실체에 계열사의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로 조세회피를 할 수 있으므로 check-the-box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
 - check-the-box란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실체가 내국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법인으로 보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파트너십 또는 법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말함
- 다음과 같은 특정 외국실체는 CFC 세제 적용대상 외국법인으로 간주함
 - 유한책임을 지지 않는 단독 소유주(single owner)가 있는 외국실체
 - 1인 이상의 사원(member)이 모두 유한책임을 지는 외국실체
- 과세 가능한 수동소득(passive income)¹⁶⁾을 과세이연되는 능동소득(tax-deferred active income)으로 분류될 수 있는 CFC 도관 규정(CFC look-through rule)을 폐지함
- CFC 도관 규정은 PFIC¹⁷⁾ 적용에 있어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로서 외국자 회사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를 도관으로 보고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계산하므로 미국 주주의 과세소득이 감소할 여지가 있음
 - 소득요건을 계산할 때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고려하지 않고 해당 자회사의 소득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소득을 추가하며, 자산요건을 계산할 때도 보유하는 자회사의 자산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자산을 추가함

16) 주로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연금소득, 사용료소득 등을 말함

17)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규정은 지배 여부에 상관 없이 PFIC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모든 내국인(U.S. Person)에 적용됨. 즉, 외국회사가 소득요건과 자산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PFIC가 적용되는데, 소득요건이란 해당회사의 총소득의 75% 이상이 수동소득인 경우, 자산요건이란 해당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수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를 말함. PFIC 규정에서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유형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PFIC가 얻은 모든 유형의 소득이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6) CFC로부터의 자금차입 남용 방지

- 미국 법인의 해외 CFC로부터의 부적격 차입금(disqualified CFC loan)을 subpart F 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해외 계열사 간 자금차입 남용을 방지함
 - 부적격 차입금이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상정해 보았을 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한 금액을 의미함
- 당해 과세연도에 과세되는 금액은 CFC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부적격 차입금 총액으로 하되, ‘국외 그룹소득(foreign group earnings)’을 한도로 함
 - 국외그룹소득이란 해당 미국 주주의 전 세계 CFC의 총소득(분배 여부와는 관계 없음)을 말함
 - 만일 부적격 차입금이 국외그룹소득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차기 이후로 과세이연됨
- 또한 미국 법인의 부적격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급한 이자비용도 손금 부인함

3 국세청의 조기합의 프로그램 도입 및 선택적 복지플랜 적용규칙 변경

[조세동향 13-11호]

가. 조기합의(FTS) 프로그램 도입

- 2013년 11월 6일, 미국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적용될 조기합의(Fast Track Settlement; FTS) 프로그램의 공식적 도입을 고시(IR-2013-88)함
 - 이 프로그램은 2006년 9월에 최초로 도입되어 시험적으로만 운영해 왔음
- FTS 프로그램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 및 자영업자로 하여금 국세청과의 세무 분쟁에 있어서 상호간 빠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함

- FTS 프로그램 적용 신청에 대한 국세청의 승인 후, 세무 이슈를 60일 내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궁극적으로 시간 절약과 공식 행정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것임
- 이번 소규모 사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FTS 프로그램은 자산규모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중·대규모 사업자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고안한 것임
- 중·대규모 사업자에게는 Large Business & International Fast Track Settlement(LB&I FTS)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 FTS 프로그램은 국세청 내의 소규모 사업자 및 자영업자 담당부서(SB/SE division)와 국세청 소송 본부(IRS Appeals Office)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관리됨
- FTS 프로그램에 의하면, 해당 납세자는 세무 분쟁 해결을 위해 국세청 SB/SE 세무조사 부서의 대표자 및 국세청 소송 본부의 대표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협의해 나갈 수 있음
- 여기서 국세청 소송 본부의 대표자는 주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함
- FTS 프로그램 적용을 선택한 납세자는 이 프로그램에 의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의 소송 제기권 등 납세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받지 않음

나. 의료비 지원 관련 선택적 복지플랜 적용규칙 변경

- 2013년 11월 1일, 미국 국세청은 「내국세법」 제125조(IRC Sec.125)의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선택적 복지플랜(cafeteria plans) 적용규칙 변경을 고시(Notice 2013-71)함
- 선택적 복지플랜이란 근로자가 현금을 포함하여 단체의료보험, 의료비 보조, 부양지원, 입양 등 법적 비과세 복리후생 항목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 근로자가 현금을 선택하면 과세되나, 이외 복리후생을 선택하면 과세되지 않음
- 이번 고시는 선택적 복지플랜 항목 중 의료비 지원 관련 계정(health flexible spending accounts; Health FSAs)에 대한 것임
- 동 계정은 일반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치과비용 포함) 등의 명목으로 사용됨
- 즉 이번 고시로 현행의 미사용 시 소멸(use or lose)이라는 규칙을 폐지하고, 미사용액 중 500달러 한도 내의 금액은 차년도까지 적격 의료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비과세 복리후생 규모를 확대함
- 현행 계정의 유효기간은 1년(plan year)으로, 미사용 잔액은 돌려받거나 이월되지 않음

4 상원 재무위원회의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개편 논의

[조세동향 13-12호]

가. 개요

- 2013년 12월 18일 상원 재무위원회(The Senate Finance Committee)에서는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staff discussion draft)을 발표함
- 재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의 공동 발의임
- 현행 42개의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제도는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재정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현재 10여 개의 화석연료(fossil fuels) 관련 세제지원, 10개의 재생연료(renewable fuels) 관련 세제지원, 6개의 클린전기(clean electricity) 관련 세제지원 등이 있음
- 42개 제도 중 25개는 한시적 규정으로서 매년 또는 매 2년마다 폐지와 연장이

-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클린전기에 대한 규정은 1978년 이후 14차례 개정됨
- 현행 세제지원이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의 조세지출이 예상됨
 - 이번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개편안에서는 지원 대상 항목을 간소화하고 클린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생산 촉진 및 환경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세제지원 대상 항목을 크게 클린전기(clean electricity) 부문과 클린운송연료(clean transportation fuel) 부문으로 나누어 기술-중립적(technology-neutral)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기술-중립적 세제지원이라 함은, 클린에너지의 원천(화석연료 또는 재생연료)이나 생성 방법 등에 관계 없이 청결도(cleanliness)의 크기, 즉 성과 기준(performance-based)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임
 - 청결도(cleanliness)는 환경보호협회(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에서 정한 일상 배출 기준(lifecycle emissions basis)에 근거하여 측정됨
 - 현행 규정하에서는, 동일한 클린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 없이 기술적 차이에 의해 세제 혜택의 차등이 나타나기도 함
 - 이러한 새로운 세제지원제도를 일정목표 달성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보다 큰 확실성을 부여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제도 중 국내의 전기나 운송연료 생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음과 같은 항목은 폐지하고자 함
 - 거주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세액공제(Section 25C credit for residential energy efficiency), 차량연료 전지에 대한 세액공제(Section 30B credits for fuel cell motor vehicles), 전기 충전식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Section 30D credits for electric plug-in vehicles), 에너지 효율적 신 주택 건축에 대한 세액공제(Section 45L credit for construction of energy-efficient new homes) 등
 -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31일까지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음

나. 세부 개편내용

- 기본적으로 클린전기 부문과 클린운송연료 부문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세제 지원을 할 것이며, 생성된 클린에너지의 청결도(cleanliness)에 따라 세제 혜택의 정도를 결정함
 -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클린전기란, 모든 종류의 전기 생산 시의 평균적인 오염수준치와 비교하여 그 수준을 25% 이상 개선시키는 전기를 말함
 -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클린운송연료란, 전형적 형태의 휘발유(conventional gasoline) 오염수준치와 비교하여 그 수준을 25% 이상 개선시키는 운송연료를 말함
- 사업자는 클린에너지에 대해 제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와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제조세액공제는 해당 클린에너지가 제조되는 매해마다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세액공제는 제조기기(facility)가 설치되어 가동되는 시점에 적용받을 수 있음
-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클린전기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전제로 하며, 클린운송연료는 미국 내 생산 및 판매가 전제되어야 함
- 미국의 대기 환경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세제지원을 중단할 예정임
 - 클린전기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국 내 전기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농도가 2013년 기준치보다 25% 이상 낮아지는 시점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 클린운송연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국 내 모든 운송연료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농도가 전형적 형태의 휘발유 기준치보다 25% 이상 낮아지는 시점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 개편안의 초안에서는 현행 규정 중 일부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함

- 클린전기 부문: 재생전기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Section 45 credit for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전기 관련 투자세액공제(Section 48 investment tax credit for electricity), 거주지 재생전기 투자세액공제(Section 25D credit for residential renewable electricity investments)
- 클린운송연료 부문: 운송등급, 재생 및 대체연료에 대한 세액공제(Section 40, 40A, and 6426 credits for transportation-grade, renewable, and alternative fuel)
-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적용의 폐지를 제안함
 -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기기
 - 셀룰로오스연료 정제공장(cellulosic biofuel refineries) 및 특정 적격연료 정제에 필요한 시설

II. 유럽

1 네덜란드

가.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도입

[조세동향 13-07호]

- 네덜란드 재무부장은 6월 28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로 투자된 설비 (facility)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속상각을 세무상 허용하기로 결정함
- 2013년까지 신규로 투자한 설비의 경우 50%까지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설정할 수 있음
 - 투자금액은 2013년까지 집행되어야 하고 투자된 설비는 2016년 1월 1일 이전 까지 운용되어야 함

나. 네덜란드 2014년 개정세법 공포

[조세동향 13-12호]

- 네덜란드 정부는 2013년 12월 23일, 2014년 개정세법을 공포함. 다음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소개함
 - 세법 개정안은 9월 17일 의회에 제출된 후 세 차례의 수정을 거쳐 2013년 12월 17일 국회를 통과함
 - 개정세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

1) 법인세

-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청년(young employees)을 신규 채용한

-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3,500유로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 여기서 청년은 계약체결 시점에 18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로 신규고용 전 실업급여를 받은 자임
 - 고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일주일에 적어도 32시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한해 공제를 적용함
 - 공제는 2년 동안 적용되며, 채용시점에 나이가 27세 이하였으나 공제를 적용받는 2년 중에 26세를 초과하더라도 공제 가능함
- 에너지 투자공제(Energy Investment Allowance; EIA)가 적용되는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연간 2,300유로에서 2,500유로로 200유로 인상하여 공제 대상을 축소함
- 에너지 투자공제는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투자하고 투자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관련 투자액의 41.5%를 공제해주는 제도임
 - 공제 대상의 영역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매년 에너지리스트(the energy list)를 통해 공제 가능한 투자사례를 공시함¹⁸⁾
 - 다섯 가지 영역은 기업의 빌딩, 공정(process), 운송수단(transport resources), 지속가능 에너지(sustainable energy), 에너지 관련 자문비용(energy advice)임
 - 현행 세법상 자산의 투자액이 건별로 450유로 이상, 연간 2,300유로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공제(research and development deduction)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현행 54%에서 60%로 인상함
- 공제 대상 비용은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지출로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특별부서(the Agency NL)에서 인정한 R&D 비용을 대상으로 함
 - 다음의 다섯 가지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18) NL Agency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http://english.agentschapnl.nl>

- 위탁 연구비
- 임금
- 금융비용(financing costs)
- 비유동자산(immovable property)의 매입비용
- 납세자의 사업용자산 처분과 관련된 비용

□ 직전연도 중 직원에게 15만유로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초과 지급액의 16%를 특별세로 부과하는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함

○ 2013년에 일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였으나 2014년까지 해당 규정을 연장한 것임

2) 소득세

□ 2014년에 한해 소득세 최저세율을 0.75%p 인하함

○ 현행 최저세율¹⁹⁾은 37%(사회보장세를 포함한 세율임)이며 2014년 적용될 최저세율은 36.25%임

□ 대주주(substantial shareholding)가 보유주식을 통해 얻은 소득 중 25만유로 이하인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함

○ 대주주란 직·간접적으로 기업 출자금이나 특정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임

○ 현행 세법상 대주주의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은 누진세율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함

19) 네덜란드의 현행 65세 미만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과세구간(유로)	소득세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19,645 이하	5.85	37
19,646 ~ 33,363	10.85	42
33,364 ~ 55,991	38	42
55,992 이상	41	52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세액공제(working bonus credit)를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함
 - 근로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63세 이하인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 1,100유로까지의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단, 납세자의 소득이 최저임금(1,469.4유로)의 175% 이상이면 근로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3) 부가가치세 등

- 주거용 건물의 수리나 재건축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율(6%) 적용기한을 당초 2014년 3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 연장함
- 기업에 부과되는 수도세를 세제곱미터당 0.165유로에서 0.33유로로 인상함

2 러시아의 ITA 가입

[조세동향 13-10호]

- 러시아는 2013년 9월 WTO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가입함
 - ITA는 WTO협정의 일부로서 1997년 1월에 발표된 203개 IT제품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한 협정임
 - WTO 회원국 중 IT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국가에만 적용됨
 - 2013년 9월까지 78개국(러시아 포함)이 ITA에 가입하였으며, 전 세계 IT교역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97%임
- 2012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IT 제품에 대한 관세는 5.4%였으며 3년 내로 무관세화될 예정임
 - 2012년 8월 러시아의 WTO 가입 조건 중 하나는 ITA 적용을 받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었음

- 러시아 정부는 IT, 의료, 핵, 우주항공, 에너지 등 산업분야를 5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세 철폐와 정부 주도의 투자로 IT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음²⁰⁾
 - 2012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IT제품 수출은 9.9억달러, 수입은 202억달러임
 - 러시아 IT시장은 전년 대비 4.4% 성장한 220억달러 규모로 추정됨
 - 러시아 정부의 IT 부문 투자는 전체 투자의 약 30%를 차지함
 - 특히 교육, 의료, 국방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IT기술에 대해 3,500억달러 상당의 정부 차원 투자가 예정되어 있음²¹⁾

3 룩셈부르크의 세제개편안

[조세동향 13-12호]

- 룩셈부르크의 신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12월 2일에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은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과 룩셈부르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조세수입 증대 방안 중 부가가치세 인상은 EU의 최저 세율을 유지하는 수준까지만 인상하고 다른 세금은 인상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함
 -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국제적으로 경제적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
 -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위한 방안
 - 펀드 허브국가로서 위상 강화 방안

20) Global window(<http://www.globalwindow.org>) 해외시장정보→러시아/CIS→러시아

21) Global window(<http://www.globalwindow.org>) 해외시장정보→러시아/CIS→러시아

- 또한 이전가격거래 규정 및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국제기준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됨

가.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는 세율 인상을 최소화하고, 기존 세법 운영을 강화하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안함
 - 경제성장에 의한 조세수입 증대, 조세징수 과정의 강화를 통한 조세수입 증대, 세법 현대화를 통한 세입 증대, 조세법에 관련된 법률 정비를 통한 세입 증대 등이 그 방안임
 - 직접 또는 간접 자진납세시스템을 개인과 법인에게 강화하여 적용할 것임
 - 지연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진일보된 체계적 벌칙을 적용할 것임
 - 조세포탈에 대하여 정부가 단속을 강화할 것임
- 신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세입 증대도 고려하고 있으며 인상 수준은 EU회원국 중 최저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임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한 예상되는 세원의 감소를 보전하는 수준까지 인상될 것임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현행 15%이며 17% 정도로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음

나. 국제적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

- 신정부는 국제적인 역할 증대를 위하여 외국인재 유치와 이전가격의 국제기준 준수에 관한 방안을 제시함
 -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재들이 룩셈부르크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것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및 정부 서비스의 제공 확대를 제안(체류기간의 유연화 등)함
 - 투자에 대한 투명성, 일관성,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기준에 따르는 이전 가격 정책을 준수하여 나갈 것임

-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룩셈부르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임
- 또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및 조세정보교환 같은 국제적인 조세규정 준수에 관한 방향을 발표함
 - 개편안은 금융거래세(FTT)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
 - 단, 개편안은 금융거래세가 유럽에서만 시행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음
 - 신정부도 EU와 OECD에서 구성하고 있는 국제적 조세정보교환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며 자동정보교환을 차후 확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개정안

- 다국적 기업의 본사 유치를 위하여 참여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regime)의 현대화, 지적재산권의 수입에 대한 과세체계 수정,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ies) 사용에 대한 규정의 정형화를 제안함
 - 참여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regime)는 해당 보유지분을 통해 얻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임²²⁾
 - 기능통화 사용에 대한 규정의 정형화는 세무 신고 시 외국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유로화로 변환해서 제출하여 그대로 신고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임²³⁾
- 또한 기업들의 룩셈부르크로의 자본도입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상이자율제도(notional interest deduction)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가상이자율제도는 투자유치를 위한 대표적인 인센티브 제도로서, 다국적 기업이 자기자본금으로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가상이자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는 제도임

2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

23) www.pwc.lu/tax

- 중소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서 특별적립을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이연(deferred profits taxation)을 허용하도록 제안함

라. 펀드에 대한 기존 규정 유지

- 정부는 룩셈부르크를 대체투자펀드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펀드에 부과하는 세금은 인상하지 않고 펀드 관련 규정도 크게 개편하지 않는다는 방침임
 - 사모펀드, 부동산펀드, 헤지펀드를 포함하는 특수투자펀드(Specialized Investment Funds; SIFs)의 펀드공모세(subscription taxes)를 인상하지 않기로 함
 - SiCARs펀드(sociétés d'investissement en capitalà risque; SiCARs)에 대한 제도 및 세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4 벨기에

가. 공평세(Fairness Tax) 신설

[조세동향 13-07호]

- 벨기에 정부는 법인세 납부가 없는 상황에서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에게 ‘공평세(Fairness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2013-2014년의 예산안에 포함시킴²⁴⁾
- 벨기에 정부는 EU에서 요구한 재정부족 해소 및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정부가 7월 1일에 발표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서 법인세는 내지 않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에게 공평세(Fairness Tax)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벨기에는 2012년에 GDP 대비 세수부족률이 3.9%에 이르렀으며 EU는 벨기에 정부에 세수부족률을 3%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음
 - EU의 권고에 따라 벨기에는 세수부족률을 GDP 대비 2.7%로 낮추기 위하여

24)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TI710708.pdf/\\$file/TI710708.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TI710708.pdf/$file/TI710708.pdf)

세금 신설 및 기존 세금의 세율 인상 및 각종 감면 및 공제를 축소하려고 준비중임

- 공평세(Fairness Tax)는 이월 결손금공제 또는 각종 세금혜택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았지만 같은 연도에 주주들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이 대상이며 지급된 배당 총액 대비 5%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 대기업들이 공평세 대상의 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업의 R&D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자에 대한 감면 또는 특허 관련 감면으로 생긴 세금공제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
- 벨기에 정부는 공평세의 신설로 2013년에 1억 4천만유로, 2014년에 1.65억유로의 세입을 증가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외에 외교관들에게 적용했던 소비세 면제의 일부 폐지, 법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상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신설, 은행에 대한 Subscription Tax²⁵⁾ 인상 등도 계획하고 있음
 - 외교관에 대한 담배, 연료, 알코올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폐지할 것이며 이 결과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020만유로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음
 - 법률서비스에 대한 VAT 적용이 2014년에 시작될 것이며 이 결과로 2014년에 8,900만유로의 세입증가가 예상됨
 -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업들은 2014년에 법인세를 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3,000만유로의 세수가 창출될 것임
 - 은행에 대한 Subscription tax의 인상으로 2013년에 4,000만유로 2014년에 1억 7,100만유로의 세수 증가가 예상됨

25) 프랑스 원문으로 'Taxe d'abonnement'이며 벨기에에서는 은행의 예금 계좌의 잔고에 대하여 연간으로 부과하는 세금임

나. 벨기에 개정세법²⁶⁾

[조세동향 13-08호]

- 벨기에 정부는 2013년 7월 17일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록세, 소비세 등을 개정한 세법을 발표함
- 법인세법 개정은 벨기에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가상이자율 제도(Notional interest deduction)에 대한 것으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함
 - 가상이자율제도는 벨기에 정부의 투자 유치를 위한 대표적인 인센티브 제도로서 다국적 기업이 자기 자본금으로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는 제도임²⁷⁾
 - 이 제도를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고 투자수익률 증가로 자본 투자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현재 벨기에에서 동 제도가 남용되어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가상이자율제도 시행 후, 벨기에 정부는 2008년과 2010년 2차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기업들이 자기자본 액수를 부풀려서 신고하는 등 제도의 남용 사례들이 있었으며 그 건수가 2008년 3천여 건, 2010년엔 5천여 건에 달함
- 금번 법인세 개정으로 인한 가상이자율 결정 방법은 벨기에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채이자율과 연동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2014년부터는 해당 이자율은 과세연도의 두 해 전 7, 8, 9월의 평균 이자율로 정함
 - 이에 따라 2014년에는 가상이자율이 2.742%이며(중소기업은 3.2425%) 최대 가상이자율은 3%(중소기업은 3.5%)로 될 것임
 - 현재는 전년도 전체의 평균 이자율로 하고 있음

26)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TI700729.pdf/\\$file/TI700729.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TI700729.pdf/$file/TI700729.pdf)

27)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534&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oid=1130620093729405431

- 개정된 이자율 산정법은 가상이자율이 이전의 방법보다 벨기에의 10년 만기 국채이자율과 비슷해지게 하면서 가상이자율을 낮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²⁸⁾

<표 11-1> 벨기에의 최근 가상이자율 일람표

(단위: %)

가상이자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3.442	3.781	4.307	4.473	3.8	3.425	3	2.742
중소기업	3.942	4.281	4.807	4.973	4.3	3.925	3.5	3.242

자료: OECD, *Taxation of corporate and capital income*, 2013.

- 손금산입의 계산 기초사항도 변경되어 간접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들은 가상이자율 적용대상 자본에서 제외되며 배당소득 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식들도 가상이자율 적용대상 자본에서 제외됨
 - 현재는 최초 투자금 250만유로 이상을 포함한 간접투자주식의 투자 유지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가상이자 손금산입제도의 대상이 되며, 해당 주식들은 배당소득 공제의 혜택도 동시에 누리고 있음
 - 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벨기에 내의 주식들은 배당소득 공제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배당소득 공제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주식들만 가상이자 손금산입제도의 계산 기초로 산입됨
- 소득세법 개정은 저소득자에 대한 ‘고용보너스(work bonus)’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종전의 고용보너스는 월 소득의 5.7%를 85유로 한도로 사회보장부담금에서 공제해 주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월 소득의 8.95%를 최대 130유로까지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인상됨²⁹⁾

28) <http://www.loyensloeffnews.be/en/publications/newsflashes/tax-newsflashes/tax-newsletter-june-2013.html>

29) <http://www.bdo.be/en/tax-and-legal-services/tax/personenbelasting-2013/>

- 벨기에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거나 수입의 75% 이상이 벨기에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들도 이번 공제 인상의 수혜자 대상임
- 벨기에 연방정부는 근로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2000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대폭 감면하였으며 이후 고용보너스로 불리게 되었음³⁰⁾
- 원천징수세 개정에서는 청산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 10%에서 25%로 인상하여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5%의 세율은 일반적인 배당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세율임³¹⁾
 - 청산잉여는 회사 청산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액을 초과하여 주주에게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을 의미함
 - 즉, 청산잉여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조치는 개인 소유의 회사에 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인 소유의 회사 청산 시 소유자가 받게 되는 지분율을 초과하는 지급에 대해 배당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을 가진 지급에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함
 - 다국적 기업은 EU의 청산소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련 지침’과 그 지침을 준수하는 벨기에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청산잉여가 발생하더라도 금번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음
- 벨기에에는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5년부터 법인과 기타 법적인 실체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신고를 하게 됨
 - 이번 개정은 세무당국이 납세자들의 세무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세금 산출사항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에 대한 여러가지 민원청구를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조정하는 근거가 됨

30) 한국노동연구원, 『벨기에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고용보너스)』, 2011.11.

31) <http://www.clearstream.com/ci/dispatch/en/cic/CIC/Announcements/LuxCSD/Tax/2013/L13106.htm>

-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교육서비스 중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을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만 면세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함
- 등록세 중 고정요율로 부과되는 등록세는 현행 25유로에서 50유로로 2배 인상되었고 건물 또는 장기 리스의 이전 또는 토지 임차권에 대한 등록세는 현행 0.2%에서 2%로 인상함(유언장 등록이나 혼인신고가 그 예임)
 - 고정된 요율로 부과되는 등록세는 유언장 등록이나 혼인신고 등의 경우에 적용함
 - 건물 또는 장기 리스의 이전 또는 토지 임차권에 대한 등록세는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0.5%를 적용함
 - 인상된 등록세는 7월 1일부터 적용함
 - 등록세 인상으로 발생할 추가 세입은 2013년 48.5백만유로, 2014년에는 109.9백만유로, 2015년에서 112.9백만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으며 2013년에는 5천만유로, 2014년에는 1억유로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³²⁾
 -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종가세³³⁾를 0.1% 인상하였고 특별소비세는 1,000개비당 0.1유로 인상함
 - 켈런(잎담배)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1kg당 0.5유로 인상함

32) http://www.deloitte.com/view/en_BE/be/services/tax/tax-news-and-publications/tax-reforms-hub/belgium-budget-2013/6940e95dc790b310VgnVCM3000003456f70aRCRD.htm
#Other individual tax measures

33) 과세물건의 가격에 부과하는 조세임.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의 분류는 과세물건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와 과세물건의 수량·길이·면적·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음

5 스페인

가.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 공포³⁴⁾

[조세동향 13-07호]

- 스페인 정부는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 시행령을 6월 29일에 공포하였으며 당해 시행령은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
 - 알코올과 알코올음료에 대한 소비세(일괄적인 세율로 부과됨)는 10% 인상할 것 이나 와인과 맥주는 해당 인상 대상 품목에서는 제외하였음
 - 순수알코올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행 1리터당 8.3유로이며 개정으로 인하여 1 리터당 9.13유로로 인상되며(10%인 0.83유로 인상), 이러한 인상에 따라 알코올 함량 비율에 따라 알코올음료에 부과되는 세금도 인상됨³⁵⁾
 - 담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1,000개비당 19.10유로에서 24.10 유로로 인상되었으나 증가세율(담배의 가격에 따라서 매겨지는 세금)은 종전 53.1%에서 51%로 낮아짐
 - 이와 같은 인상에 따라서 1,000개비당 부과되는 최소한의 세금은 종전 123.97 유로에서 128.65유로로 상승하게 됨

나. 스페인 정부, 룩셈부르크의 특수목적펀드(SIF)에 CFC규정 배제를 명시

[조세동향 13-12호]

- 스페인 세무당국은 12월 3일에 발표한 규정집(binding ruling)에서 룩셈부르크의 펀드 형태 중 하나인 특수목적펀드(Luxembourg Specialized Investment Fund; SIF)는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함

34)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3-07-02_es_2.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35) <http://www.benidormallyearround.com/2013/06/spanish-government-raises-tax-on.html>

- 스페인에서는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룩셈부르크의 SIF를 이용할 경우 당해 SIF에 대한 CFC규정 적용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음³⁶⁾
- 스페인의 CFC규정은 인위적인 회사를 이용한 조세남용에 대해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적용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스페인의 CFC규정은 거래관계에 인위적으로 존재하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저세율 또는 비과세 관할에서 생기는 수동적 투자에서의 수입에 대하여, 스페인에 거주하는 최종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수입을 직접 획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임³⁷⁾
 - CFC규정을 적용하여 스페인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한 세금은 스페인 「법인세법」 제107조에 해당하는 법인세에 한함
 - 스페인 「법인세법」 제107조는 비거주자에 의해 얻어진 소득 중 과세가 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세에 관한 조항임³⁸⁾
- 금번 스페인 정부가 명시한 SIF에 대해 CFC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은 룩셈부르크의 SIF가 스페인에 위치한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취득한 펀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함
 - 스페인에 위치한 기업은 자금을 룩셈부르크의 SIF를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야 함
 - 스페인 기업에 자금을 모집하여 송금한 SIF는 룩셈부르크 내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이사회도 개최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 그동안 룩셈부르크의 SIF에 부과되는 연간 0.01%의 순자산세가 스페인 「법인세법」 제107조에 의한 법인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SIF에 대한 CFC규정 적용의 관건이었음

36) Spanish Tax Alert, November 2013.

37) 수동적 투자의 수입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지 않는 수입을 의미하며 이자수입이 대표적인 수동적 투자 수입임

38) 스페인 「법인세법」 제107조

- 스페인 세무당국은 금번 발표를 통하여 SIF에 대해 룩셈부르크에서 부과되고 있는 연간 0.01%의 순자산세는 스페인의 법인세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며 재산세의 일종으로 규정함
 -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당해 SIF에 부과되었던 순자산세는 국외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법인세법」 제107조에 의한 법인세이어야 한다는 스페인의 CFC규정 적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
-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룩셈부르크의 SIF는 CFC규정 적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 즉 룩셈부르크의 SIF는 조세회피를 위한 실체가 아니라, 단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펀드로 여김을 확인한 것임

6 아이슬란드의 2014년 균형재정예산안³⁹⁾

[조세동향 13-10호]

- 아이슬란드 재무장관은 10월 2일 2014년 균형재정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산업에 대한 세제개편안이 포함되어 있음
 - 총세입은 48억 3,600만달리, 세출은 48억 3,200만달리로 예상되며 금번 예산안은 2007년 이래 적자재정 이후 최초로 책정된 균형예산임
- 예산안에 포함된 금융관련 세제개편안은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부과되었던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 FAT)’가 현행 6.75%에서 4.5%로 인하되는 것을 포함함
 - 금융활동세 4,192만달리 정도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아이슬란드의 금융활동세(FAT)⁴⁰⁾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총임금에 대하여 부

39)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TI701014.pdf/\\$file/TI701014.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TI701014.pdf/$file/TI701014.pdf)

40) Clemens Fuest, “Taxation of the Financial Sector,” *Brussels Tax Forum*, March 28-29, 2011, University of Oxford

과되는 세금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공적자금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위험이 큰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제약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임⁴¹⁾

□ 반면 은행세(tax on financial institutes)의 세율은 현행 0.041%에서 0.145%로 인상될 것이며 1억 1,620만달러의 세입 증가가 예상됨

- 은행세(tax on financial institutes)는 금융기관의 총부채(total debt)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임⁴²⁾

□ 비과세 이자소득의 상한은 현행 818달러에서 1,023달러로 상향될 것이며 대출서류에 부과되었던 인지세 1.5%는 폐지될 예정임

7 영국의 이전가격 규정을 이용한 조세회피전략 제한⁴³⁾

[조세동향 13-09호]

□ 영국 정부는 이전가격의 규정 중 하나인 ‘상계조정(Compensating Adjustment)’을 사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전략에 제한을 한다는 것을 발표함

- 당해 제한은 입법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음

□ 제한 대상 전략은 이전가격 규정을 이용하여 관계회사 간 또는 관계회사와 개인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개인이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인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조세 회피를 하는 전략임

41) http://www.bruegel.org/fileadmin/bruegel_files/Events/Event_materials/2012/120918_Bruegel-IMF_workshop/Presentations/Jonasdottir.pdf

42) KPMG, *Icelandic Tax Facts 2011*.

43) <http://www.taxanalysts.com/>, 『Compensating Adjustment Technical Note』, www.hmrc.gov.uk

- 개인이 관계회사에 차입금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고 이자율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하여 수취한 후 이전가격 규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전략과 파트너십이 관계회사의 용역 거래를 정상가격원칙을 벗어난 가격으로 이용한 후 상계조정을 적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전략이 제한 대상임
- 영국의 이전가격에 관한 법률은 거래상대방 한쪽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거래가격이 조정되면 다른 상대방에게도 같은 가격을 반영하도록 만들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이 ‘상계조정(Compensating Adjustment)’임
- 개인에 의한 회사의 과도한 차입과 개인에게 과도한 이자를 지급한 후 상계조정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은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terms)을 벗어난 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개인에게 차입을 하게 하며 이 결과로 회사는 부채비용이 과도하게 됨
 - 영국의 이전가격 관련 법률은 회사들이 대역자와 차입자 사이의 관계로 인해 과도하게 차입이 일어나고 이자율이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난 거래에 대하여 상계조정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계조정은 정상가격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부채로부터 생성된 이자비용 처리를 제한하여 실제 발생한 이자 거래는 무시하고, 그 차입이 정상가격원칙에 입각하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세무상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함
 - 이때 대역자는 상계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는 대역자들이 수취하여 과세소득에 포함되었던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난 이자총액을 제거시킴
 - 상계조정의 결과 대역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회사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이익 배분을 통하지 않고도 대역금을 수취하는 효과도 가지게 됨
 - 당해 제한 규정은 사적으로 자본을 모집(private equity financing)하여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에는 규제를 가하는 것이지만 사모펀드산업(private equity industry)에 규제를 가하는 목적은 없음

- 영국 세무당국은 개인에 의한 회사의 과도한 차입과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이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한 명의 개인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100만파운드의 자본을 보유하며 최대 부채비율을 1:1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함
 - 회사의 소유주는 100만파운드를 15% 이자율로 회사에 대여하며 이 경우 15만 파운드의 이자수익은 45%의 세율로 과세되며 6.75만파운드의 소득세가 발생함
 - 이런 거래가 일어날 경우 영국의 이전가격 규정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세무 목적상으로는 정상가격원칙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로 대체시켜서 과세소득을 산출하게 함
 - 해당 회사는 이전가격 규정의 효과로 15만파운드의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추가적인 3만파운드의 법인세가 발생하고(20%의 법인세율을 가정) 개인은 상계조정을 청구하여 15만파운드는 소득에서 제거되며 조정결과 총세금이 3.75만파운드만큼 절약되게 됨

- 파트너십이 관계회사의 용역 거래를 정상가격원칙을 벗어난 가격으로 이용한 후 상계조정을 적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짐
 - 대형 파트너십들은 그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으로는 분리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형태의 파트너십과 계열사의 관계는 조세회피전략과는 관계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라도 존재함
 - 파트너십은 이러한 관계를 조세회피전략에도 이용할 수 있음
 - 파트너십은 용역을 제공한 회사에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상계조정을 이용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할 수 있음
 -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용역회사가 존재하며 그 회사의 총급여가 100만파운드이고 적정 보상비율이 5%라고 하면 100만파운드에 대한 보상은 5만파운드임
 - 만약 파트너십이 용역회사의 임금인 100만파운드만 지급한다면 이전가격 규

정은 지급액을 용역 제공회사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105만파운드로 대체함

- 그러므로 용역 공급회사의 과세소득은 5만파운드만큼 증가하지만 이때 파트너십의 구성원들은 추가적인 현금지급이 필요 없으며 5만파운드는 파트너십 내에 남아 있게 됨
- 파트너들은 상계조정을 청구하여 100만파운드의 비용을 105만파운드의 비용으로 조정하여 파트너십의 과세소득을 5만파운드 감소시킴
- 그 결과 파트너들은 5만파운드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보장부담금(NIC)을 부담하는 것과 법인세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조세이익을 가지게 됨

8 이탈리아

가. 거액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협력프로그램 실시

[조세동향 13-07호]

- 이탈리아 국세청은 6월 25일 대기업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regime di adempimento collaborativo, RAP)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발표함
 - 시범실시 후 확대 실시의 필요가 있을 경우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
- RAP은 납세자가 과세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투명성에 기초한 조세협력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즉 납세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사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전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임
- 국세청은 납세자가 RAP 참여를 신청할 경우 대기업 납세자(large business taxpayers)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시범실시 대상자를 선정함
 - RAP 시범실시 참여자의 필수적 요건은 다음과 같음

- 2011년 기준으로 납세자의 총매출액이나 영업매출이 1억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⁴⁴⁾
- 조세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세통제제도(tax control framework)를 채택하여 운영 중인 납세자
- 국세청의 RAP 참여자 심사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이거나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탈리아나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납세자인지 여부
 - 외국에서 RAP와 유사한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채택하거나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의 행동규범(a code of conduct)을 채택하는 납세자인지 여부
 - 국제조세 규정(section 8 of decree-law no. 269 of 30 September 2003)과 같은 납세협력제도를 따르고 있는 납세자인지 여부
- RAP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수행한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는 납세협력상 이슈(issue)를 알려야 함
- 국세청은 납세협력상 이슈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해결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필요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납세협력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전예규와 같은 법적인 확실성을 확보하는 제도에 관한 혜택을 제공함

나. 금융거래세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⁴⁵⁾

[조세동향 13-10호]

- 이탈리아 정부는 9월 16일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규정은 10월 5일부터 적용됨

44) section 27, paragraph 10, of decree-law no. 185/2008, as converted by section 1 of law no. 2/2009

45) <http://www.taxanalysts.com> 및 EY, *Italian FTT - Amending Decree approved on 16 September 2013* 참조

- 이탈리아는 정부는 주식거래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각각 2013년 3월 1일과 2013년 9월 1일부터 금융거래세를 부과함
- 금융거래세 적용 대상 거래의 현행 세율과 향후 변동 세율은 다음과 같음
 - 상장주식거래: 현행 0.22%, 2014년 1월 1일부터 0.2%로 인하
 - 장외주식거래: 현행 0.12%, 2014년 1월 1일부터 0.1%로 인하
 -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es): 0.02%
 - 파생상품거래: 파생상품의 종류와 계약의 명목가치(notional value)에 따라 0.01875~200유로⁴⁶⁾까지 과세함. 단, 파생상품이 규제시장(regulated market)이나 다자간 거래시스템(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에서 거래되면 20%의 세금을 경감함
- 현행 규정상 금융거래세의 과세가 불분명한 파생상품 거래의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부 규정을 보완함
- 부채증서(debt instruments)는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부채증서는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
 - 만기의 원금비보장형 부채증서가 양도성증권(transferable securities)과 보장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도성증권과 동일하게 과세함
 - 옵션권리(option rights)는 증권으로 분류되어 금융거래세를 부과함

46) 이탈리아의 파생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금융거래세는 다음과 같음

(단위: 유로)

파생상품의 종류	계약의 명목가치 (1,000유로)							
	0~2.5	2.5~5	5~10	10~50	50~100	100~500	500~1,000	1,000 초과
선물(futures), 증권(certificates), 커버드워런트(covered warrants), 주식 관련 수익(yields)·변수(parameters)·지수(index)에 기초한 옵션	0.01875	0.0375	0.075	0.375	0.75	3.75	7.5	15
선물, 워런트, 증권, 커버드워런트, 주식옵션	0.125	0.25	0.5	2.5	5	25	50	100
주식 및 주식의 수익·변수·지수와 관련된 스왑.swap)계약이나 선도(forward)계약, 일정 요건을 만족한 기타 금융계약	0.25	0.5	1	5	10	50	100	200

- 파생상품의 명목가치(nominal value), 거래당사자, 만기, 기초자산이나 계약의 준거가치(reference value)의 변동에 따라 금융거래세 납부액이 변동함
 - 거래당사자: 거래참여자(stepping-in party)나 계속거래자뿐만 아니라 거래이탈자(stepping-out party)도 금융거래세 납부 대상에 포함됨
 - 기초자산 평가: 자산이나 준거가치 중 50% 이상 적격주식(qualifying equities)⁴⁷⁾인 주식파생상품과 양도성증권은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임
 - 기초자산이나 준거가치가 변동 가능한 경우 주식파생상품이나 양도성증권 거래에 대해 발행일과 이후 변동금액을 고려해서 기초자산을 평가함
 - 기초자산이나 준거가치의 변동 가능성이 없는 주식파생상품이나 양도성증권 거래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을 평가함
 - 기초자산이 이탈리아 주식이나 지수를 기반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거래장소와 거래당사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금융거래세를 부과함
 - 주식 배당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양도성증권과 주식파생상품을 금융거래세 대상에서 제외함
- 현행 규정상 금융거래세의 과세가 불분명한 주식거래의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부 규정을 보완함
- 재산에 대한 사용 권한이나 이익에 대한 권리 없이 소유권만 보유한 주주의 권한 없는 소유권(Bare Ownership)이 이전된 경우 금융거래세를 부과함
 - 장내주식거래와 이를 기초로 한 주식파생상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간소화함
 - 현행 규정은 이탈리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주식의 시장가격과 행사가격 중 큰 금액을 금융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함
 - 개정법은 장내 주식파생상품과 장내 양도성증권의 과세표준을 행사가격으로 규정함
 - 주식교환의 경우 거래당사자 모두 금융거래세를 부담함

47) 적격주식은 금융상품으로 거래되는 이탈리아 주식과 이탈리아 주식임을 명시한 증권을 의미함

다.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인상⁴⁸⁾

[조세동향 13-11호]

- 이탈리아는 2013년 10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1%에서 22%로 1%p 인상함
 - 2012년 8월 7일 이탈리아 정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3%, 경감세율을 12%로, 모두 2%p 인상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표준세율을 22%, 경감세율을 11%로 다시 1%p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경감세율은 10%를 유지하고 표준세율만 22%로 인상함
 - 개정 전·후의 부가가치세율은 다음 표와 같음

<표 II-2> 개정 전·후의 이탈리아 부가가치세율

(단위: %)

구분	부가가치세율	
	개정 전	개정 후
표준세율	21	22
경감세율	10	10
초경감세율	4	4

라. 이탈리아 2014년 예산안⁴⁹⁾

[조세동향 13-11호]

- 2013년 10월 22일 이탈리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 포함된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함

1) 법인세

- 2014년부터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도입함

48) <http://www.ibfd.org> 참조49) <http://www.ibfd.org> 및 <http://www.ey.com> 참조

- 신규채용한 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되며, 연간 1만 5,000유로를 한도로 적용됨
- 가상이자율 공제규정(notional interest deduction)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3%에서 2014년 4%, 2015년 4.5%, 2016년 4.75%로 점차 인상함
- 가상이자율 공제규정은 자본금 증가액에 가상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제도임
- 일시적으로 2012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에 포함된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부동산 회사가 보유한 비유동 자산 제외)의 재평가를 허용하고 재평가 금액에 대체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함
- 재평가를 선택한 기업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16%, 비상각자산에 대해 12%의 대체세(substitute tax)를 납부해야 함
 - 대체세를 납부한 기업은 31.4%의 상각률로 가속상각이 가능하며 처분 시 자본이득의 감소로 인한 조세 혜택을 얻음
- 또한, 재평가로 인해 증가한 이익잉여금은 10%의 대체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배당 가능함
-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되며, 재평가이익은 세무상 재평가 이후로 3년이 되는 2016년에 인식하고, 자본이득은 재평가일 이후로 4년이 되는 2017년부터 인식함
- 대체세는 3년간 분납 가능하며, 대체세의 납부기한은 법인세 납부기한과 동일함
- 2012년 이후 피지배회사의 주식취득 시점에 피지배회사의 무형자산을 재평가하고 가치상승분에 대해 16%의 대체세를 납부하는 규정을 도입함
- 기업의 선택에 의해 적용되며, 대체세를 납부한 기업은 최소 31.4%의 상각률로 무형자산을 가속상각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가속상각액은 대체세를 납부한 후 2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공제됨

- 대체세의 납부기한은 주식을 취득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납부기한과 동일함

2) 개인소득세

- 근로장려세액공제(the earned income credit)의 기초금액을 현행 1,338유로에서 1,520유로로 인상함
 - 또한,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이 8,000유로 ~ 1만 5,000유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계산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text{세액공제} = 1,520 + 320 \times \frac{(15,000 - \text{과세소득})}{7,000}$$

- 비유동자산(immovable property)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2014년 65%, 2015년 50%의 비율로 세액공제함
 - 2013년 6월 6일~2014년 12월 31일: 발생한 비용의 65%를 공제
 -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발생한 비용의 50%를 공제
- 비유동자산의 수리(refurbishment)비용에 대해 2014년 50%, 2015년 30%의 비율로 세액공제함
 - 2012년 6월 26일~2014년 12월 31일: 발생한 비용의 50%를 공제
 -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발생한 비용의 40%를 공제
-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개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3%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연장함
 - 현행 소득세⁵⁰⁾의 최고세율은 43%이므로 이 규정에 따르면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개인에게는 46%의 세율이 적용됨

50) 현행 소득세율 과세구간은 다음 표와 같음

- 이 규정은 2011년 도입된 이후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음
- 연금소득이 15만유로를 초과하는 개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현행 소득세율에 5~15%의 세율을 가중해서 과세함
-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추가세율과 과세구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될 것임

<표 II-3> 이탈리아의 연금소득 추가세율 과세구간

(단위: 유로, %)

과세구간	추가세율
150,001 ~ 200,000	5
200,001 ~ 250,000	10
250,000 초과	15

3) 부가가치세 등

- 사회적기업(social cooperative companies)이나 이들 기업의 조합을 통한 의료·사회사업·교육·요양·봉사활동(community service) 용역 등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4%로 인하함
- 농지 양수에 적용되는 등록세율(registration tax rate)을 현행 9%에서 12%로 인상함
 - 단, 농가기업(agricultural entrepreneurs)이 양수한 경우는 제외됨

(단위: 유로, %)

과세구간	세율
15,000 이하	23
15,001 ~ 28,000	27
28,001 ~ 55,000	38
55,001 ~ 75,000	41
75,000 초과	43

마. 금융회사 수익에 대한 추가과세

[조세동향 13-12호]

- 2013년 11월 30일 관보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과세연도에 한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 수입에 대해 8.5%의 세율로 추가 과세함
- 현행 법인세율은 27.5%이며, 2013년 금융회사는 36%(27.5%+8.5%)의 세율이 적용될 것임
- 다만, 손금불산입 대상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추가 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

9 터키의 조세사면 기한 연장⁵¹⁾

[조세동향 13-08호]

- 터키 재무부는 8월 1일,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조세사면(Tax amnesty) 기간의 2개월 연장을 발표함⁵²⁾
- 터키는 역외에 은닉되어 있는 터키 국민들의 자산이 터키 국내 제도권으로 편입되도록 「조세사면법(Amnesty law)」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8년 11월에 시작하여 2009년 말에 끝난 조세사면에서는 납세자들이 473억 터키리라(TRY) 상당의 자산을 신고하였으며 과세당국은 15억 6천만터키리라의 세수를 확보하였음
- 동 기간 납세자들은 미신고 상태의 현금, 금, 외국화폐, 유가증권, 자본시장의 금융상품, 부동산 등 260억달러(504억터키리라)의 자산을 자진 신고함

51)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TI700812.pdf/\\$file/TI700812.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TI700812.pdf/$file/TI700812.pdf)

52) 조세사면은 과거 고의적으로 회피된 세금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 숨겨져 있던 자산들이나 소득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역외로 은닉된 자산들에 대하여 특례 세율 적용, 가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어 국내로 자산이 반입되는 효과를 가짐

- 조세사면의 결과 5억 1,500만달러의 세수가 발생하였으며 신고한 자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11-4> 등록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세입 예상액

(단위: 억터키리라)

자산 종류	신고된 금액
현금과 펀드	490.38
금	8.19
유가증권과 기타 금융상품	5.18
유형자산	0.19
부동산	0.12

- 금번 조세사면은 신고된 자산에 자산의 시장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의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였음
 - 일반적인 과세방법은 이익을 기초로 한 과세표준에 15~35%의 범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그러나 혜택이 적용된 세율에 의한 세금 납부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시 공제 되지는 않음
- 또한 금번 조세사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자산의 원천에 대해 확인하는 조사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함
 - 자산이 터키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는 것임

10 폴란드의 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를 이용한 조세회피방지 세법 개정⁵³⁾

[조세동향 13-11호]

- 폴란드 의회는 11월 8일 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PLS)를 이용한 조세회피

53)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TI721118.pdf/\\$file/TI721118.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TI721118.pdf/$file/TI721118.pdf)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PLS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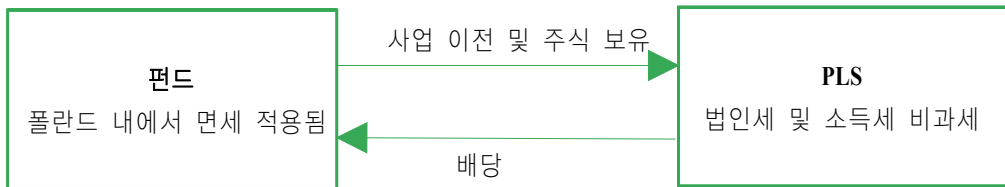
- PLS는 일반적인 파트너십과 유한회사의 성격을 혼합해 놓은 실체이며 PLS의 자본과 경영권은 유한회사의 책임을 지는 주주와 회사의 부채 등에서도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주주에게 각각 분산되어 있음⁵⁴⁾
 - 무한책임 파트너는 회사의 운영을 직접하지만 일반적인 주주들은 수동적인 투자자의 위치만 가지게 됨
 - 폴란드에서 PLS는 ‘Spółka Komandytowo - Akcyjna’로 명명되며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도관체의 역할을 하는 실체로서 폴란드 재무부는 세금을 부과하고자 오랜 기간 노력하였음⁵⁵⁾
 - 소득세법의 개정은 보통의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PLS에서 파트너들에게 분배될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 일반적인 파트너십은 파트너들에게 소득이 실제로 분배되지 않아도 회계연도 말에 분배될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법 개정 전의 PLS는 실제로 소득이 분배될 때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음
 - 개정된 법은 공표를 위해 대통령의 재가만 남아 있으며 개정년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PLS에 적용될 것임
- 2013년 초 재무장관은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에까지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기업가, 조세전문가, 내각 장관들 및 정부 소속 변호사들도 반대하여 이루어지지 못함
- 폴란드 GDP의 4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한파트너십들에 대하여 법인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폴란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54) http://www.ipg-online.org/data/cms_uploads/module_partner/publications/New_tax-regulations_in_Poland.pdf

55) http://en.wikipedia.org/wiki/Partnership_limited_by_shares

- PLS는 법 개정 전까지는 이익금이 재투자되는 한 법인세 및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실체였고 설립비용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누구나 설립하여 조세회피에 이용하였음
- 대형 투자자들은 폐쇄적인 사모펀드를 PLS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하였음
 - 먼저 투자자들은 폴란드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인 펀드를 설립한 후 PLS의 주식에 투자를 함
 - 그 다음 PLS가 펀드의 사업을 이전받아 이익을 창출한 후 관련된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받음
 - 마지막으로 투자 펀드가 PLS를 통하여 향후 이익을 배당받더라도 폴란드 내에서 면세를 적용받는 펀드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전체적인 구조에서 조세가 발생하지 않게 됨

[그림 11-1] PLS를 이용한 조세회피 구조



- 금번 개정은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PLS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로 함으로써, PLS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임

11 프랑스

가. 2013년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tax heaven blacklist) 발표

[조세동향 13-09호]

- 프랑스는 8월 28일 관보를 통해 2013년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tax heaven

blacklist)를 발표함

- 2013년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새롭게 포함된 국가와 지역은 Bermuda, The British Virgin Islands, Jersey이고 제외되는 국가는 The Philippines임
- 조세피난처의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EU 회원국이 아님
 -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하여 OECD의 조사에 따라야 함
 - 프랑스와 체결된 상호행정지원협정(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greement)이 없어야 함
 - 타 국가나 지역과 체결된 상호행정지원협정의 숫자가 12개 이하
- 2013년 8월 28일 현재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지역과 국가는 Bermuda, the British Virgin Islands, Brunei, Botswana, Guatemala, the Marshall Islands, Jersey, Montserrat, Nauru, Niue임⁵⁶⁾
- 2010년 2월 17일에 최초로 발표된 국가와 지역은 총 18개로 다음과 같음
 - Anguilla; Belize; Brunei; Costa Rica; Dominique; Grenada; Guatemala; the Cook Islands; the Marshall Islands; Liberia; Montserrat; Nauru; Niue; Panama; the Philippines;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나. 프랑스 2014년 예산안⁵⁷⁾

[조세동향 13-10호]

1) 개요

- 프랑스 정부는 2013년 9월 25일 재정적자 감소와 경기 활성화를 기조로 한 2014년 예산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56) 2012년 블랙리스트는 Botswana, Brunei, Guatemala, The Marshall Islands, Montserrat, Nauru, Niue, The Philippines임

<http://www.icd-london.fr/fiscalite-internationale-offshore/liste-noire-paradis-fiscaux-france-2012/>

57) <http://www.taxanalysts.com> 및 <http://www.ibfd.org> 참조

- 본 예산안은 2013년 중 의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임
- 201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환경세의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함

2) 법인세 개정안

가) 새로운 규정의 도입⁵⁸⁾

- 법인이 임직원에게 매년 100만유로를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해 50%의 임시 ‘고액급여 특별세(special tax on high compensation)’를 부과함
 - 과세 대상 급여는 기본급,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분배 및 장려금 등을 모두 포함함
 - 세금은 매출액의 5%를 한도로 함
 - 본 규정은 2013년과 2014년에 회사비용으로 처리되거나 지급된 급여에 적용될 것임
- 역외에 소재한 관계회사로 일부 기능이나 위험을 이전한 결과로 이익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정상가격의 입증책임을 프랑스 법인에 부여함
 - 이익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란 거래 결과 과거 3년 동안의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와 비교해 이익이 20% 이상 감소한 것임
 - 프랑스 법인이 거래가격의 정상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함
 - 또한,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프랑스 법인은 거래에 참여한 거래당사자의 정보와 관련 문서를 과세당국에 제공하고, 거래 전·후 거래당사자의 이익수

58) 당초 예산안은 연 매출액 5천억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에 대해 1%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나, 10월 6일 재무부장은 국내 경제환경을 고려해 이 제안을 철회함. 이 규정을 대신해 법인세에 일시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준이 적정함을 입증해야 함

- 프랑스 법인은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국외 관계회사 대여로 인해 발생한 이자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함
 - 이 규정은 이자비용의 지급을 통해 프랑스 법인의 이익이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관계회사로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됨
 - 최근 OECD에서 발행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행위(BEPS)』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을 참고한 것임
 - 프랑스에서 과세되는 경우와 비교해 이자비용에 적용되는 세금이 25% 이상 감소할 때 적용됨
- 중소기업이 산업용 로봇에 투자한 금액의 감가상각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함
 -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에 적용됨

나) 현행 규정의 개정

-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중 특허권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출된 비용의 공제범위를 확대함
 - 현행 규정은 특허권의 법적 보호를 위해 프랑스나 EEA 회원국에서 지출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허용함
 - 개정된 규정은 지리적인 제한 없이 특허권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 특정 신생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100% 감면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7년으로 연장함
 - 신생 혁신기업이란 개인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설립된 지 8년 미만이고, 전체 비용의 15%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기업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초 이익이 발생한 12개월 동안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그다음 12개월 동안 50%를 면제함
- 개정안에 따르면 설립 후 최초 이익이 발생한 7년간의 법인세 100%가 면제되고 혁신산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사회보장세가 면제됨

3) 소득세 개정안

- 개인의 증권(securities) 매각 자본이익에 대해 일반 소득공제와 특별 소득공제를 도입함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의 증권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이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됨
 - 일반 소득공제는 주식, 유사증권과 법인 자산의 75% 이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회사 주식의 경우 보유 기간별로 0%, 50%, 65%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2년 미만 보유한 증권의 매각: 0%
 - 2년 이상 8년 미만 보유한 증권의 매각: 50%
 - 8년 이상 보유한 증권의 매각: 65%
 - 특별 소득공제는 설립된 지 10년 미만인 중소기업 주식, 신생 혁신기업의 주식, 관계회사 간 주식매각에 대해 보유 기간별로 0%, 50%, 65%, 85%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1년 미만 보유한 증권의 매각: 0%
 - 1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한 증권의 매각: 50%
 - 4년 이상 8년 미만 보유한 증권의 매각: 65%
 - 8년 이상 보유한 증권의 매각: 85%
-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지수(cost of living index)를 반영하여 2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0.8%p 상향 조정함

- 개정 전·후의 소득세 누진세율 표는 다음과 같음

<표 11-5> 개정 전·후의 소득세 누진세율

(단위: 유로)

세율(%)	과세표준 기준금액	
	개정 전	개정 후
0	5,963 이하	6,011 이하
5.5	5,964 ~ 11,896	6,012 ~ 11,991
14.0	11,897 ~ 26,420	11,992 ~ 26,631
30.0	26,421 ~ 70,830	26,632 ~ 71,397
41.0	70,831 ~ 150,000	71,398 ~ 151,200
45.0	150,000 초과	151,200 초과

- 가족계수제(family coefficient system)⁵⁹⁾에 적용되는 부양자녀 1인(0.5단위)의 공제 한도를 현행 2,000유로에서 1,500유로로 조정함
 - 납세자의 결혼 여부와 부양자녀의 수가 누진세율 효과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어 공제한도의 하향조정을 제안함
- 자녀의 중등학교나 대학교육에 적용되던 학자금 세액공제(scholarship tax credit)를 폐지함
 - 현행 학자금 세액공제에 따르면 설립 형태에 따라 자녀 1인당 61유로, 153유로나 183유로의 금액이 공제됨

4) 부가가치세 개정안

- 건설부문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매입자가 공급자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대리납부 과세방법을 도입함

59) 프랑스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세대(family unit)’이며 납세자의 결혼 여부와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 계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계산함. 즉 독신자, 이혼자나 과부는 1단위, 부부는 2단위 그리고 부양하는 자녀 1인에 대하여는 0.5단위의 계수를 부여하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가족계수 효과를 차감하여 계산함

- 즉 하도급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원계약자(매입자)에게 발행하면, 원계약자가 하도급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 용역의 매출 부가가치세를 과세당국에 납부하고 대리납부한 세액을 본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 이는 최근 EU에서 채택한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rousel fraud) 방지를 위한 대안⁶⁰⁾ 중 하나인 대리납부 과세방법을 도입한 것임
- 일부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함
- 영화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9.6%에서 10%로 인하함
 -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건설 및 개보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7%에서 5%로 인하함

5) 환경세 개정안

- 에너지 생산품의 내국 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TICPE)의 적용 대상 중 중유(heavy fuel), 천연가스(natural gas)와 석탄(coal)에 적용되는 세율을 톤당 7유로로 인상함
- 오염유발 행위에 대한 일반세(taxe générale sur les activités polluantes, TGAP)의 부과 대상을 확대함
- 오염유발 활동에 부과되는 환경세는 쓰레기, 배출 오염물, 윤활유, 세제, 바이오 연료 등의 오염유발 인자에 대해 부과됨
 - 이번 개정안은 납(lead), 아연(zinc), 크롬(chromium), 구리(copper), 니켈(nickel), 카드뮴(cadmium)과 바나듐(vanadium)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과세대상에 추가함
- 자동차에 부과되는 공해배출세(the Malus Tax)가 과세되는 기준점을 하향 조정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함

60)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approves measures to tackle VAT fraud schemes," 2013. 7. 22.

- 공해배출세의 부과 기준점을 현행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135g 이상에서 130g 이상으로 조정함

다. 반조세회피 조치⁶¹⁾

[조세동향 13-11호]

- 프랑스 의회는 2013년 11월 5일 반조세회피 조치(anti-avoidance measures)를 채택함
 - 2013년 4월 10일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반조세회피 조치를 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관련 법은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거쳐 공시한 날부터 시행될 것임
- 이번 조치에서는 납세자의 보고의무 강화, 과세당국의 조사 권한 강화, 탈세에 적용되는 가산세 인상,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기준의 조정에 관한 것임

1) 납세자의 보고의무 강화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 대기업, 은행과 고소득 개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함
 - 대상이 되는 은행과 기업은 외국 자회사 목록, 외국 자회사 업종, 거래, 매출액, 직원, 이익, 납부대상 세금과 수령한 공적지원금(public aid)의 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함

2) 조사 권한

- 중대한 부패와 조세포탈(tax fraud)을 처리하는 사법기구를 창설하고 경찰과 사법부에 세무조사 전담 인력을 증원할 것임
- 탈세나 불법행위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및 처분 권한을 강화함

61) <http://www.ibfd.org> 및 <http://www.deloitte.com> 참조

- 세무조사 전문 경찰의 조사권을 확장하여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을 조사할 수 있게 함
 - 과세당국은 사법절차와 행정절차를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거나 기소할 수 있도록 함
 - 탈세 혐의가 인정된 납세자의 재산이나 생명보험을 압류하는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자산의 압류 및 몰수제도를 강화함
- 부패방지기구(organization)가 법정에서 원고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함

3)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기준의 조정

- 조세피난처(non-cooperative states or territories, NCSTs) 블랙리스트⁶²⁾에 속한 국가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강화함
- 프랑스와 자동정보교환협정(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체결한 국가는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며, 자동정보교환에 거부한 국가는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것임
- 프랑스 정부는 2010년부터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포함된 지역이나 국가와 거래한 경우 높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일부 조세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조세피난처의 거주자에게 이자, 배당과 로열티를 지급한 경우 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거주자가 프랑스에 지급한 배당과 자본이득은 경영참여 소득 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납세자는 조세피난처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기업에 지급한 대부분의 비용을 과세표준에 가산함

62)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리스트와 조세피난처의 정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 [13-09호]를 참고

- 그밖에 조세피난처 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부여, 외국 납부 원천징수세의 불공제 등 엄격한 과세제도를 적용함

4) 조세포탈에 대한 가산세 강화

- 조직적으로 수행되는 조세포탈, 외국인투자회사 및 은행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과 같은 중대한 조세범죄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가중함
-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가산세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자금세탁으로 인한 조세포탈이 확정되면 법인 소유 자산을 압류할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가산세를 현행 3만 7,500유로에서 200만유로로 인상하고 징역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함

12 헝가리의 금융거래에 대한 세율 인상

[조세동향 13-07호]

- 헝가리의 경제장관은 헝가리 GDP 대비 세수부족 비율이 EU의 제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세입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세법개정안(세부사항을 6월 17일 발표함⁶³⁾)
- 해당 세법개정안은 여당인 Fidesz party에서(헝가리 의회의 2/3를 차지하는 당)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며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2013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됨
-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EU 회원국은 GDP 대비 세수부족률 제한범위를 3%로 하고 있으나 2014년 예상 세수부족률이 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입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임
- 6월 17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2012년 1월에 도입되었던 금융거래에 대한 세

63)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TT1700624.pdf/\\$file/TT1700624.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3.nsf/PDFs/TT1700624.pdf/$file/TT1700624.pdf)

율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거래는 자금 송금, 외화환전, 모기지론 상환, 무인현금인출기로부터의 현금 인출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0.2%(현금 인출의 경우 0.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현금 인출의 경우 세율을 0.3%에서 0.6%로 인상, 자금 송금에는 0.2%에서 0.3%로의 세율 인상을 제안하고 있음

- 해당 세금은 거래의 총액에 대해서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과되고 있음⁶⁴⁾

- 금번 개정안은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현행 16%의 건강기여금(Healthcare contribution)을 22%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13 EU의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채택

[조세동향 13-10호]

- 2013년 10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Regulation(EU) No 952/2013」을 공포함

- 이로써 종전의 「Regulation (EC) No 450/2008」(Modernized Community Customs Code; 현대화유럽관세법)은 폐지됨

- 「Regulation (EEC) No 3925/91⁶⁵⁾」, 「Regulation (EEC) No 2913/92」(Community Customs Code; 유럽관세법), 「Regulation (EC) No 1207/2001⁶⁶⁾」는 2016년 6월 1일자로 폐지함

- EU 신관세법이 발효된 날(2013년 10월 30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위임법령(delegated and implementing acts)을 채택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이행권한의 부여와 비용, 전자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조항

64) <http://gss.unicreditgroup.eu/markets/hungary/newsflashes/financial-transaction-tax-update>

65) 역내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 또는 선원 휴대품의 간이통관 절차에 관한 규정

66) 일반원산지제도 및 특혜원산지제도에서의 공인수출입업체의 공인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은 신관세법 발효와 함께 2013년 10월부터 시행됨

- 신관세법은 통관관행 분석에 입각하여 새로운 관세 규정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관세당국 행정의 일관된 지침 및 EU 역내 무역업계에 대해 법령의 명확한 적용을 제공하고자 함
 - 2003년부터 유럽집행위원회는 의회와 이사회에 현대의 무역거래에 적합한 신속하고 효율화된 절차를 반영한 관세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음⁶⁷⁾
 - EU는 2007년 MCC 채택 이후, 관세동맹 차원에서 장기 전략으로 국경보안 강화, 국제무역의 사기행위 방지 및 전자통관환경의 확대를 위한 ‘Customs 2013 Program(세관 현대화계획)’을 추진해 왔음
- 신관세법은 전자통관환경(paperless environment)의 확대 및 공인경제운영인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⁶⁸⁾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절차의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회원국의 통일된 통관 행정을 위해 유럽집행위원회에 위임법령(delegated and implementing acts)의 제정권 등 이행 권한을 위임
 - 수출입 물류에 적합하도록 EU 역내 수입과 수출로 대별하여 조항 체계를 정비함
 - 통관 및 무역거래 전반에 걸쳐 전자통관시스템 기반의 전자통관을 전면 시행함.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관 업무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AEO 업체에 대한 혜택 강화 및 통관 간소화
 - 담보 면제 또는 담보 할인을 위한 포괄담보 승인제도를 도입함⁶⁹⁾
 - 신청에 의해, 다른 세관에 제시된 물품에 대해 수출입업체의 설립지 관할 세관에서의 일괄 통관을 실시함. 개정교토협약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물품 도

6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2-1441_en.htm

68) 2005년 WCO의 SAFE Framework 체제로 도입되어, 범규준수도,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수출입업체에 관세당국의 공인을 거쳐 통관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통관 간소화 부문과 보안과 안전관리 부문의 유형으로 취득할 수 있음

69) UCC Article 95

착 전 통관절차의 완료 및 물품의 물리적 장치 장소와 통관지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출입업체의 설립지에서 중앙집중식 통관절차를 수행하도록 함⁷⁰⁾

- 신청에 의해, 관세당국이 수행하여야 하는 세액 산정과 세관 통제하의 관리감독 등 일부 절차를 수행하도록 통관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자율심사 (self-assessment)를 도입함⁷¹⁾
 -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U 역내 운송에 대해서는 담보의 범위를 잠정적 채무 보증까지 확대함⁷²⁾
 - 일시보관시설 운영 승인제도 신설. 단, 통관 간소화 부문의 AEO 공인업체는 승인 요건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⁷³⁾
 - 역내가공면세제도(Inward Processing Relief, IPR)⁷⁴⁾와 보세가공제도(Processing under Customs Control, PUP)⁷⁵⁾의 통합, 역내가공면세에 따른 환급제도는 폐지
 - 이에 따라 AEO 공인업체는 수입 후에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자유유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BTI, Binding Tariff Information)와 원산지사전심사제도(BOI, Binding Origin Information)의 유효기간을 각각 6년, 3년에서 3년으로 일원화
- 유럽집행위원회의 이행법령 제정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결정되고,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이행은 회원국별로 적용될 예정임
-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통관행정은 EU 세관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임

70) UCC Article 179

71) UCC Article 185

72) UCC Article 89

73) UCC Article 148

74) EU 역외지역에서 수입한 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역외지역으로 재수출할 때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로, 관세납부의 유예 또는 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음

75) 보세가공 절차는 관세당국의 허가를 득한 자가 수입한 역외물품을 EU 역내에서 가공한 제품에 대해 역내 자유유통을 허용하는 절차

14 제9차 WTO 각료회의

[조세동향 13-12호]

- 2013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9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농업, 무역원활화, 최빈개도국의 3개 부문 협상이 타결되어 10개 합의문이 채택됨
 - 특히 이번 합의는 1995년 WTO 출범 후 처음으로 범세계적 협정이 타결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기존의 ‘일괄타결 방식’에서 ‘조기수확 방식’⁷⁶⁾으로 협상 방식을 바꾼 후 이루어낸 성과임
- 이번 협정은 2015년 7월 31일까지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 회원국에 한해 발효됨

가. 농업 분야 합의사항⁷⁷⁾

- 농업 분야는 TRQ(Tariff Rate Quotas)⁷⁸⁾ 관리 개선,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식량비축, 수출경쟁 그밖에 면화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
- 발리패키지(Bali Package)에 따르면 3년 연속 TRQ 소진율이 65% 미만일 경우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혹은 비조건적 방식으로 변경해야 함⁷⁹⁾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시 TRQ 물량만 정하여 수입국 재량에 따라 시행한 결과 국별 TRQ 이행률이 큰 차이를 보이자, 2012년 9월 G20⁸⁰⁾이 관리방식 개선을

76) DDA 협상 전반을 일괄 타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협상을 진전시키는 방식

77) WTO, <https://mc9.wto.org/draft-bali-ministerial-declaration>

78)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서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림

79) WT/MIN(13)/39-WT/L/914

제안하였음

- 우리나라는 2013년 10월 기준 총 63개 품목에 대해 TRQ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중 소진율이 65% 미만인 품목 중 선착순 혹은 비조건적 허가방식 이외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은 대추, 인삼, 잣의 세 개 품목임⁸¹⁾
 -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리변경에 따른 의무에서 면제됨⁸²⁾
- TRQ의 협상, 이행 계획 관련 정보 및 신청 등에 대한 공표는 90일 전에 해야 하며 신청은 30~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타회원국은 개도국이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보조한도(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⁸³⁾를 초과하였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영구적인 해결 방법(Permanent Solution)이 마련될 때까지 분쟁을 자제해야 함⁸⁴⁾
 - 위의 결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재 개도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비축 프로그램이 보조한도를 초과해야 함
 - 또한 최근 5년간의 국내 보조 통보(Domestic Support Notification) 내용을 비롯하여, 공공비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최근 3년간의 관련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단, 비축물량의 방출과 같은 무역 왜곡이 발생하거나 다른 회원국의 식량 안보에 피해를 입을 경우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금지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제소될 수 있음

80) 회원국은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G7에 속한 7개국과 유럽연합 의장국에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 등 신흥시장 12개국을 더한 20개국이며, 수출개도국인 브라질이 대표하여 만든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음

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2013. 10.

8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83) 시장가격지지, 감축대상 직접보조, 기타 감축대상지원 등 모든 보조금액을 합한 것으로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무역왜곡 보조금의 총계

84) WT/MIN(13)/38-WT/L/913

-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쌀에 대한 정부의 추곡수매제⁸⁵⁾를 폐지하고, WTO의 허용보조인 공공비축제⁸⁶⁾를 도입해 보조한도 초과문제 제기 소지 가능성은 적음
-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2005년 홍콩 각료선언⁸⁷⁾의 수출보조와 같은 무역왜곡 철폐 및 수출신용 축소, 수출 국영무역 규율 강화 등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최우선 과제로 집중 논의하기로 함⁸⁸⁾
 -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업위원회에서는 매년마다 사무국이 회원국의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식량지원 및 수출 국영무역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기로 하였음
- 면화 부문에서는 2005년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개발도상국의 면화분야 강화 협의 메커니즘 추진 및 농업위원회 연 2회 논의 등을 결정함⁸⁹⁾
 - 이번 결정에서는 C-4국가들⁹⁰⁾의 홍콩 각료선언 이행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⁹¹⁾ 미국은 DFGF 요구⁹²⁾ 등을 거부하였음
 - 농업위원회에서는 면화 무역과 관련하여 시장 접근성, 국내보조 및 수출 경쟁의 세 분야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 또한 면화 관련 인프라지원 프로그램, 면화특정(Cotton-Specific) 지원 및 기타 면화 관련 지원에 대한 추적 및 검토를 골자로 하는 사무총장 주관의 면화 메커니즘을 추진하기로 함

85) 정부가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량의 쌀을 매입하는 제도

86) 정부가 일정 분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

87) 2005년 12월 13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 지원,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시한 설정, 무역왜곡 국내보조 감축에 대한 규범 마련 등이 포함된 각료선언

88) WT/MIN(13)/40-WT/L/915

89) WT/MIN(13)/41-WT/L/916

90) 베닌, 부르키나파코, 말리, 차드 등 면화를 수출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4개 개발도상국들('Cotton Four')

9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92) Duty-free and quota-free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관세 및 쿼터를 면제해주는 것

나. 무역원활화

- 무역원활화의 일반적인 정의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및 조화, 현대화를 의미함⁹³⁾
 -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 진영은 무역원활화 조기 수확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음
-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의무 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 협정문으로 구성되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협상이 전개되어 옴⁹⁴⁾
 - Section I에서 선진국은 신속한 통관을 위한 의무화 규정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Section II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한 의무 조항을 주장하였음
 - Section II에서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의무조항으로 A, B, C 의무로 기간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 협정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개도국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의무가 있음
- 무역원활화 부문에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 작성되었는바, 의무화된 것은 아래와 같음⁹⁵⁾
 - 각 국가들은 수출입과 수송(공항, 항구 등) 절차에 관해 관련 법령 등 통상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야 함
 -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물품 도착 전(Pre-arrival Processing)에 관련 서류와 필요한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야 함
 - 각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행정 결정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게 함
 - 수출입 과정에 관세법, 관세규정 또는 과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위반

93) 「WTO 발리 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IEP, 2013.12.24.

94) WT/MIN(13)/36-WT/L/911

95) WT/MIN(13)/36-WT/L/911

하였을 경우 사건의 상황과 위반 및 경중에 비례하여 법에 따라 패널티를 잘 못한 이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함

- 신속 통관을 위한 통관 후 심사(Post-clearance Audit)를 도입해야 하며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함
-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가 되면 비관세장벽인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교역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다. 최빈개도국

-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ies; LDC)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조건을 완화하고 원산지 제품을 우대하기로 합의함⁹⁶⁾
-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 무관세-무쿼터 정책⁹⁷⁾, 최빈개도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우대를 위한 의무면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협의함⁹⁸⁾
 - 선진국은 최빈개도국에 97% 이상의 무관세-무쿼터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함
 - 최빈개도국과 서비스분야 협상결과 이행시 일정 부분 예외를 허용해 주는 것을 협의함
- WTO협정 및 각료·일반이사회 결정 등에 포함된 우대규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설치·운영하기로 함⁹⁹⁾
- 최빈개도국에 관련된 이슈는 구체적 권리·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지원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합의됨

9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97) WT/MIN(13)/44-WT/L/919

98) WT/MIN(13)/43-WT/L/918

99) WT/MIN(13)/45-WT/L/920

라. 기타

- 비농산물 협상에 있어서는 시장접근 협상 및 비관세장벽 협상 분야에서 교착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¹⁰⁰⁾
- 무관세 정보기술(IT)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기술협정(ITA)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됨
- 예멘이 160번째 WTO 회원국으로 가입함¹⁰¹⁾

100) 외교부, 「2013 WTO/DDA 협상 전반 동향」

10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III. 아시아

1 대만의 개인 주식양도차익 과세규정 개정

[조세동향 13-07호]

- 대만 입법원은 6월 25일에 개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을 개정함
 - 이번 개정은 2012년에 도입된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따라 위축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것임

-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실제기준과 간주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2015년부터는 실제기준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였음
 - 실제기준(actual basis)을 선택하게 되면 실제 양도차익에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실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식양도차손은 동일한 연도의 다른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반면, 간주기준(deemed basis)을 선택할 경우에는 주가지수가 8,500포인트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며, 양도가액에 0.02~0.06%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됨
 - 간주기준에 의한 계산방식은 양도가액에서 0.1~0.3%의 간주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간주이익에 2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가액에 0.02~0.06%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됨
 - 다만, 이 방식은 비상장주식이나 비거주자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공개(IPO)에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¹⁰²⁾

102) 기업공개에서 취득한 주식을 1만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나 2013년 1월 1일 이후 기업공개에서 주식을 취득하고 대만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흥회사 주식(emerging shares)을 10만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제기준을 적용해야 함

- 간주기준은 2015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종전에 간주기준을 선택할 수 있었던 납세자들은 연간 양도가액이 10억타이완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실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개정법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에는 주가지수 8,500포인트 기준을 삭제하고, 2015년 이후에는 2가지 과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 우선 간주기준을 적용할 때 8,500포인트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주가지수와 상관없이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게 됨
 - 2015년부터는 연간 양도가액이 10억타이완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들에게 ① 양도가액에 0.1%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과 ② 양도차익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 양도가액 중 10억까지는 0.1%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10억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만 0.1%의 세율로 신고납부하거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15%의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이나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 기업공개에서 취득한 주식의 양도는 종전과 같이 실제기준에 따라 과세됨

2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과 기업투자 촉진 관련 조세특례 규정 발표

[조세동향 13-10호]

- 2013년 10월 1일 소비세(consumption tax) 인상 및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개정을 발표함
 - 내년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에 대비하여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규정이 포함됨
 - 기업의 신규투자 촉진을 위하여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 및 개발활동(R&D)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건 완화를 포함함
 - 이외에도 기업의 임금 인상에 대한 세제 우대와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세제

우대가 포함됨

- 소비세는 2014년 4월 1일부터 현행 5%(지방소비세 1% 포함)에서 8%(지방소비세 1.7% 포함)로 인상됨
 - 2015년 10월 1일부터는 10%(지방소비세 2.2%)로 단계적 인상 예정임
 - 그러나 경과조치로 특정거래에 한해서는 2014년 4월 1일 이후라도 현행 5%를 유지할 예정
 - 2012년 6월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社會保障·稅一體改革, 이하 일체개혁)’의 일환으로 인상되는 소비세 증가 세수는 연금·의료·노인요양·저출산 대책 등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지출에 충당될 예정임
- 일본 대지진에 따른 부흥 특별 법인세의 1년 조기 폐지를 12월 중에 결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유효 법인세율은 35.640%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함

<표 III-1> 일본 명목법인세율 내역

항목	세율(%)
법인세	25.5
특별지방법인세(special local corporate tax)	4.292
사업세(business tax)	3.260
지방세(prefectural and municipal tax)	5.280
명목법인세(지방세 등 포함) 합계	38.332
유효세율(effective rate) ¹⁾	35.640

주: 1) 유효세율을 계산할 때, 특별지방법인세와 사업세의 손금산입을 고려하고 출자자분금 1억엔 기업에게 적용되는 도쿄(the Tokyo)세율을 사용함

- 생산성 증진 설비에 투자하고 「산업경쟁력향상법」의 발효일과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사용하는 청색신고 법인은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나 즉시상각을 선택할 수 있음
 - 「산업경쟁력향상법」의 발효일에서 2016년 3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고정자산, 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총액을 즉시 상각할 수 있음

- 단,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투자의 경우에는 취득 가액의 50%(건축물과 구축물의 경우 25%)만 즉시 상각할 수 있음
- 고정자산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발효일부터 2016년 3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투자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의 5%(건축물과 구축물의 경우 3%)이고,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기간 동안의 투자는 4%(건축물과 구축물의 경우 2%)임
- 세액공제의 한도는 법인세 납부액의 20%임

<표 III-2>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및 투자금액

구분	감가상각 자산	투자금액
하이테크설비	기계	단위당 1.6백만엔 이상
	도구	단위당 1.2백만엔 이상
	장비 ¹⁾	단위당 1.2백만엔 이상 또는 1.2백만엔 이상의 총투자액 중 과세연도 중 단위당 30만엔
	건축 단열재	단위당 1.2백만엔 이상
	전기 설비와 조명, 공기 정화 및 난방	단위당 1.2백만엔 이상 또는 1.6백만엔 이상의 총투자액 중 과세연도 중 단위당 60만엔
	소프트웨어 ¹⁾	단위당 70만엔 이상 또는 70만엔 이상의 총투자액 중 과세연도 중 단위당 30만엔
생산라인 및 운용 개선 설비	기계	단위당 1.6백만엔 이상
	도구	단위당 1.2백만엔 이상 또는 1.2백만엔 이상의 총투자액 중 과세연도 중 단위당 30만엔
	고정자산 ¹⁾	단위당 1.2백만엔 이상 또는 1.2백만엔 이상의 총투자액 중 과세연도 중 단위당 30만엔
	건축물	단위당 1.2백만엔 이상
	건축 부속물	단위당 1.2백만엔 이상 또는 1.6백만엔 이상의 총투자액 중 과세연도 중 단위당 60만엔
	구축물	단위당 1.2백만엔 이상
소프트웨어	단위당 70만엔 이상 또는 70만엔 이상의 총투자액 중 과세연도 중 단위당 30만엔	

주: 1) 중소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이었던 특정 기계장치 등에 대한 즉시상각이나 세액공제 규정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됨

-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 설비(the production improving facilities)을 취득하고 「산업경쟁력향상법」의 발효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총투자금액은 즉시상각이 가능함
 - 또는 출자자본이 3억엔 이하 기업은 취득가액의 10%(출자자본이 3억엔 초과 기업의 경우 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30만엔 이하 투자액의 상각에 관련된 현행 규정의 일몰기한이 2014년 3월 31일에서 2016년 3월 31일로 연장됨
- 임금인상 세액공제(tax credit for salary growth)의 일몰기한이 2018년 3월 31일 까지 2년간 연장되고, 청색신고 대상 기업에 대한 세액요건이 기존보다 완화됨
 - 2013년 4월 1일 최초 도입 시에는 3년 운용 예정이었음

<표 III-3> 임금증분 세액공제 수정안

현행 세액공제 요건(3가지)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임금지급액 ≥ 기본연도 임금 지급액의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4월 1일 이전 당해연도 임금지급액 ≥ 기본연도 임금지급액의 102% • 2015년 4월 1일 ~ 2016년 3월 31일 당해연도 임금지급액 ≥ 기본연도 임금지급액의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임금지급액 ≥ 직전연도 임금 지급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평균 임금지급액 ≥ 직전연도 평균 임금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평균 임금지급액 ≥ 직전연도 평균 임금지급액 단, 평균 임금지급액이란 계속적으로 고용된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평균을 의미함 (국가종업원보험제도에 등록된 종업원)

-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임금지급액-기본연도 임금지급액)×10%임
 - 세액공제 한도는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를 한도로 함

- 기업구조조정 및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거한 특정사업 벤처계획에 의한 투자유한 파트너십 인증을 통하여 특정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무상 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 손금으로 산입 가능한 금액은 연도 말 특정사업 벤처의 출자지분 장부가액의 80%임
 - 2014년 4월 1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거한 기업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정기업 출자금이나 차입금 관련 대손에 대하여 세무상 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 손금으로 산입 가능한 금액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나 차입금의 70%임

- 특정항목에 대한 등록세가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발효일부터 2016년 3월 31일 까지 경감될 예정임

<표 III-4> 등록세 경감 항목

(단위: %)

과세 대상	세율
법인(Kabushiki Kaisha, KK)의 설립, 증자	0.35
합병으로 인한 법인(KK)의 설립, 증자	0.1
피합병기업의 초과 자본액	0.35
분할로 인한 법인(KK)의 설립, 증자	0.5
부동산 현물출자(선박)	1.6(2.3)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이전(선박)	0.2(0.3)
분할로 인한 부동산 이전(선박)	0.4(2.3)

- 연구 및 개발활동(R&D)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개정함
 - 2014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간이 3년 연장됨

- 현행 R&D 세액공제는 R&D 활동에 대한 증분 금액의 5%로 계산되나, R&D 세액공제 수정안에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R&D 비용의 증가 정도에 연동하여 계산할 예정임
- R&D 비용의 증가 정도는 직전 3년 연평균 R&D 비용에 대한 증분 R&D 비용의 비율(증분 비율)로 나타냄
 - R&D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text{R\&D 세액공제액} = \text{증분 R\&D 비용} \times \text{증분 비율}$$

- 증분 비율이 5% 초과, 30% 이하인 경우에는 증분 비율을 곱하고, 증분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로 함

3 중국

가. 기업소득세 과세규정 발표

[조세동향 13-08호]

1)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기업소득세 과세규정

- 7월 15일 국가세무총국은 지분투자와 채권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성금융상품 투자(hybrid investment)에 관한 기업소득세 과세규정을 발표하고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 혼성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함
 - 피투자기업은 투자약정상 이율에 따라 정기적인 이자 지급의 의무가 있을 것
 - 투자기간과 특별한 조건이 명확하게 정의된 것으로서 투자기간이 종료되거나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은 투자원금상환의 의무를 부담할 것
 -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을 것
 - 투자기업은 의결권을 갖지 않을 것

-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일상적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
- 적격 혼성금융상품에 투자한 기업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이자지급일에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피투자기업은 동일한 시기에 해당 이자비용이 공제되어야 함
- 이자소득에는 최저보증이자, 확정수익 또는 확정배당금이 포함됨
- 또한 피투자기업이 투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은 투자 원금과 상환금과의 차액을 채무조정손익으로 간주하여 각각 당기 손익에 포함시켜야 함

2)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규정 명확화

- 7월 25일 국가세무총국은 적격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제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발표함
- 현행 규정상 2011년 1월 1일 이후 중국 본토에 설립된 적격 소프트웨어기업은 5년간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음
 - 2년간은 기업소득세가 면제되며, 그 다음 3년간 기업소득세의 50%가 감면됨
 - 감면조치를 개시하는 시점은 해당 기업에 처음 수익이 발생한 연도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함
-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적격 소프트웨어기업의 정의, 총소득의 개념, 감면조치 개시연도 등을 명확히 함
 - 적격 소프트웨어기업은 관할기관의 인증을 받고, 간주기준이 아닌 실제기준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적격 소프트웨어기업의 요건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소득이 총소득의 50% (자가개발 소프트웨어는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때 총소득을 「기업소득세법」 제6조에 따라 계산한 총합계액으로 명확히 함
 - 감면조치 개시연도는 사업개시 후 과세소득이 발생한 첫 해이며, 개시된 후에는 연속하여 적용해야 하고 도중에 기간을 정지할 수도 없음

3) 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 면제

- 7월 29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소기업에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발표함
 - 이 규정은 월평균 매출액이 2만위안 이하인 소기업에 2013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소기업은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됨
 -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기업의 고용창출과 투자증대를 기대함

나. 증치세 면세 관리방법 제정 발표

[조세동향 13-10호]

- 국가세무총국은 2013년 9월 13일 『과세 대상 국경 간 용역공급(exported service)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세 관리방법(시범시행)』을 제정 발표함¹⁰³⁾
 - 2013년 8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됨
 - 통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수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면세제도의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중국은 용역의 수출에 대하여 면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증치세 면세적용을 위한 필수요건은 ① 국경 간 용역공급(cross-border services)에 대한 계약서 구비, ② 용역의 공급은 유상이어야 하며, 해외로부터 수령하여야 함 ③ 면세용역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제공은 아래와 같음
 - ① 공정, 광산자원이 경외에 있는 공정탐사서비스, ② 컨벤션·전시장소가 경외인 컨벤션서비스, ③ 보관장소가 경외인 창고보관서비스, ④ 대상물을 경외

103) 国家税务总局公告 2013年 第52号

에서 사용하는 유형 동산 임대서비스, ⑤ 경외에서 제공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배급과 방영서비스, ⑥ 특정 국제운송서비스의 제공, ⑦ 특정 교통운송서비스의 제공(육로, 수로 운송방식, 홍콩과 마카오, 대만), ⑧ 간이계세방법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 용역, ⑨ 경외의 단위에 제공하는 과세 대상 용역

- ‘간이계세방법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 용역’이란 국제운송서비스, 홍콩·마카오·대만 왕복 교통운송서비스 및 홍콩·마카오·대만에서 제공하는 교통운송서비스, 경외의 단위에 제공하는 R&D서비스와 설계서비스를 포함함
- ‘경외의 단위에 제공하는 과세 대상 용역’이란 ① R&D서비스, 기술서비스(R&D서비스와 공정탐사서비스 제외), 정보기술서비스, 문화아이디어서비스(설계서비스와 광고서비스, 컨벤션서비스 제외), 물류보조서비스(창고보관서비스 제외), 검증자문서비스,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제작서비스, 원양운송기간용선서비스, 원양운송 항해용선서비스, 항공운송 전세서비스, ② 광고투입지가 경외인 광고서비스를 포함함

4 홍콩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조세동향 13-07호]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7월 10일에 홍콩 입법회를 통과함
 - 종전 규정에서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만 홍콩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음
 - 이에 대해 OECD는 홍콩에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을 권고하였고, 홍콩은 이번 법률로 그 근거를 규정하게 됨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3년 제2호

2013년 12월 25일 인쇄

201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옥 동 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318-7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